

미국장로교
헌법

제 2 부

규례서

2023-2025

미국장로교
헌법

제 2 부

규례서
2023-2025

미국장로교 총회사무국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1396

저작권 © 2023

미국장로교 총회사무국

본 출판물의 어느 부분도 출판인의 사전 승인 없이 복사, 녹취, 또는 기타 어떤 방법으로도 전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저장하거나 전달할 수 없다. 교회 사역을 위한 상황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당회, 노회, 대회, 미국장로교 총회 조직체는 출판인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출판물의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미국장로교 규례서 공식 한국어 번역본이나, 법적 논의를 위해 참고할 경우에는 영어판을 기준으로 한다.

미국 의회 도서관 출판물 분류 정보

ISBN - 979-8-9885501-1-2

미국 국내 인쇄

미국장로교 출판국을 통해 추가로 구입할 수 있음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1396, 전화 (800) 533-4371

주문하실 때, 한국어 판임을 명시해 주세요.

서 문

미국장로교 헌법은 운영체제 F-3.04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앙고백서*(제1부)와 *규례서*(제2부)로 구성된다.

*신앙고백서*에는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 헬베틱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바르멘 신학 선언, 1967년도 신앙고백, 벨하 신앙고백, 미국장로교 간추린 신앙고백이 있다.

*규례서*는 장로교 체제의 기초, 운영 체제, 예배 지침, 교회 권징으로 구성된다.

이 *규례서*에서

- (1) “해야 한다(shall)”와 “되어야 한다(is to be/are to be)”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 (2) “해야 할 것이다(should)”는 강하게 권장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 (3) “적절하다(is appropriate)”는 적합하다고 권장되는 조항을 의미한다.
- (4) “해도 좋다(may)”는 의무적이 아닌 허용되는 조항을 의미한다.
- (5) 자문서(ADVISORY HANDBOOK)는 총회 산하의 기관들이 목회감독과 관련된 절차에서 대회와 노회를 인도하기 위해 만든 지침서이다. 그러한 안내서에 제안된 절차들은 권장되는 것들이나 의무화된 절차는 아니다.

장로교 체제의 기초 편, 운영 체제 편, 예배 지침 편에 대한 수정 사항을 제225회 총회(2022)가 각 노회에 제안했고 과반수의 노회가 이를 승인해서, 그 수정 사항이 이 *규례서*에 반영되었다. 또한 제225회 총회(2022)의 승인과 노회의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교회 권징 편이 *규례서*의 네 번째 부분으로 기존의 권징 조례를 대체한다. 취소선으로 지운 단어들은 본문에서 삭제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단어들은 해당 문단에서 굵게 표시된다.

성적 비행 사건 관련 양식과 자료 지침서와 권징 조례 추가 문서들은 온라인 (index.pcusa.org) 상에 있는 *규례서* 주석 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수정 사항들은 2023년 7월 9일부터 적용된다. 다음의 부분들이 수정되었다:

<i>규례서</i>	<i>PC-Biz, 2022</i>	<i>규례서</i>	<i>PC-Biz, 2022</i>
F-1.0302c	POL 16-1a	W-3.0205	TWE 05-1
F-1.0404	POL 16-1b	W-3.0409	TWE 05-2
G-1.0501	ROD 06-2	W-3.0414	TWE 05-4
G-1.0503	ROD 06-1	W-4.0403	TWE 06
G-2.0503	POL 07	W-5.0104	TWE 05-5
G-2.0505a1	POL 15	W-5.0104	TWE 05-6
G-2.0603	HSB 05-2	W-5.0201	TWE 05-9 (1)(2)
G-2.0605	HSB 05-1	W-5.0204	TWE 05-7
G-2.0804	HSB 06	W-5.0204	TWE 05-8
G-2.1001	MC 08	Church Discipline	ROD 03
G-2.1002	HSB 05-3		
G-2.1103	HSB 05-4		
G-3.0104	MC 05		
G-3.0105	ROD 06-3		
G-3.0106	HSB 05-9		
G-3.0106	POL 10		
G-3.0303c	MC 03		
G-3.0401	MC 06		
G-4.0301	ROD 07		

2023년 7월

J. 허버트 넬슨 II
미국장로교 총회정서기

한국어 번역판 서문

미국장로교 규례서가 한인 교회와 성도들의 지원과 기도 끝에 전면 재번역되어 2023년도에 미국장로교 규례서 2023-2025 판으로 출간되었다. 미국장로교 제 225회 총회(2022)가 기존 규례서의 '권징 조례'를 '교회 권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교회 권징' 편을 2022년 9월에 한국어로 번역했다. 이후 '장로교 체제의 기초' 편, '운영 체제' 편, '예배 지침' 편을 대략 5개월에 걸쳐 번역했고, 2023년 3월에 감수위원회가 모여 최종 감수했다. 이후 3개월에 걸쳐 최종 교정, 편집, 조판 과정을 거쳐 2023년 7월에 미국장로교 규례서 2023-2025 판 한국어 번역본이 완성되었다.

미국장로교 규례서 2023-2025판은 현대 한국어 용례와 문법에 따라 번역어를 선정했고 문장을 다듬었다.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네이버 국어 사전, Merriam 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American Heritage Dictionary를 참고했다. 영어의 문장들을 직역한 부분들은 문맥의 의미를 파악해 한국어 용례에 따라 재번역했다. 원문의 단어들을 사전적인 의미로만 번역해서 실제로 원문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을 문맥의 흐름에 맞게 그 뜻을 파악해 번역했다.

'장로교 체제의 기초' 편은 미국장로교 헌법의 사명선언서로서 미국장로교의 사명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운영 체제' 편은 미국장로교 산하 공의회의 운영 방향을, '예배 지침' 편은 미국장로교 내 각 공의회의 예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 권징' 편은 공의회의 조치와 결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인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두 축을 기초로 용어들을 정리했다. 또 법문의 특징인 정확성과 명료함을 유지했다.

다음의 사람들이 번역과 감수를 위해 헌신했음을 밝힌다:

번역:

김준형 목사	미국장로교 글로벌 언어지원부 수석 번역자
이상의 집사	미국장로교 글로벌 언어지원부 선임 번역자

감수:

허봉기 목사	뉴저지 찬양교회 전 담임목사
김일선 목사	낙스빌 한인교회 담임목사, NCKPC 서기
한만식 목사	유타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은성 목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진우 목사	한마음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문규 목사	한빛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혜영 목사	미국장로교 세계선교부 선교 동역자
김정숙 목사	대서양 한미노회 서기
김현준 목사	동부 한미노회 사무총장
최병훈 목사	증서부 한미노회 사무총장
오지현 목사	총회사무국 중간공의회 부서 디렉터, 총회 부서기
박희준 목사	총회사무국 한국어 공의회 지원 책임자

김소정 목사
Laurie Griffith 장로

미국장로교 신학 예배부 신학 담당자
Associate Stated Clerk,
Associate Director fo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황학천 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파트너, 뉴욕 주 변호사

디자인:

Randy Hobson

Manager of Design and Multimedia,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서다운

프리랜서 편집 디자이너

규례서 참조 번호제에 관한 설명

규례서의 네 부분은 대문자를 사용하여 약자로 표시한다:

F - 장로교 체제의 기초

G - 운영 체제

W - 예배 지침

D - 교회 권징

본문에 있는 각 참조 조항은 해당 부분의 약자로 시작한다. 약자 옆에 있는 숫자 중 소수점 왼쪽에 있는 숫자는 해당 장을 의미한다. 소수점 오른쪽에는 네 개의 숫자가 있다. 첫 두 숫자는 절을 나타내고, 두 번째 두 숫자는 소절을 의미한다.

책으로 출판된 규례서의 각 페이지에는 그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해당 장의 약자와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 [규례서 주석본에는 이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장로교 체제의 기초' 편에서, 제1장의 첫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가 되어 있다:

F-1.01- F-1.02

F-1.0201- 1.0202

이는 '장로교 체제의 기초' 편의 제1장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며 이 페이지에는 1.0과 1.02의 두 절이 있고 1.0201과 1.0202의 두 소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례서의 장과 절이 이처럼 표기되어 있기에 현재의 숫자 표시를 변경시키지 않고서 수정 사항의 장과 절을 추가할 수 있다.

이 표기법을 통해, 회의록, 보고서, 회신 문서에서의 규례서 인용이 영어판, 한국어판, 스페인어판, 점자판에서 매년 동일하게 되었다.

"[이 절은 ...에 의해 삭제되었음]"이라는 구절이 몇 군데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는 규례서 인용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숫자 변경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차 례

장로교 체제의 기초

제 1 장: 교회의 사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	F-1.01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F-1.02
그리스도의 권세	F-1.0201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신다	F-1.0202
그리스도는 교회에 생명을 주신다	F-1.0203
그리스도는 교회의 소망이다	F-1.0204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이다	F-1.0205
교회의 소명	F-1.0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F-1.0301
교회의 표징	F-1.0302
개혁 교회의 특징	F-1.0303
교회의 원대한 목표	F-1.0304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열린 태도	F-1.04
연속성과 변화	F-1.0401
범교회적 성격	F-1.0402
다양성 속의 일치	F-1.0403
열린 태도	F-1.0404

제 2 장: 미국장로교와 그 신앙고백

신앙고백문의 목적	F-2.01
부차적인 표준으로서의 신앙고백	F-2.02
보편적 교회의 신앙 선언서로서의 신앙고백	F-2.03
프로테스탄트 개혁 신앙 선언서로서의 신앙고백	F-2.04
개혁 전통 신앙 선언서로서의 신앙고백	F-2.05

제 3 장: 규례와 운영의 원칙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칙	F-3.01
하나님은 양심의 주인이다	F-3.0101

집단적 판단	F-3.0102
제직	F-3.0103
진리와 선행	F-3.0104
상호 관용	F-3.0105
사람에 의한 선출	F-3.0106
교회의 권한	F-3.0107
교회 권징의 가치	F-3.0108
장로교의 운영 원칙	F-3.02
하나의 교회	F-3.0201
장로에 의한 운영	F-3.0202
공의회로 모임	F-3.0203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드러냄	F-3.0204
과반수에 의한 결정	F-3.0205
감사 및 감독	F-3.0206
공의회에 의한 안수	F-3.0207
공동으로 행사하는 공유된 권한	F-3.0208
공의회 일반 권위	F-3.0209
장로교 체제의 기초가 되는 진술	F-3.03
미국장로교 헌법 구성	F-3.04

운영 체제

제 1 장: 개체교회와 그 성도

개체교회	G-1.01
개체교회의 사명	G-1.0101
개체교회의 교제	G-1.0102
미국장로교 헌법에 의거한 운영	G-1.0103
개체교회를 조직하기	G-1.02
언약 관계 형성	G-1.0201
개체교회의 교인	G-1.03
교인됨과 세례의 의미	G-1.0301
환영과 열린 태도	G-1.0302
교인 가입	G-1.0303
교인의 사역	G-1.0304

교인의 분류	G-1.04
유아 세례 교인	G-1.0401
활동 교인	G-1.0402
임시 교인	G-1.0403
기타 참석자	G-1.0404
공동의회	G-1.05
회의	G-1.0501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G-1.0502
공동의회 소집	G-1.0503
공동의회에 적합한 안건	G-1.0504
의장	G-1.0505
서기와 회의록	G-1.0506

제 2 장: 직제사역, 위임, 공인

교회의 직제사역	G-2.01
그리스도의 사역	G-2.0101
직제 사역	G-2.0102
직제 사역에 대한 부름	G-2.0103
은사와 자격	G-2.0104
양심의 자유	G-2.0105
집사: 긍휼과 섬김의 사역	G-2.02
집사의 정의	G-2.0201
당회의 권위를 따름	G-2.0202
사역 장로: 분별과 운영의 사역	G-2.03
사역 장로의 정의	G-2.0301
사역 장로와 집사에 대한 일반 조항	G-2.04
사역장로와 집사의 선출	G-2.0401
사역장로나 집사로서 사역 준비	G-2.0402
안수식과 임직식	G-2.0403
임직 기간	G-2.0404
관계의 해소	G-2.0405
사역장로나 집사의 사역 해제	G-2.0406
관할권 거부	G-2.0407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가르침과 목회적 돌봄의 사역	G-2.05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한 정의	G-2.0501
노회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G-2.0502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노회원 범주	G-2.0503
목회 관계	G-2.0504
다른 교단 목회자의 이명	G-2.0505
사역기간의 노회 임시 회원 자격	G-2.0506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사역 해제	G-2.0507
인준된 사역에 관여하지 않음	G-2.0508
관할권 거부	G-2.0509
목회 준비	G-2.06
목회 준비의 성격과 목적	G-2.0601
요구되는 시간	G-2.0602
지망 단계의 목적	G-2.0603
후보 단계의 목적	G-2.0604
노회의 관리	G-2.0605
언약 관계 기간 중의 섬김	G-2.0606
섬김에 대한 최종 평가와 논의	G-2.0607
언약 관계의 이전	G-2.0608
언약 관계 철회	G-2.0609
특별한 상황에 따른 조정	G-2.0610
안수	G-2.07
안수	G-2.0701
안수 주체	G-2.0702
안수식	G-2.0703
안수 기록	G-2.0704
청빙과 위임	G-2.08
목회자의 공석	G-2.0801
목회자 청빙 위원회 선출	G-2.0802
청빙 절차	G-2.0803
청빙 조건	G-2.0804
위임식	G-2.0805
목회 관계의 해소	G-2.09
공동의회	G-2.0901
담임목사, 동사무사, 부목사의 요청	G-2.0902

개체교회의 요청	G-2.0903
노회의 조치	G-2.0904
요청받았을 때만 개체교회를 섬길 수 있음	G-2.0905
지역 장로를 특정 목회 사역에 파송함	G-2.10
직무	G-2.1001
훈련, 심사, 파송	G-2.1002
파송식	G-2.1003
감독	G-2.1004
공인된 교회 사역	G-2.11
공인된 교회 사역	G-2.1101
노회와 공인된 교회 사역	G-2.1102
기독교 교육사	G-2.1103

제 3 장: 교회의 공의회

공의회의 일반원칙	G-3.01
교회의 하나됨의 표현인 공의회	G-3.0101
교회의 관할권	G-3.0102
참여와 대표성	G-3.0103
임원	G-3.0104
회의	G-3.0105
사명의 수행	G-3.0106
기록물	G-3.0107
행정 감사	G-3.0108
위원회와 전권위원회	G-3.0109
행정 담당 직원	G-3.0110
공천 절차	G-3.0111
보험	G-3.0112
재정	G-3.0113
당회	G-3.02
구성과 책임	G-3.0201
타 공의회와의 관계	G-3.0202
회의	G-3.0203
회의록과 기록물	G-3.0204
재정	G-3.0205
노회	G-3.03

구성과 책임	G-3.0301
대회, 총회와의 관계	G-3.0302
당회와의 관계	G-3.0303
회의와 정족수	G-3.0304
회의록과 기록물	G-3.0305
노회 회원 자격	G-3.0306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개체교회에게 목사, 상담자, 조연자가 됨	G-3.0307
대회	G-3.04
구성과 책임	G-3.0401
총회와의 관계	G-3.0402
노회와의 관계	G-3.0403
기능의 축소	G-3.0404
회의와 정족수	G-3.0405
회의록과 기록물	G-3.0406
총회	G-3.05
구성과 책임	G-3.0501
타 공의회와의 관계	G-3.0502
회의와 정족수	G-3.0503

제 4 장: 교회와 민법

법인과 이사	G-4.01
법인과 권한	G-4.0101
법인의 구성원	G-4.0102
교회 자산	G-4.02
사명 완수의 도구로서의 자산	G-4.0201
자산과 관련된 결정	G-4.0202
교회 자산의 신탁 보유	G-4.0203
헌법에 어긋나는 자산의 활용	G-4.0204
해산 또는 소멸된 개체교회의 자산	G-4.0205
교회 자산의 매각, 저당, 임대	G-4.0206
분열된 개체교회의 자산	G-4.0207
예외 사항들	G-4.0208
비밀 보장과 그 예외의 경우	G-4.03
신뢰와 개인 정보 보호	G-4.0301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	G-4.0302
제 5 장: 범교회적 연합과 일치	
범교회적 일치 노력	G-5.01
범교회적 연합	G-5.0101
종교 간 관계	G-5.0102
일반 사회 조직	G-5.0103
타 교단과의 관계	G-5.02
교류	G-5.0201
완전 교류	G-5.0202
범교회적 선언문	G-5.0203
완전한 유기적 연합	G-5.03
연합 노회	G-5.04
헌법적 권위	G-5.0401
연합을 위한 계획	G-5.0402
연합 개체교회 전도 사역	G-5.05
제 6 장: 헌법의 해석과 개정	
개혁	G-6.01
헌법에 대한 해석	G-6.02
신앙 고백서의 개정	G-6.03
규례서 개정	G-6.04
예의 사항	G-6.05
특별 조항의 개정	G-6.06

예배 지침

머리말

제 1 장: 기독교 예배의 신학

기독교 예배: 서론	W-1.01
하나님께 영광	W-1.0101
은혜와 감사	W-1.0102
하나님의 언약	W-1.0103

예수 그리스도	W-1.0104
성령	W-1.0105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	W-1.0106
예배와 교회	W-1.0107
시간, 공간, 물질	W-1.02
창조와 구속	W-1.0201
시간	W-1.0202
공간	W-1.0203
물질	W-1.0204
언어, 상징, 문화	W-1.03
육신이 된 말씀	W-1.0301
언어	W-1.0302
상징물	W-1.0303
문화	W-1.0304

제 2 장: 개혁 전통 예배의 순서

근거와 원리	W-2.01
예배 순서의 근거	W-2.0101
형식과 자유	W-2.0102
예배를 위한 모임	W-2.02
왕 같은 제사장	W-2.0201
기도로 참여함	W-2.0202
예배 인도와 직제 사역	W-2.03
예배를 위한 은사	W-2.0301
집사	W-2.0302
사역 장로	W-2.0303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W-2.0304
공동 책임과 의무	W-2.0305

제 3 장: 주일 예배

주일의 예배	W-3.01
부활의 날	W-3.0101
주일 예배 형식	W-3.0102
예배의 순서	W-3.0103
예배 드리기 위해 모임	W-3.02

예배를 준비함	W-3.0201
예배 초청 문구	W-3.0202
시편, 찬송가, 영가	W-3.0203
기도	W-3.0204
죄의 고백과 용서	W-3.0205
말씀	W-3.03
말씀 선포의 신학	W-3.0301
조명을 위한 기도	W-3.0302
성경	W-3.0303
음악으로 응답함	W-3.0304
선포	W-3.0305
믿음의 확인	W-3.0306
세례와 그 제자도	W-3.0307
중보 기도	W-3.0308
헌금과 주의 만찬	W-3.0309
성례전	W-3.04
성례전 신학	W-3.0401
세례의 신학	W-3.0402
세례에 대한 책임	W-3.0403
세례 대상자 소개	W-3.0404
믿음의 고백	W-3.0405
세례 전 감사 기도	W-3.0406
세례의 집례	W-3.0407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임	W-3.0408
주의 만찬의 신학	W-3.0409
주의 만찬에 대한 책임	W-3.0410
우리의 삶을 드림	W-3.0411
성찬식 기도	W-3.0412
떡을 떼다	W-3.0413
성찬식	W-3.0414
주의 만찬을 하지 않는 경우	W-3.0415
파송	W-3.05
결단	W-3.0501
축도와 권면	W-3.0502
세상에서의 섬김	W-3.0503

제 4 장: 목회적 특별 예배

세례에 기초한 예배, 세례를 완성하는 예배	W-4.01
세례로부터 비롯됨	W-4.0101
세례 언약의 재확인	W-4.02
세례 받은 이를 목양함	W-4.0201
주의 만찬 참여를 격려함	W-4.0202
공적 고백	W-4.0203
새 교인	W-4.0204
새롭게 되며 다시 다짐함	W-4.0205
섬김을 위한 파송	W-4.03
그리스도인의 섬김	W-4.0301
안수, 위임, 파송	W-4.04
사역으로 부르심	W-4.0401
안수, 위임, 파송 예식의 기본 요건	W-4.0402
예배 순서	W-4.0403
안수식 헌법 질문	W-4.0404
변화를 기념하며	W-4.05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W-4.0501
떠나는 교인	W-4.0502
섬김의 종료	W-4.0503
문책과 복권	W-4.0504
결혼 언약	W-4.06
그리스도인의 결혼	W-4.0601
결혼 준비	W-4.0602
결혼 예식 순서	W-4.0603
사회법에 따른 결혼을 인정하는 일	W-4.0604
어떤 것도 강요해서는 안 됨	W-4.0605
죽음과 부활	W-4.07
부활에 대한 증거	W-4.0701
장례식 방침	W-4.0702
장례 예식의 요건	W-4.0703
장례 예식 순서	W-4.0704

제 5 장: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

예배와 개인의 삶 W-5.01

 개인의 삶 W-5.0101

 일상의 삶에서의 기도 W-5.0102

 그 외의 제자도 실천 사항 W-5.0103

 가정 예배 W-5.0104

 그리스도인의 소명 W-5.0105

예배와 신앙 공동체 내의 교회사역 W-5.02

 신앙 공동체 내의 교회사역 W-5.0201

 매일 드리는 기도 예배 W-5.0202

 기독교 교육 W-5.0203

 목회적 돌봄 W-5.0204

 교회의 공의회 W-5.0205

 기타 모임 W-5.0206

예배 그리고 세상에서의 교회의 사명 W-5.03

 세상에서의 교회의 사명 W-5.0301

 복음화 W-5.0302

 금후 W-5.0303

 정의와 평화 W-5.0304

 피조물을 돌봄 W-5.0305

예배와 하나님의 통치 W-5.04

 하나님의 통치 W-5.0401

교회 권징

제 1 장 교회 권징의 원칙 D-1.0000

 전문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여된 권한 D-1.01

 교회 권징의 정의 D-1.02

 교회 권징의 정의 D-1.0201

 교회 권징의 한계 D-1.0202

 교회 권징의 목적 D-1.03

 교회 권징의 목적 D-1.0301

 적법 절차 D-1.0302

화해와 조정	D-1.04
제 2 장 사법절차의 정의	D-2.0000
사법 절차	D-2.01
책임 소재 확인을 위한 절차	D-2.0101
교단의 공의회	D-2.0102
시정 절차	D-2.02
공의회의 책임	D-2.0201
부적법 행위와 불이행	D-2.0202
징계 절차	D-2.03
개인의 책임	D-2.0301
위법행위의 정의	D-2.0302
기준과 절차	D-2.04
제 3 장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D-3.0000
선출	D-3.01
구성	D-3.0101
검토자와 정족수에 미치는 효력	D-3.0102
직책 수행	D-3.02
조와 임기	D-3.0201
공석	D-3.0202
자격	D-3.0203
위원회 활동 비용	D-3.03
임원	D-3.04
권한	D-3.05
회의	D-3.06
시간과 장소	D-3.0601
정족수	D-3.0602
제 4 장 시정	D-4.0000
시정 절차	D-4.01
목적	D-4.0101
사법 절차의 한계	D-4.0102
마감일과 제출	D-4.0103

시정심판청구	D-4.02
절차의 시작	D-4.0201
서기의 책임	D-4.0202
관련 당사자들	D-4.0203
변호인단	D-4.0204
구성	D-4.0204a
규정에 따른 임명	D-4.0204b
변호인단이 될 수 없는 사람	D-4.0204c
기간 제한	D-4.0205
시정 사건의 시정심판청구인 자격과 관할권	D-4.0206
관할권의 효력	D-4.0207
시정의 내용	D-4.03
시정심판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D-4.0301
시정심판청구서 제출방법	D-4.0302
집행 정지 요청	D-4.04
집행 정지 요청	D-4.0401
예비 결정	D-4.05
서류 검토	D-4.0501
예비 결정	D-4.0502
D-4.0401c에 의한 집행 정지 요청 처리	D-4.06
요청 검토	D-4.0601
결정과 제출	D-4.0602
대응과 향후 조치	D-4.07
예비 결정이 사건을 받아들인 경우	D-4.0701
예비 결정 원안 또는 수정안이 사건을 기각한 경우	D-4.0702
시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	D-4.0703
예비 결정과 집행 정지에 대한 이의 제기	D-4.0704
제 5 장 시정 사건 심판절차	D-5.0000
사전 심리 절차	D-5.01
피청구인 공의회 서기의 임무	D-5.0101
사건 기록	D-5.0102
추가 제출	D-5.0103
사전 심리 회합	D-5.0104

심판절차 진행	D-5.02
소환장과 증언	D-5.03
사건 관련 당사자와 증인의 소환	D-5.0301
소환 대상자	D-5.0302
다른 공의회 소속의 증인	D-5.0303
비용	D-5.0304
소환장 송달	D-5.0305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된 증언	D-5.04
심판절차의 진행	D-5.05
변호인	D-5.0501
자료 전달과 의사소통	D-5.0502
심판절차 진행 상의 통제	D-5.0503
절차상 제기되는 문제	D-5.0504
심판절차 불참	D-5.0505
정족수의 미달	D-5.0506
심판절차	D-5.06
위원장의 지침 안내	D-5.0601
관련 당사자의 이의 제기	D-5.0602
예비 결정사항과 이의 제기	D-5.0603
시정심판청구서의 수정	D-5.0604
모두 진술	D-5.0605
증거	D-5.07
정의	D-5.0701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	D-5.0702
증인	D-5.0703
증언	D-5.0704
최후 진술	D-5.08
결정	D-5.09
심의	D-5.0901
결정	D-5.0902
결정의 효력	D-5.0903
새로운 증거	D-5.0904
상소	D-5.0905

심판절차 과정에 대한 기록	D-5.10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서기의 임무	D-5.1001
기록 추가	D-5.1002
공의회 서기의 임무	D-5.1003
제 6 장 시정 사건에서의 상소	D-6.0000
상소 제기	D-6.01
정의	D-6.0101
상소 개시	D-6.0102
상소 청구서	D-6.02
상소 청구서 제출	D-6.0201
상소 청구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	D-6.0202
공의회 서기의 임무	D-6.03
상소의 효력	D-6.04
집행 정지가 없는 경우	D-6.0401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D-6.0402
상소 철회	D-6.05
예비 절차	D-6.06
상소 청구서 검토	D-6.0601
예비 결정	D-6.0602
예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D-6.0603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D-6.0604
사건 기록	D-6.07
문서 목록	D-6.0701
상소 관련 기록 제출	D-6.0702
기록의 수정	D-6.0703
변론 요약서	D-6.08
상소인의 변론요약서 제출	D-6.0801
상소인이 변론요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D-6.0802
피상소인의 답변요약서 제출	D-6.0803
피상소인이 답변요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D-6.0804
상소인의 추가 변론요약서	D-6.0805
기간 연장	D-6.09

기록과 변론요약서 전달	D-6.10
사전 심리 회합	D-6.11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D-6.12
검토 기준	D-6.1201
투표 절차	D-6.1202
결정	D-6.1203
제 7 장 징계 절차	D-7.000
징계 절차	D-7.01
목적	D-7.0101
징계 절차의 시작	D-7.0102
위법 행위의 정의	D-7.0103
마감일과 제출	D-7.0104
마감일	D-7.0104a
제출 방법	D-7.0104b
혐의 제기	D-7.02
혐의	D-7.0201
기간 제한	D-7.0201a
누가 제기할 수 있는가	D-7.0201b
혐의 제기의 내용	D-7.0201c
혐의 사항의 제출	D-7.0201d
위법 행위 의심 정황을 어떤 출처를 통해 알게된 회원들	D-7.0201e
본인에 대한 혐의 제기	D-7.0201f
해명 확인 요청	D-7.0202
관할권	D-7.03
일차 관할권	D-7.0301
일차 관할권에 대한 예외 사항	D-7.0302
회부 의뢰서	D-7.04
회부 의뢰서의 정의	D-7.0401
하위 공의회의 임무	D-7.0402
상위 공의회의 임무	D-7.0403
회부 요청에 대한 조치	D-7.0404
조사	D-7.05

조사 위원회로의 회부	D-7.0501
회원 자격 이전	D-7.0502
조사 위원회의 위원 자격	D-7.06
조사 위원회의 비용	D-7.07
보조적인 역할	D-7.08
변호인	D-7.0801
옹호자	D-7.0802
조정인	D-7.0803
성적 확대 관련 혐의 제기	D-7.09
정의	D-7.0901
직위 해제	D-7.0902
직위 해제의 효력	D-7.0903
직위 해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D-7.0904
직위 해제에 관한 노회 정책	D-7.0905
징계 절차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책임	D-7.10
혐의 제기자의 권리	D-7.1001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권리	D-7.1002
피혐의자의 권리	D-7.1003
조사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	D-7.1004
조사 과정	D-7.11
예비 검토	D-7.1101
피조사인들에게 통지	D-7.1102
조사의 진행	D-7.1103
회부 요청	D-7.1104
조사 절차 검토	D-7.12
검토 사항	D-7.1201
검토의 수행	D-7.1202
조사 위원회의 결론	D-7.13
징계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D-7.14
서면 보고서	D-7.1401
결정에 대한 검토	D-7.1402
징계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D-7.15

징계심판청구 제기의 기한	D-7.1501
조사 위원회의 의무	D-7.1502
징계심판청구	D-7.1503
대안적 해결책	D-7.16
대안적 해결책의 시도	D-7.1601
대안적 해결책의 종류	D-7.1602
회복적 정의	D-7.1603
회복적 정의의 목적	D-7.1603a
회복적 정의의 실행	D-7.1603b
조정	D-7.1604
협상을 통한 기타 합의 사항	D-7.1605
당회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조치	D-7.1606
제 8 장 징계 사건에서의 심판절차	D-8.0000
사전 심리 절차	D-8.01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	D-8.0101
자료 전달과 의사소통	D-8.0102
사전 심리 회합	D-8.0103
사전 심리 회합과 심판절차 사이의 기간	D-8.0104
심판절차 진행	D-8.02
징계 사건의 심판절차	D-8.0201
소환과 증언	D-8.03
소환	D-8.0301
소환 대상자	D-8.0302
다른 공의회 소속의 증인	D-8.0303
비용	D-8.0304
소환장 송달	D-8.0305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된 증언	D-8.04
심판 절차	D-8.05
변호인	D-8.0501
심판절차 진행 상의 통제	D-8.0502
절차 상의 문제	D-8.0503
심판절차 불참	D-8.0504
비공개 진행	D-8.0505

정족수의 미달	D-8.0506
징계 심판 절차	D-8.06
위원장의 지침 안내	D-8.0601
관련 당사자의 이의 제기	D-8.0602
예비 결정과 이의 제기	D-8.0603
유책 또는 무혐의 인정	D-8.0604
모두 진술	D-8.0605
증거	D-8.07
정의	D-8.0701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	D-8.0702
전해 들은 증거	D-8.0703
증인	D-8.0704
증언	D-8.0705
최후 진술	D-8.08
결정	D-8.09
심의	D-8.0901
유책 결정	D-8.0902
문책의 강도에 대한 결정	D-8.0903
제출과 당사자에게의 통보	D-8.10
즉시 제출	D-8.1001
당사자에게의 통보	D-8.1002
새로 제출된 증거	D-8.11
상소 제기 이전	D-8.1101
상소 제기 이후	D-8.1102
징계심판절차 과정에 대한 기록	D-8.12
서기의 의무	D-8.1201
기록 추가	D-8.1202
집행	D-8.13
제 9 장 징계 사건에 있어서 문책과 복권	D-9.0000
문책	D-9.01
문책의 등급	D-9.0101
결정과 문책에 대한 보고	D-9.0102
질책	D-9.0103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 병행 질책	D-9.0104
목표 전달	D-9.0104a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	D-9.0104b
자발적인 회개 행위	D-9.0104c
문책 선고	D-9.0104d
임시 배제	D-9.0105
목표 전달	D-9.0105a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	D-9.0105b
자발적인 회개 행위	D-9.0105c
직제 사역 수행으로부터의 임시 배제의 효력	D-9.0105d
회원 자격 임시 배제의 효력	D-9.0105e
목사에 대한 임시 배제의 효력	D-9.0105f
임시 배제 통보	D-9.0105g
임시 배제 문책의 종료	D-9.0105h
조기 복권	D-9.0105i
문책 선고	D-9.0105j
직제사역 그리고/또는 회원자격 박탈	D-9.0106
직제사역 박탈의 결과	D-9.0106a
박탈 통보	D-9.0106b
문책 선고	D-9.0106c
복권	D-9.02
회원자격 혹은 직제사역의 복권	D-9.0201
회원 자격의 복권	D-9.0202
직제사역으로의 복권	D-9.0203
제 10 장 징계에 대한 상소	D-10.0000
상소 제기	D-10.01
정의	D-10.0101
상소 개시	D-10.0102
관련 당사자들	D-10.0103
상소 청구서	D-10.02
상소청구서 제출	D-10.0201
상소청구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D-10.0202
서기의 임무	D-10.03
상소 철회	D-10.04

예비 절차	D-10.05
상소 청구서 검토	D-10.0501
예비 결정	D-10.0502
예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D-10.0503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D-10.0504
사건 기록	D-10.06
문서 목록	D-10.0601
상소 관련 기록 제출	D-10.0602
기록의 수정	D-10.0603
변론 요약서	D-10.07
상소인의 변론요약서 제출	D-10.0701
상소인이 변론요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D-10.0702
피상소인의 답변요약서 제출	D-10.0703
피상소인이 답변요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D-10.0704
상소인의 응답 변론요약서 제출	D-10.0705
기간 연장	D-10.08
기록과 요약서의 전달	D-10.09
사전 심리 회합	D-10.10
상소 심리	D-10.11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D-10.12
검토 기준	D-10.1201
투표 절차	D-10.1202
결정	D-10.1203
징계 사건 상소에서의 번복의 효력	D-10.1204

부록

영어-한국어 어휘 모음

성경 구절과 신앙고백문 인용 색인

장로교 체제의 기초

장로교 체제의 기초

제 1 장 교회의 사명¹

F-1.01 하나님은 하시는 일

복음의 좋은 소식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지속시키시고, 다스리시며, 변화시키신다는 것이다. 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언약을 맺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 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사셨고 세상을 위해 죽으셨으며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눈먼 자는 볼 수 있게 하고, 억압받는 이에게 자유를 주며, 온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 이것이 교회의 삶과 사역의 본질과 형태를 구성한다.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과 인간을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또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있어 더 고귀한 목표는 없다.

F-1.02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F-1.0201 그리스도의 권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두셨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a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두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b 교회의 삶과 사명은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삶과 사역에 즐겁게 동참하는 것이다.

F-1.0202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신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성결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 교회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만이 그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며, 사용하신다.

¹ 본 '장로교 체제의 기초' 편과 '운영체제' 편 전반에 걸쳐, 대문자 "교회(Church)"는 보편적 교회,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도록 부름받은 교회를 의미한다. 이 단어가 명칭(예: 미국장로교, Presbyterian Church (U.S.A.))의 일부로 쓰인 경우는 예외이다.

F-1.0203 그리스도는 교회에 생명을 주신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믿음과 생명을 주시고, 교회가 하나되게 하시며,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질서와 규율을 세우신다. 성경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을 가르쳐 주며, 우리는 이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성과 올바른 판단으로 말씀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F-1.0204 그리스도는 교회의 소망이시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뜻을 같이 하여,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소망이심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의 권위 하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활력있고 즐거운 삶을 자유롭게 살아감을 고백한다.

F-1.0205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골 1:19-20).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람들, 모든 피조물이 화목을 이루었다는 기쁜 소식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진리를 받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거룩해지고 하나됨을 이룬다.

F-1.03 교회의 소명

F-1.0301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신다. 교회는 세상 속 공동체로서 그 삶에서 이러한 은사를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전 12:27-28):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즉 교회의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더라도 오로지 주님께만 의탁해야 한다.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분명하게 알고 기뻐해야 한다. 이 새로운 창조는 인간의 삶과 만물의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창조를 의지하여 교회는 현재를 살아간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즉 죄가 용서받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반목과 분열의 벽이 무너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즉 교회는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은혜의 기쁜 소식을 교회를 넘어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

F-1.0302 교회의 표장²

보편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우리는 교회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임"을 확인한다.

a. 교회의 하나됨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것처럼, 교회도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이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자 하며, 결코 교회만을 위해서 기독교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려 하지 않는다. 성령도 한 분이시며, 소망도 하나며, "주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며, 세례도 하나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기에, 교회는 하나다"(에베소서 4:5-6).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이므로,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관계 맺도록 부르신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와 함께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 제사장이 되어,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각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나누는 것이다. 각 교단으로 나누어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저해하지만 파괴하지는 않는다. 미국장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와의 역사적 연속성 하에, 하나됨을 저해하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안의 다른 모든 교회들과의 유대 관계를 추구하며 이를 더 공고히 할 것이다^d.

b. 교회의 거룩함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없애셨다. 교회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교회를 구별하여 세우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 교회 교리의 순수함이나 의로운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거룩하기에, 교회의 구성원과 직제 사역을 맡은 이들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에 감사하며 성경과 은혜의 도구들(W-1.0106)을 통해 모든 신자와 공동체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존한다. 우리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 가운데서 죄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백한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순결과 정의와 진리를 향해 힘써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부름받음을 고백한다. 순결, 정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새창조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c. 교회의 보편성

보편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을 회복시키셨

² "니케아 신경" 신앙 고백서, 1.3을 참고

고, 우리의 분열을 치유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시대, 장소, 인종, 나라, 연령, 능력, 성별, 조건,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셨음을 증언하는 데 힘쓴다.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증거할 때 더 깊은 믿음, 더 큰 소망, 더욱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이끈다.

d. 교회의 사도됨

사도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셔서 만물과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나누도록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사도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기 위해 힘쓴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들의 증언, 즉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이들과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기쁜 소식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교회를 보내셨고 지금도 보내고 계신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가 시작되었으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속박받는 이들을 해방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세상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교회는 말씀과 사역을 통해 증거한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바를 따르고, 하나님의 새 창조, 즉 오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보냄을 받는 것이다. 미국장로교는 선지자와 사도들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한다.

교회는 교회가 받은 복음에 충실하며 신앙고백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제자로서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

교회는 다음의 일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실한 전도자가 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든다;

예배, 기도, 친교, 침침의 깊은 삶을 이웃들과 나눈다;

아프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돌보며, 사람들을 죄와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의 통치를 이 세상에 이루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동참한다.

F-1.0303 개혁 교회의 특징³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 종교 개혁의 초기로부터, 개혁 교회의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실현해왔다:

³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XVIII 장 (신앙 고백서, 3.18) 참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선포되고 전해지며,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교회 징계가 공정하게 집행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약속에 응답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새 창조에 동참하도록 초청한다;

성례전을 집행하고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도래할 천국의 잔치를 고대하며, 소외되고 굶주린 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하나님의 약속의 권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내심에 동참한다.

F-1.0304 교회의 원대한 목표

교회의 원대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선포;

하나님 자녀들의 안식처, 양육, 영적 교제;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함;

진리의 수호;

사회 정의 구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나타냄.⁴

F-1.04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열린 태도

F-1.0401 연속성과 변화

미국장로교 헌법에 명시된 장로교 운영체제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참된 교회의 표징을 중심으로 세워졌다. 장로교 운영체제의 모든 것은 교회의 주되신 분 권위 아래에 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 공동체와 신자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으로 이끄신다. 교회는 개혁과 새로운 방향을 추진할 때, 앞서 가시며 그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

⁴ '교회의 원대한 목표'라는 이 선언문은 북미연합장로교회에서 작성한 것을 여기에서 약간 수정한 것이다. 북미 연합장로교회는 1958년에 미국장로교와 통합하였다. 이 선언문은 두 교단의 통합 교단인 미국연합장로교회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1904년에서 1910년 사이에 교단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 끝에, 오늘날 이 대표적인 선언문을 북미연합장로교회가 채택했다.

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로마서 12:2).

F-1.0402 범교회적 성격(Ecumenicity)

미국장로교 헌법 내 장로교 운영체제는 성경에 기초해 만들어졌으나,^e 교회 존재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F-1.0403 다양성 속의 일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라디아서 3:27-29).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일치는 교회 구성원의 풍부한 다양성 속에 반영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인종, 민족, 연령, 성별, 장애, 지역, 신학적 이해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연합하신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중에 어느 누구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 미국장로교는 미국장로교 회원인 모든 개인과 모임이 미국장로교의 예배와 운영과 새로운 삶 속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어떤 구성원도 헌법에 진술된 것 이외의 어떤 다른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

F-1.0404 열린 태도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새롭게 열린 태도를 추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고통을 마음 아파하시며, 인간성을 새롭게 회복 시키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구성원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피조물됨, 죄성, 단절, 고통의 현실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미래를 나눈다.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미국장로교는 다음을 추구한다:

교회 및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한 더 철저한 순종에 대해, 더 기쁨이 넘치는 예배 및 사역에 대해 열린 태도;

구성원에 대한 열린 태도. 새로운 인간성의 가시적 표현으로서, 모든 연령, 인종, 민족, 능력, 성별, 조건을 아우르는 모든 사람의 공동체, 즉 성령의 권능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 간다;

미국장로교 제도의 가능성과 위협성을 보는 열린 태도.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이 제도가 충실하고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교회가 하나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개혁하시는 데 대해 열린 태도. 하나님께로 교회의 사명을 좀더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다.

제 2 장

미국장로교와 그 신앙고백

F-2.01 신앙고백문의 목적

미국장로교는 신앙고백서 내의 신조와 고백을 통해 미국장로교의 신앙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 미국장로교는 이 신앙고백문들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지를 교회의 구성원과 세계를 향해 선포한다. 이 신앙고백문들은 교회를 그 믿음과 행위에 의해 연결된 사람들의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신앙고백문들은 교회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할 때에 지침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혁 기독교 전통의 정수가 집약되어 있다. 또 이 신앙고백문들은 교회가 건전한 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선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 신앙고백문들은 개인이 더욱 깊이 헌신하도록 도우며 신앙 공동체의 삶과 증인됨을 더 견고하게 한다.

본 교단의 신조 및 고백문은 하나님 백성이 역사 속 특정상황을 겪고 대응하는 중에 작성되었다. 저자들이 진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했던 그 상황에서, 신조와 고백문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다. 이들은 살아있는 전통을 통한 기도, 사색, 경험의 결과물이다. 이들 신조 및 고백문은 그 시대의 사회적 및 문화적 배경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복음의 보편적인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 신조 및 고백문은 종종 서로 상충되는 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공통의 믿음을 확정하고 있다.

F-2.02 부차적인 표준으로서의 신앙고백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문들은 교회 내의 부차적인 표준으로서,^a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종속된다. 이들 신앙고백 표준들은 성경에 부차적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표준이다. 이 신앙고백들은 신중하게 작성되었고 동의의 받았다. 그러므로 경시하거나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안수받은 이들이 신앙고백에 표현되어 있는 믿음을 심하게 거부하면, 미국장로교는 이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며, 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단의 신앙고백을 변경하는 과정은 의도적으로 어렵게 했고, 교회 전체에 걸쳐 대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며, 교리의 표준 및 운영체제의 표준에 대한 개혁에 열려 있어야 한다. 교회는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secundum verbum Dei*, 즉 성령의 권능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었고 또 항상 개혁 중이다"라는 것을 확신한다.

F-2.03 보편적 교회의 신앙 선언서로서의 신앙고백

신앙고백문들을 통해, 미국장로교는 보편적 교회의 신앙을 증거한다. 신앙고백문들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및 사도적 교회^b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즉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고, 보편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신경들, 특히 니케아 신경과 사도 신경의 표현과 채택을 인정하고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영존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로의 성육신화의 신비에 대한 이 신경들의 정의를 인정하고 있다.

F-2.04 프로테스탄트 개혁 신앙 선언서로서의 신앙고백

그 신앙고백문들을 통해, 미국장로교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선언들을 지지한다. 이러한 지지의 핵심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다. 프로테스탄트 표어인 '오직 은혜,^c 오직 믿음,^d 오직 성경'^e은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동기부여하는 기본적인 이해의 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F-2.05 개혁 전통 신앙 선언서로서의 신앙고백

그 신앙고백문들을 통해, 미국장로교는 개혁교회 전통의 신앙을 선언한다. 이 전통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내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와 사랑의 자유함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ⁱ 지속시키시며,^j 통치하시고,^k 구속하시는^l 하나님의 위대하심,^f 거룩하심,^g 섭리하심^h에 대한 확증이 자리잡고 있다.^m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핵심적인 선언과 관련된 개혁 전통의 또다른 큰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섬기고 구원받도록^o 선택된ⁿ 하나님의 백성 ;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회 내의 질서에 대한 훈련된 관심을 그 특징으로 하는 언약의 삶;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은사를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신실한 청지기 자세;

우상숭배^p와 폭력^q에 빠지는 인간 성향에 대한 인식. 이러한 인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변혁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는다.

제 3 장 규례와 운영의 원칙

F-3.01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칙¹

본 *규례서*를 내놓으면서, 미국장로교는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칙을 재확인한다. 이는 우리의 공동 유산의 일부이며, 우리 장로교 교회 운영의 개념 및 체제의 기본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F-3.0101 하나님은 양심의 주인이다

a.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양심은 신앙이나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² 반하거나 벗어나는 인간의 교리와 계명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³

b. 따라서 우리는 종교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 개인적 판단의 권리를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우리는 어떤 종교 조직도,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공통적인 경우 외에, 세속 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F-3.0102 집단적 판단

위에서 언급한 공통 권리의 원칙에 온전히 입각하여, 모든 기독교 교회 또는 특정 교회들의 연합은 그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는 조건들, 그 목회자들과 구성원의 자격 요건, 그리스도가 지정한 그 내적 운영의 전체 체계를 공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들은 공동체 소속 조건들을 지나치게 모호하게 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협소하게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이들은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들 자신의 권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F-3.0103 제직

우리의 축복이 되신 구세주는 그의 몸인 가시적 교회를 세우시고 양육하심에 있어 제직들⁴을 임명하셨다.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전을 집전할 뿐만 아니라, 진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

¹ 이 항목의 경우, 첫 번째 문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뉴욕 필라델피아 대회가 처음 작성했고, 1788년에 그 대회가 출판한 '운영 체제'의 서문으로 사용되었다. 그 해에 뉴욕 필라델피아 대회는 네 개의 대회로 분할된 후 미합중국 장로교(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총회로 전환되었으며, 다음 해에 첫 총회를 개최했다. 새롭게 형성된 네 개의 대회는 뉴욕/뉴저지 대회, 필라델피아 대회, 버지니아 대회, 캐롤라이나 대회였다. 이들 네 개 대회의 노회들은 1789년 5월 21일에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첫 총회에 그들의 대표들을 파견했다. 이후 미국 남장로교(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와 미합중국 연합장로교("북장로교,"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는 1788년에 구상된 이 체계를 따라서 운영되었다.

² 여기에서 인용된 "사람들(men)"과 "사람의(man's)" 표현은 18세기식 표현으로 모든 사람들(all persons)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역자 주: 원문의 men과 man's는 각각 '남자들'과 '남자의'로 이해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이 주를 달아 설명하고 있다.)

³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미국장로교 신앙고백서, 6.109)을 참고할 것.

⁴ "제직들" 및 "직분"은 본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칙' 편의 역사적 언어의 일부로서 보존하려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사용되었다. '운영 체제' 편의 다른 곳에서는 "직제 사역자"와 "직제 사역"과 같은 용어들이 "제직"과 "직분" 대신 사용된다.

해 징계를 행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원칙을 지키며, 오류를 범한 자들과 물의를 일으킨 자들을 견책하거나 내보내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이들 제직들과 전체 교회의 책임이다.

F-3.0104 진리와 선함

진리는 선함으로 이어진다. 우리 구세주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 거룩함을 고양시키는 경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 진리와 거짓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며 사람의 생각을 가치있게 여기지 않는 생각보다 더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이와 반대로 믿음과 실천, 또 진리와 의무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발견하거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모두 가치없는 일이 될 것이다.

F-3.0105 상호 관용

위의 원칙에 대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 인정된 모든 사람들은 건전한 신앙을 지녀야 한다는 실질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뿐 아니라, 좋은 성품과 원칙을 지닌 사람들도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진리와 형식이 있음을 믿는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서로에 대해 상호 관용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단체의 의무다.

F-3.0106 사람에 의한 선출

비록 교회 제직의 성품, 자격 요건, 권위 뿐 아니라 제직 임명과 제도의 방식이 성경에 적혀 있지만, 특정 단체 내에서의 이 권위의 행사를 위해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그 단체의 일이다.

F-3.0107 교회의 권한

교회의 모든 권한은, 교회 자체가 행사하든지, 또는 위임된 권한에 의해 대표의 방식으로 행사되든지, 보조적이며 선포적일 뿐이다.^a 다시 말해, 성경 만이 신앙과 태도의 유일한 근거다. 교회의 처리회(judicatory)⁵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양심을 구속하는 법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연약함 때문에 비록 모든 대화와 공의회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나, 이미 제정되었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법에 따라 판단하는 권리보다는—비록 이 권리가 현 상태의 필요에 따라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에게 맡겨진 것이라 할지라도—법을 새로 만들자는 억지 주장이 훨씬 더 위험하다.

F-3.0108 교회 권징의 가치

마지막으로, 상기한 성경적 및 합리적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면, 교회 권징의 구속력과 엄정함은 모든 교회의 영광과 행복에 이바지할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그 목적 면에 있어 순전히 도덕적이거나 영적이어서야 하고,^b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교회 권징은 그 자체의 정의로움, 공정한 대중의 인정, 보편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 지지와 축복을 통해서만 그

⁵ 이곳에 쓰인 "처리회(judicatory)"라는 용어는 '원칙' 편의 역사적 언어의 일부로 사용되었으며, '운영 체제' 편에서는 "공의회(council)"로 대체되었다.

권위를 얻게 된다.

F-3.02 장로교의 운영 원칙⁶

미국장로교는 보편 교회로서의 그의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장로교 체제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것을 재확인한다.

F-3.0201 하나의 교회

미국장로교의 개별 회중은 어디에 있든지, 집합적으로, 미국장로교라 불리는 하나의 교회를 구성한다.

F-3.0202 장로에 의한 운영

이 교회는 장로, 즉 사역장로들과 교역장로들(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고 칭하기도 함)에 의해 운영된다. 사역장로들은 이들이 회중을 "주관하기" (마 20:25)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분별하고 이끌어가도록, 또 회중의 신앙과 삶을 견고케 하며 양육하도록 회중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칭이 주어졌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말과 행동에 있어 신앙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과 전도에 합당하도록 교육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

F-3.0203 공의회로 모임

이 장로들은 각 단계 별 공의회에 모여야 한다. 이 공의회들에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다. 교회의 모든 공의회들은 교회의 본질상 하나 되어 있으며 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 권리, 권한을 서로 공유한다. 공의회들은 서로 독립적이다. 그러나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 공의회는 적절한 공의회를 통해서 전체 교회의 결정이 된다. 교회의 상위 부분 혹은 그들의 대표가 하위 부분을 관할해야 한다.

F-3.0204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드러냄

장로들은 단지 사람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드러내도록 힘써야 한다.

⁶ 이 항목은 '교회 운영의 역사적 원칙'과 '장로교 운영의 원칙'에서 가져왔다. '교회 운영의 역사적 원칙'은 미국장로교 총회가 1797년에 채택한 것이다. 이 인용구에서, "radical"이라는 단어는 그의 원뜻인 "근본적이고 기본적인"의 의미로 쓰였으며, "청원(appeals)"이라는 단어는 사법 절차에 연루되어 있는 사건을 의미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다: "장로교 교회 운영 및 징계의 근본적 원리"는 다음과 같다: '각기 다른 회중들은 집합적으로,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 다시 말해 보편 교회를 구성한다; 보편교회의 상위 부분, 혹은 그 대표성이 보편교회의 하위 부분들을 관할하거나,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체 교회의 대표성이 각 부분 그리고 이 부분들이 연합된 것에 있어서 이들을 관할하고 결정해야 한다. 즉, 더 상위인 부분이 관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교회의 집단적 지혜와 연합된 의견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위 치리회는 상위 치리회 [공의회]에 청원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들과 이 절차에 대해선, 사도들이 보여준 예와 초대교회의 관행을 그 권위로 받아들인다.

F-3.0205 과반수에 의한 결정

공의회에서의 결정은 토론과 분별의 시간을 거친 후에 투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한다.

F-3.0206 감사 및 감독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에 대한 감사 및 감독 권한이 있으며, 회부, 이의 제기, 청원에 관한 논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F-3.0207 공의회에 의한 안수

장로들(사역장로 및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과 집사들은 공의회에 의해서만 안수를 받는다.

F-3.0208 공동으로 행사하는 공유된 권한

교회의 관할권은 공유된 권한으로, 공의회에 모인 장로들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F-3.0209 공의회에 의한 일반 권위

공의회는 교단 헌법이 부여한 의무 및 권한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각 공의회에 대한 관할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로 국한된다. 명시되지 않은 권한들은 노회가 보유한다.

F-3.03 장로교 체제의 기초가 되는 진술

본 장, "장로교 체제의 기초" 편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은 미국장로교의 체제가 기반을 두고 있는 교회적, 역사적 헌신을 표현하고 있다. 본 헌법의 모든 조항들은 전체 헌법에 기초해 해석해야 한다. *규례서*의 어떤 조항도 그 자체로 다른 조항을 무효화할 수 없다. 조항 간의 대립 및 모호성이 있을 경우, 모든 조항들이 유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공의회와 사법 위원회의 임무다.

F-3.04 미국장로교 헌법 구성

미국장로교 헌법은 *신앙고백서*와 *규례서*로 구성된다.

*신앙고백서*에는 다음의 고백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 헬베틱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바르멘 신학선언
1967년도 신앙고백
벨하 신앙고백
미국장로교 간추린 신앙고백

규례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장로교 체제의 기초
운영 체제
예배 지침
교회 권징

운영 체제

운영 체제

제 1 장 개체교회와 그 성도

G-1.01 개체교회

G-1.0101 개체교회의 사명

개체교회는 그들이 놓인 특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복음의 모든 은사를 개체교회에게 주셨다. 개체교회는 교회의 기본 형태이지만, 그 자체로 교회가 되기에 충분한 형태는 아니다. 그러므로 개체교회들은 서로 간의 깊은 유대를 통해 하나가 되며, 책임과 신뢰의 관계를 통해 연합하고, 전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총체적으로 교회라고 한다.

개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선포의 사역을 수행하며, 성례전을 나누고^a,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삶, 또 이웃과 맺은 언약의 삶을 살아간다. 개별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도록 개체 교회의 삶 속에서 준비를 한다. 개체교회는 사람들, 지역사회,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나누고, 예배를 위해 모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며, 사회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와 진리를 증거한다.

G-1.0102 개체교회의 교제

이 미국장로교 조직은 여성, 남성,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서로 간의 언약 관계 속에서 연합되는 교제를 전제하고 있다. 이 조직은 교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신뢰와 사랑 없이 일할 수가 없다.

G-1.0103 미국장로교 헌법에 의거한 운영

이 '운영체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체교회"는 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 노회가 인정하고 승인한, 공식적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의미한다. 미국장로교의 각 개체교회는 이 헌법에 의거해 운영되어야 한다. 개체교회의 구성원들은 당회와 상위 공의회(노회, 대회, 총회^{b,c})의 인도를 따른다. 당회는 개체교회의 삶을 인도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다. 당회는 개체교회를 이끌어,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전체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임을 다하게 한다.

노회가 세운 기타 사역 조직들도 이 헌법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노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G-1.02 개체교회를 조직하기

미국장로교 내에서 노회만이 개체교회를 조직할 권한이 있고, 개체교회는 이 헌법 조항을 준수하여 사역해야 한다.

G-1.0201 언약 관계 형성

개체교회를 조직하려면, 노회는 새로운 개체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회원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사람들은 함께 다음과 같이 언약하여야 한다:

"아래 서명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미국장로교 소속의 _____ 라는 개체교회를 조직하고 세우고자 합니다. 저희는 미국장로교의 신앙, 사명, 규례의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와 이웃과 서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됨을 이루며 살고 함께 사역에 힘쓸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고 언약합니다.

"(언약자들 서명)"

노회는 이들을 노회 산하 조직 개체교회로 노회의 자체 판단에 의해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개체교회는 사역 장로를 선출해야 한다. 원하는 경우, 집사 선출도 진행한다. 노회는 새롭게 선출된 이들을 준비시키고, 심사하고, 안수하고 위임해야 한다. 노회는 목회 리더십을 확보하고, 개체교회의 예배와 전도를 계획하며, 해당 개체교회와 다른 개체교회의 사역을 조정하고, 미국장로교 헌법에 부합하도록 개체 교회의 법인체 구성과 내규에 대해 자문하며, 교단 내의 삶 속에서 해당 개체교회의 사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할 때에, 그 교회와 밀접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G-1.03 개체교회의 교인

G-1.0301 교인됨과 세례의 의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믿음의 세계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신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며 그들을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심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어린이의 세례는 그들이 신앙으로 대답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사랑이 그들을 향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자발적으로 믿는 신앙을 통해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사람들이 신실함으로 응답하게 된다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교회에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신다.

G-1.0302 환영과 열린 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 교회의 교제와 목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를 개체교회는 환영해야 한다. (F-1.0403). 신앙고백과 관련되지 않는 한, 교인이 되고자 할 때 어떤 이유로도 교인이 되는 것을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복음은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교제를 확대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며, 복음에 부끄러운 행위이다.

G-1.0303 교인 가입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의 활동 교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 a. 공적인 신앙 고백. 당회가 교인됨의 의미와 책임에 대해 세심하게 심사한 후에 이루어진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신앙 고백을 하려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
- b. 이명 증서. 이명 당시 다른 그리스도 교회의 교인이었을 경우.
- c. 신앙 재확인.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의 경우.

G-1.0304 교인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기쁨과 특권이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명에 헌신하며 동참하는 것이다. 신실한 교인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교회의 사역에 책임감있게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다음을 통해서 이에 참여할 수 있다: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선포함,

개체교회의 공동의 삶과 예배에 참여함,

기도, 관심,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로를 세워줌,

그리스도 신앙과 삶의 문제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함,

물질, 시간, 재능을 바쳐 교회의 사역을 지원함,

교회 내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보여줌,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함,

개인, 가족, 직업, 정치, 문화, 사회적 삶의 관계 속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감,

평화, 정의, 자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일함,

하나님 피조물을 돌봄,

교회의 운영 책무에 참여함,

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실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며,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미있게 하는 방법을 깊이 생각함.

G-1.04 교인의 분류

미국장로교 개체교회의 교인에는 세례 교인, 활동교인, 임시 교인이 있다.

G-1.0401 유아 세례 교인

유아 세례 교인은 본인이 속한 개체교회나 다른 개체교회에서 세례의 성례를 받고 그 당회가 세례교인으로 등록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신앙 고백은 아직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세례 교인은 교회의 목회적인 돌봄과 가르침을 받고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G-1.0402 활동 교인

활동교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 그 교회의 교인이 된 후, 그 교회의 방침^d을 자발적으로 따르며, 교회의 활동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활동교인은 또한 교회 운영에 참여하고 직제사역에 선출될 수 있다(G-2.0102 참조). 활동교인은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G-1.0304에 적혀있는 교인의 책임과 훈련에 대해 꾸준히 다시 결단해야 한다.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준비시키는 책임은 당회에 있다.

G-1.0403 임시 교인

임시 교인은 본 교단의 다른 개체교회의 교인이거나 다른 교단이나 다른 기독교 조직에 속한 개체교회의 교인이나, 소속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를 떠나 일시적으로 이주한 자로서 소속 교회의 공의회나 치리회로부터 무흠한 교인이라는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여 당회가 임시 교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다. 임시 교인은 활동교인과 동일하게 개체교회의 삶에 참여할 수 있으나, 공동의회에서 투표할 권한이 없고, 그 개체교회의 직제사역이나 다른 직분에 선출될 수 없다.

G-1.0404 기타 참석자

미국장로교의 교인이 아닌 사람들,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환영하며, 그들도 이 교회의 생활과 예배에 참여하고 목회적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주의 만찬에 초대받는다. 주의 만찬 자리에 나오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고, 자격이 없더라도 믿음과 회개와 사랑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기억해야 한다(W-3.0409). 타 교단에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W-3.0403에 따라 아이들의 세례를 요청할 수 있다.

G-1.05 공동의회

G-1.0501 회의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마쳐야 한다. 개체교회가 그 내규에 다른 의사진행 권위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면, 회의는 ‘로버트 의사진행 규칙 신개정판(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의 최신판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이 헌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로버트 의사진행 규칙 신개정판(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의 최신판에 따라, 개체교회와 그 위원회는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으며 이는 당회의 재량에 달려 있다. 다만 참석한 모든 이들이 전자기술의 활용을 통해 동시적으로 듣고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명 이상의 사람을 대면 회의에 전자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개체교회는 해당 회의에 적용되는 특별 의사 진행 규칙과 일반 진행 규정을 정해야 할 것이다.

G-1.0502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체교회는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개체교회가 논의하기에 합당한 어떤 이유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회의 소집 요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안건으로 제한되어야만 한다.

교회의 연례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에 참석한 모든 활동교인은 투표할 자격이 있다. 개체교회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 규정을 정해야 한다.

G-1.0503 공동의회 소집

당회 또는 노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또는 교인 명부에 있는 활동교인의 4분의 1이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 당회가 이를 소집해야 한다. 모든 개체교회 회의에 대해서 적절히 공고해야 한다. 각 개체교회는 사전 공고에 관한 최소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회의 전에 정기 예배에서 이에 대해 공고해야 한다.

G-1.0504 공동의회에 적합한 안건

공동의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안건은 다음의 사안들로 제한해야 한다:

- a. 사역장로, 집사, 이사를 선출하는 일;
- b. 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를 청빙하는 일;
- c. 목사 또는 목사들의 청빙 조건의 적절성을 검토하거나 그 수정을 승인함으로써, 또는 목회관계 해소를 요청하거나, 목회관계 해소에 동의하거나 거부함으로써 기존의 목회관계를 변경하는 일;
- d. 부동산을 사거나 팔며 부동산에 대한 용자를 얻는 일;
- e. 이 헌법이 허용한 임기 제한 면제를 노회에 요청하는 일 (G-2.0404);
- f. 연합 전도 사역 조직 계획을 승인하는 일, 또는 연합 전도 사역 조직을 변경하거나 해체하는 일 (G-5.05);
- g. D-9.0102에 따라 개체교회 구성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는 일.

민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같은 공동의회에서 교회 업무와 법인 업무를 동시에 다룰 수 있다.

G-1.0505 의장

위임받은 담임목사가 보통 그 교회의 모든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되어야 한다. 담임목사가 의장으로 사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임 목사는 노회의 회원인 다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노회의 허락을 받은 사람을 의장으로 요청해야 한다. 위임된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 또는 위임된 담임목사가 사회를 진행할 수 없거나 다른 의장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회가 의장을 보내야 한다.

G-1.0506 서기와 회의록

당회 서기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의 서기가 되어야만 한다. 당회 서기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개체교회는 그 회의를 위한 서기를 선출해야 한다. 서기는 반드시 개체교회의 결정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 2 장 직제사역, 위임, 공인

G-2.01 교회의 직제사역

G-2.0101 그리스도의 사역

교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그리스도만이 홀로 그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새 창조를 확립하시고 확장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 그의 권위를 행사하신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사역의 기초이자 기준이며,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분이 보여주신 모범이다 (마 20:28). 기본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온 백성이 하는 사역이며, 그들의 일부가 직제 사역에 부름받아 특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교인들과 직제사역자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역한다.

G-2.0102 직제 사역

신약에 서술되어 있으며 본 교단이 유지해온 교회의 직제사역은 집사^a와 장로(‘말씀과 성례전의 목사’^b와 사역장로^c)다. 직제사역은 교회 생활에 질서를 부여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사역이 풍성해지도록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다. 이러한 직제사역이 있다고 해서, 모든 교인이 교회 전체 사역에 헌신하는 것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교회의 운영은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d. 장로와 집사를 선출하는 하나님 백성의 권리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체교회나 교단의 공의회가 선출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해당 조직에서 직제사역을 맡을 수 없다.

집사, 사역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교역 장로로 부르기도 함)에 대한 안수는 해당 직제 사역에 따라 각기 고유하다.

G-2.0103 직제 사역에 대한 부름

교회의 직제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이다. 개인의 양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승인, 교회 공의회의 일치된 판단이 증거가 되어 이 부르심을 입증한다.

G-2.0104 은사와 자격

a. 하나님은 교회 안의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은 이들— 집사, 사역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 그들의 다양한 직무에 맞는 적절한 은사를 주신다. 특정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필요한 은사와 능력 외에도, 강한 믿음, 제자로서의 헌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과 교회에서 드러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을 인정해야 하고 교회 공의회도 하나님 백성들과 같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

b. 직제 사역 기준에는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기쁘게 순종 하려는 교회의 열망이 반영되어 있다 (F-1.02). 안수 또는 위임을 책임지는 공의회(G2.0402; G-2.0607; G-3.0306)는 각 후보자의 소명, 은사, 준비 상태, 직제 사역 책임에 대한 적합성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후보자의 안수와 위임에 관한 헌법 질문들(W-4.0404)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을 이행할 능력과 헌신된 자세가 있는지를 심사해야 하는데, 이 사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공의회는 각 후보자에게 표준을 적용할 때에, 성경과 신앙고백서를 따라야 한다.

G-2.0105 양심의 자유

직제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이 헌법에 명시된 개혁신앙과 체제의 본질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교회의 온전함과 건전함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표준에서 심각하게 벗어나지 않고 타인의 권리와 관점을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따른 교회의 운영을 가로막지 않으면, 성경 해석과 관련해 양심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미국장로교의 직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특정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직제 사역을 찾거나 직제 사역을 통해 섬기는 동안, 직제 사역자들의 양심은 교회의 기준에 따라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된다. 한 개인이 개혁신앙과 그 체제의 본질에서 벗어났는지에 관한 결정은 일차적으로 해당 개인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당 개인이 소속된 공의회의 책임이다.¹

G-2.02 집사: 공홀과 섬김의 사역

G-2.0201 집사의 정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집사직⁶은 공홀, 전도, 섬김의 직분으로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길 잃어버린 자, 외로운 자, 압제받는 자,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에 억눌린 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나눈다⁷. 영성, 정직한 평판, 모범적인 삶, 이웃 사랑, 진실된 공홀의 마음,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이 사역에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G-2.0202 당회의 권위를 따름

집사는 개별적으로 위임될 수 있고, 또는 집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그들의 사역은 당회의 감독을 따르며 당회의 권위 아래 있다. 집사는 개체교회 안에서 특별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려움을 겪는 교인을 돌보고, 교육 업무를 맡거나, 특정 사람과 목표를 위해 헌금을 풍성하게 드리고 모금하며 분배하도록 격려하며, 개체교회의 건물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다. 집사들은 주의 만찬에서 보조하는 일뿐만 아니라 당회가 위임하는 다른 임무도 맡아야 한다 (W-3.0414). 개체교회는 과반수 결정에 의하여 집사 직제사역을 두지 않기로 결정

¹ 미국장로교 역사 초기, 즉 총회가 생기기 이전에, 뉴욕 대회와 필라델피아 대회의 재연합 계획안에 다음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사안이 과반수의 투표로 결정되면, 모든 회원은 그 결정에 능동적으로 동의하든지, 아니면 그 결정에 수동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만일 자신의 양심이 그 어느 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논의하고 항의한 후, 어떤 분열도 시도하지 말고 우리들의 공동체에서 평화롭게 떠나야 한다. 다만 교리나 장로교 운영 면에서 필수불가결하다고 조직이 판단한 결정에 대해서만 이 사항이 적용된다고 이해해야 한다.' (Hist. Dig. (P) p. 1310.) (Plan of Union of 1758, par. II.)

을 할 수도 있다. 만일 개체교회가 집사회나 개별적으로 위임한 집사들을 두지 않는 경우, 이 직제사역의 기능은 사역장로와 당회가 책임져야 한다.

G-2.03 사역 장로: 분별과 운영의 사역

G-2.0301 사역 장로의 정의

구약시대에 백성을 이끄는 장로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사역에 참여하도록 특정 은사를 받은 사람들^g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개체교회들은 지혜와 성숙한 믿음이 있는 자,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사역장로들은 이들이 개체교회 위에 "군림하기" (마 20:25)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분별하고 측정하며 개체교회의 신앙과 삶을 견고케 하고 양육하도록 개체교회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칭이 주어졌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과 더불어 사역장로들은 지도력, 운영능력, 영적 분별력, 권징을 실행한다.^h 그들은 또한 범교회적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교회의 삶과 개체교회의 삶을 책임진다. 개체교회가 선출한 경우, 이들은 당회원으로서 충실하게 섬겨야 한다. 상위 공의회는 대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사역장로들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참여하고 투표하며, 어떤 직책이라도 말을 자격이 있다.

G-2.04 사역 장로와 집사에 대한 일반 조항

G-2.0401 사역장로와 집사의 선출

사역장로와 집사는 교인들 가운데 개체교회가 선출한 사람들이다. 사역장로와 집사를 공천하고 선출할 때에 교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이에 대한 참여와 포괄성을 보장해야 한다(F-1.0403). 사역장로와 집사는 교인 중에서 선발하되 교인들을 대표해야 하며, 개체교회가 선출한 위원회의 공천을 받아야 한다. 개체교회는 그 자체 규정을 통해 그 개체교회의 공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 규정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규정에 명시된 위원회의 최소 인원은 3명이어야 함; (2) 이 위원회의 위원 중 최소 1명은 현재 당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여야 함; (3) 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갖는 위원들의 과반수는 현재 당회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함. 담임목사는 공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어야 하며, 투표권은 없다. 공천위원을 선출할 때, 그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이 공동의회 현장에서 공천할 수 있는 충분한 회회가 있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해 투표한 모든 활동교인의 과반수로 공천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G-2.0402 사역장로나 집사로서 사역 준비

사역장로 또는 집사의 직제사역에 선출된 사람들에게 당회는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 이후에 당회는 이들의 개인 신앙을, 교단 헌법에 있는 교리, 운영 체제, 권징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사역의 의무를 심사해야 한다. 또 당회는 그 직분과 관련된 사역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점검 과정이 끝나고 승인되면, 당회는 안수와 임직식 일

정을 정해야 한다.

G-2.0403 안수식과 임직식

안수식과 임직식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과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 각 경우에 맞는 설교가 있어야 한다. 당회장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인도자는 사역장로와 집사가 하는 사역의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안수식과 임직식은 예배 중에 진행한다. 예배 지침(W-4.04)의 해당 예식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G-2.0404 임직 기간

사역장로와 집사는 각각 당회와 집사회에서 최대 3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개체교회의 규정에 따라 다시 선출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역장로나 집사 어느 누구도 6년 이상 계속해서 사역할 수 없으며, 6년을 계속해서 사역한 사역장로나 집사는 적어도 1년간 같은 조직체에 선출될 수 없다. 각 연조의 인원은 가능한 한 동수가 되어야 하며, 해마다 한 조가 임기를 마치게 해야 한다. 이 임기 제한을 면제해 줄 것을 개체교회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노회는 과반수 투표에 의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안수를 받고 이 교단에 속한 개체교회에서 활동교인으로 있으면, 사역장로나 집사는 당회나 집사회에서 사역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받은 안수 사역의 책임은 지속된다. 단, G-2.0406, G-2.0407 조항이 적용될 경우나 '교회 권징' 편에 의거한 경우는 예외다.

G-2.0405 관계의 해소

사역장로나 집사는 당회나 집사회에서 사임할 수 있으나, 당회가 동의해야 한다. 사역장로나 집사가 더이상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각각 더이상 당회나 집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사역장로나 집사가 그 위임받은 사역의 의무를 거꾸지 변경이나 장애로 인해 1년간 수행할 수 없을 때, 해당 시무 관계를 당회가 해소해야 한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이며, 그 예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G-2.0406 사역장로나 집사의 사역 해제

사역장로나 집사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혐의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면, 이들은 직제사역 업무에서 해제해 줄 것을 당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개체교회의 당회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사역에서 해제하고 해당 개체교회의 사역장로 또는 집사 명부에서 이들의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이 조치는 사역장로나 집사에게 잘못이 있다는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역장로나 집사의 사역의 해제는 그 사역에 포함된 모든 직무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직분이 해제된 사람의 상태는 일반 교인과 같아야만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사역에서 해제된 사람이 나중에 그 직제사역을 다시 맡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해제를 허락했던 당회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당회가 이를 승인하면, 그 사람은 다시 안수받지 않고 해제되었던 사역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G-2.0407 관할권 거부

사역장로나 집사가 이 교단의 관할권을 거부하는 진술서를 서면으로 당회 서기에게 접수하면, 거부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거부권의 효력이 발생되어야만 한다. 당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역을 사역장로나 집사가 지속하면, 그 당회는 당사자와 이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고, 당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을 알려야 한다. 해당 사역장로나 집사가 당회와 논의할 기회를 가졌고 당회의 불승인 서면 통보를 받았는데도 그 사역을 지속하면, 당회는 그 사역장로나 집사가 이 교회의 관할권을 거부한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관할권을 거부한 경우, 해당 사역장로나 집사는 교인자격과 직제 사역을 잃게 되며 그들의 사역 수행은 종결된다. 당회 서기는 이 관할권 거부 사실을 다음 당회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당회 회의에서 이 거부 사실을 기록하고 사역장로나 집사의 이름을 각각 그 명부에서 지우며 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그밖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G-2.05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가르침과 목회적 돌봄의 사역*G-2.0501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한 정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교역 장로, 목사라고도 함)는 모든 일에 있어 말과 행동으로 믿음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하고 사역을 위해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엡 4:12). 노회가 승인을 하면, 이들은 여러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 이들은 교회의 믿음을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로써 복음의 핵심을 통해 사람들의 인격이 형성되고 전도와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강건해진다. 성례전을 집전할 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말과 행동으로 은혜의 신비를 풀어내고 "드러내어"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희망을 사람들이 갖도록 해야 한다. 목사로 사역할 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일상의 복잡한 삶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도록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노회원으로 사역할 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운영 관리의 책임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는 기도, 토론, 의사 결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G-2.0502 노회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주님께서는 어떤 구성원들을 따로 구별하여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부르셨는데, 교회는 그 부르심을 노회의 조치를 통해 확인한다. 노회는 특정 사역이 교회의 사명에 유익하며 그 사역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안수를 요구하는 인준된 사역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 사역을 수행할 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노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노회 자체의 결정으로 노회의 회원이 되며, 노회의 승인 없이는 어떤 목회관계도 성립되거나 변경되거나 해소될 수 없다.

G-2.0503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노회원 범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노회가 인준한 사역을 해야 하는 노회의 정회원이거나, 노회의 결정에 따라 준회원이나 은퇴회원이 된다.

a. *인준된 사역을 하는 정회원*

인준된 목회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성경, 교단 신앙고백서, *규례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충실히 드러냄;
- (2)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도우며, 그들에 대한 목회를 지지함;
- (3)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충실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야 함;
- (4) 노회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기관, 기구에 대해 그 성격과 실행과 관련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함;
- (5) 노회의 회의, 예배, 업무에, 또 이 교단에 속한 개체교회의 생활에 또는 미국장로 교와 교류 관계에 있는 교회의 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함(G-5.0201).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교단 관할권을 벗어나 인준된 사역을 하게 된 경우, 그 목회자는 복음 사역을 함께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준의 삶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들은 개체교회, 소속 노회, 범교회 관계에 참여해야 한다. 또 이들은 교단의 상위 공의회와 그 공의회들의 이사회, 기관에 선출될 자격을 가져야만 한다.

노회는 교회 목회 외의 인준된 사역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사역을 해마다 검토해야 한다.

b. *준회원*

준회원은 인준된 사역에 전에 관여했다가, 목회 사역을 그만둘 의도는 없으나 현재는 G-2.0503a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말한다. 가족 문제로 인해서 또는 노회가 인정하는 개인 상황으로 인해 인준 사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역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면,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준회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준회원은 가능하도록 G-2.0503a의 많은 기준을 따라야 하며 개체교회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준회원은 노회 회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며, 발언하고 투표하며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다. 준회원의 회원 자격을 해마다 검토해야 한다.

c. *은퇴 회원*

노회의 한 회원이 요청하면, 노회는 은퇴 회원을 지정할 수 있다.

G-2.0504 목회 관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개체교회의 담임목사, 동사목사 또는 부목사로 청빙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기쁨과 정의를 알리는 수준 있는 삶과 관계를 책임감 있게 일거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설교할 책임이 있으며, 세례와 주의 만찬을 집전할 책임이 있으며, 개체교회와 함께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 이들 목회자들은 사역장로들과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격려해야 하며,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의 사역과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하고,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목양해야 하며, 개체교회가 의사결정할 때 참여와 포용성의 원칙이 실행되도록 개체교회 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전체 인류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섬김으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과 같은 운영 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 목회자들은 집사들과 함께 긍휼, 전도, 섬김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목회 관련 의무 외에, 이들 목회자들은 당회 위에 있는 공의회와 법교회 관계와 관련해서 교단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a. 위임 목회 관계

위임 목사 관계에는 담임목사, 동사무사, 부목사가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위임받을 수 있다. 또는 노회가 개체교회와 협의한 후 청빙 조건에 명시한 제한된 임기로 위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세운 전략에 의해 목회자들이 더 필요하다고 개체교회가 결정한 경우, 개체교회는 목회자들을 더 청빙할 수 있다. 이렇게 청빙된 목사들은 동사무사, 부목사라고 불려야 한다. 이들 각 목사들의 임무, 목사들 사이의 관계는 노회의 승인 하에 당회가 결정해야 한다. 한 개체교회에 동사무사로 사역하고 있는 두 명의 목사가 있는데, 그 중의 한 목사와의 관계가 해소되면, 그 다른 목사는 담임목사로 남게 된다. 부목사의 목회 관계는 담임목사의 목회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목사는 그 개체교회의 다음 위임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

b. 임시 목회 관계

임시 목회 관계는 노회의 승인을 받으며, 공식 청빙이나 위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개체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거나 담임 목사가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노회의 승인을 받아 당회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후보생, 또는 사역장로와 임시 목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식적인 청빙 절차를 밟지 않으며 공식적인 위임식을 하지 않는다.

임시 목회 관계의 명칭, 그리고 임기는 노회가 결정해야 한다. 임시 목회 관계에 있는 목회자는 12달을 넘지 않는 일정 기간으로만 사역하도록 청빙 받는다. 이 기간은 노회가 승인하면 갱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시 목회 관계로 사역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바로 담임목사, 동사무사, 또는 부목사가 될 수 없다.

c. 예외 사항

노회는 현재 부목사로 청빙받아 섬기고 있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후임 담임목사나 동사무사로, 또는 현재 임시 목회 관계로 사역하고 있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후임 담임목사, 동사무사, 부목사로 노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상 인정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노회가 이를 허용하려면, 노회에 참석해 투표한 인원의 4분의 3의 찬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G-2.0505 다른 교단 목회자의 이명

a. 다른 기독교 교단의 목회자가 노회 관할권 내의 사역에 적절하게 청빙을 받은 경우에, 헌법의 규정들이 모두 충족되었으면, 노회는 목회자가 이전에 받은 안수를 인정해야 한다. 해당 목회자들은 노회가 그 안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증빙 서류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 교단의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인품과 학자의 소양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온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G-2.0607과 G-2.0610 참조). 예외적 상황에서는 다음의 조항들을 적용한다:

(1) 이민자 예배공동체나 이민자 개체교회를 맡은 목회자의 경우, 해당 집단에 대

한 선교 전략상 필요하다고 노회가 판단하면, 또 그 공동체와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노회는 이전 교단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자료를 제출한 새 이민자 목회자를 노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노회원으로 등록할 당시에 해당 목회자가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다 갖추지 못했다면, 노회는 그 목회자가 노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의 기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 (2) 안수받은 지 5년 이상이 된 다른 개혁신교단의 목회자는 안수 후보생에게 요구되는 안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회 회원의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 면제받을 수 있다.

b. 노회원으로 등록할 당시에, 해당 목회자는 본인이 이전에 가입했던 모든 기독교 교단들의 회원 자격을 포기했음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G-2.0506 사역기간의 노회 임시 회원 자격

본 교단에서 인준된 사역을 임시로 섬기고 있는 타 기독교 교단의 목사, 또는 합의 약정서 조항(규례서, 부록 B; G-5.0202)에 따른 위임 관계에 있는 다른 기독교 교단의 목회자를 노회는 노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노회의 자체 규정에 의해 수립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목회자가 다 충족했을 경우에만 그러하다.

G-2.0507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사역 해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D-10.0101, D-10.0201에 따라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혐의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며 그 외에 회원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이들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직제사역 업무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노회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해당 명부에서 삭제하고, 당회의 요청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일반 교인으로 남게 해야 한다. 직제 사역의 해제는 그 사역에 포함된 모든 직무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속하는 호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직제사역에서 해제된 사람은 개체교회의 모든 활동교인이 함께하는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이 항목에 따라 직제 사역에서 해제된 이가 나중에 다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직제 사역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해제를 허가한 노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노회가 이를 승인하고 안수 질문을 다시 확인하며 노회 인준 사역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그 목회자는 안수를 다시 받지 않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직제 사역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

G-2.0508 인준된 사역에 관여하지 않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인준된 사역에 더이상 관여하지 않거나(G-2.0503a) 준회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G-2.0503b), 또 은퇴 목사(G-2.0503c)가 아닌 경우라고 노회가 결정하면, 해당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노회에서 발언하거나 투표해서는 안 된다. 단 심의 중인 사안이 해당 목사와 노회와의 관계에 관련된 경우는 예외이다. 노회 정서기는 이들의 명단을 해마다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만일 삼 년 후에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인준된 사역의 기준이나 준회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노회는 그 목회자의 이름을 노회원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고, 당회의 요청에 따라 일반교인으로 남게 할 수 있다.

G-2.0509 관할권 거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공인 대리인)가 이 교단의 관할권을 거부하는 진술서를 서면으로 소속 노회의 정서기에게 접수하면, 거부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거부권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관할권을 가진 노회가 승인하지 않은 일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지속하면, 그 노회는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이에 대해서 논의하고 노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을 알려야 한다. 해당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노회와 논의할 기회를 가졌고 노회의 불승인 서면 통보를 받았는데도 그 사역을 지속하면, 노회는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이 교단의 관할권을 거부한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단 외의 다른 교단에서 어떤 형태로든 회원이 되거나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노회는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이름을 그 명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관할권을 거부함으로써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회원 자격과 직제 사역을 잃게 되며 그들의 사역 수행은 종결되어야 한다. 노회 정서기는 이 관할권 거부 건을 다음 노회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노회 회의에서 이 거부 사실을 기록하고 그 목회자의 이름을 각각 그 명부에서 지우며 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그 밖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관할권 거부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그 조치에 포함된다.

미국장로교 관할권에 속한 개체교회 또는 조직체는 피의자로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던 중에 관할권을 거부한 전직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교역장로)를 유급으로 또는 자원봉사자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

관할권을 거부했던 전직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교역장로)가 나중에 제직을 회복하고자 원할 때에는 그 목회자가 관할권을 거부했던 노회에 제직 회복 신청을 해야만 회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D-10.0401d, D-12.0200 의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G-2.06 목회 준비

G-2.0601 목회 준비의 성격과 목적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안수 받으려는 이는 노회의 지도 하에 사역을 온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과, 또 그들의 당회와 개체교회와 연약관계를 맺어야 한다. 연약 관계는 지망과 후보의 두 단계로 구분해야 한다.

G-2.0602 요구되는 시간

지망생으로 등록하려면 그 지원자는 후원 개체교회의 회원이어야 하고, 적어도 6개월간 그 개체교회의 사역과 예배에 참여해야 하며, 그 후원 개체교회의 당회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지망과 후보 단계는 적어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적어도 1년은 후보생으로 있어야 한다.

G-2.0603 지방 단계의 목적

지방 단계의 목적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직제사역에 부름받았다고 믿는 이들과 교회가 그 소명을 함께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해서, 노회가 직제사역에 대한 지방생의 적합성을 여러 정보를 갖고 판단하게 하는데 있다. 지방생은 경계 교육과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계 교육에는 성적 비행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은 최소한 36개월마다 재인증되어야 한다. 노회는 어느 교육이 이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결정해야 한다.

G-2.0604 후보 단계의 목적

후보 단계의 목적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교회를 섬길 사람이 온전히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회가 후보생을 지원하고 인도하며, 안수가 필요한 사역에의 소명에 대한 후보생의 적합성과 준비성을 노회가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¹

G-2.0605 노회의 관리

지방과 후보 단계에서 그 사람은 자기가 속한 개체교회의 활동 교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회의 배려와 훈련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해당 개인이 지방생 또는 후보생으로 등록된 기간에, 당회는 성적 비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목회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은 노회와 그 사람 간의 연약관계 맥락에서 노회의 관리를 받는다.

G-2.0606 연약 관계 기간 중의 섬김

지방생과 후보생은 그가 돌봄을 받고 있는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에, 감독을 받으며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이전에 사역장로로 안수 받지 않은 지방생이나 후보생은 당회장으로 섬길 수 없으며 성례전을 집전할 수 없고 결혼식을 주례할 수 없다. 이전에 사역장로로 안수 받은 지방생이나 후보생의 경우, 당회가 주의 만찬을 인도하도록 요청하면 노회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G-2.0607 섬김에 대한 최종 평가와 논의

후보생은 그가 돌봄을 받고 있는 노회의 승인 없이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섬기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 노회는 후보생이 노회의 안수 시험 자격이 되었고 청빙을 기다리고 있음을 인정한 시기를 기록해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직제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후보생의 지혜와 성숙한 믿음, 지도력, 긍휼의 마음, 정직성, 건전한 판단력;
- b. 각 권역에서 인준받은 대학이나 종합대학에서 양호한 성적으로 졸업했음을 보여주는 성적 증명서;
- c. 노회가 인정하며 '신학교 협의회'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가 인준한 신학 교육 기관이 발행한 성적 증명서. 여기에는 이수한 과목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와 헬라어 활용 신구약 해석학이 그 과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모든 이수 과목에서의 양호한 성적과 졸업생이거나 졸업 예정자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d. 시험 자료들. 이들 자료들이 총회가 승인한 표준 안수 시험에서 다루는 부분들을 충족시킨다는 평가서. 노회가 구성한 조직이 이 시험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G-2.0608 언약 관계의 이전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요청하고, 관련 당회들과 노회들이 승인하면, 노회는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언약 관계를 이전할 수 있다.

G-2.0609 언약 관계 철회

당회, 노회와 상의한 후,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언약 관계를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회는 지망생과 후보생 명부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제명할 수 있으며, 이 조치와 그 사유를 당회와 그 사람에게 알리고, 만일 적절하다면, 그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 교육기관에도 보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노회 또는 노회가 지정한 조직체는 후보생이나 지망생이 이 제명 제안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G-2.0610 특별한 상황에 따른 조정

안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노회가 판단한 경우, 노회는 G-2.06에 적혀 있는 안수 요구 사항의 어느 부분이라도 4분의 3의 찬성에 의해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G-2.0607d의 사항은 면제할 수 없다. 만일 후보생이 G-2.0607d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노회가 판단한 경우, 노회는 표준 안수시험에서 다루는 부문에서의 사역에 후보생이 준비되었음을 입증하는 다른 수단을 4분의 3의 찬성에 의해 승인해야 한다. 안수 요구사항을 면제한 이유나 사역 준비 상황을 입증하는 다른 수단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노회 회의록에 포함해야 하며,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옮겨갈 노회에도 알려야 한다.

G-2.07 안수

G-2.0701 안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직제 사역에 안수하는 것은 노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체 교회의 행위이며, 한 사람을 직제 사역에 구별하여 세우는 것이다. 이 사람은 본인이 돌봄을 받고 있는 노회의 안수 요구 사항을 다 충족해야 하며, 개체교회를 섬기도록 또는 교회 사명 내에서 다른 사역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이 다른 사역은 후보생과 해당 노회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G-2.0702 안수 주체

후보생을 사역자로 부른 노회가 일반적으로 후보생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며 후보생을 안수하고 위임해야 한다.

G-2.0703 안수식

예배 지침(W-4.04)에 있는 예배 순서를 따라야 한다.

G-2.0704 안수 기록

안수를 준 노회는 안수와 위임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또 노회는 새로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안수 질문의 의무에 대답한 서면 확인서를 기록해 두어야 하며,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노회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노회의 정서기는 그 후보생이 돌봄을 받고 있는 노회, 그 후보생이 이전에 교인으로 활동했던 개체교회, 그리고 총회에 이 조치들을 보고해야 한다.

G-2.08 청빙과 위임

G-2.0801 목회자의 공석

개체교회 내 목사직에 공석이 발생했거나, 기존의 목회관계 해소 날짜를 노회가 승인했을 때, 개체교회는 노회의 인도와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석을 채우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G-2.0802 목회자 청빙 위원회 선출

당회는 전체 개체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목회자 청빙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의무는 개체교회가 선출할 목회자를 공천하는 것이다.

G-2.0803 청빙 절차

노회의 절차를 따라서, 또 개체교회에게 보고하기 전에, 목회자 청빙 위원회는 청빙 대상자들의 장점, 적합성, 가능성에 관해 노회의 자문을 받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 개체교회에 보고해야 할 방향이 분명해졌을 때, 이 위원회는 당회에 이를 알려야 하고,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G-2.0804 청빙 조건

청빙 조건은 청빙 당시에 유효한 노회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상회해야 한다. 당회는 목회자의 청빙 조건을 해마다 검토해야 한다. 또 노회는 당회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청빙 조건 변경안이 노회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면, 이에 대해 개체교회가 조치(G-1.0501)를 취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청빙에는 최소 12주의 가족 관련 유급 의료 휴가가 포함되며, 연금과 의료보험이 포함된 미국장로교 혜택 제도에 가입하는 것과 총회가 승인한 후속 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포함된다.

G-2.0805 위임식

개체교회, 노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후보생) 모두가 기간 무제한 청빙 또는 임시 기간 청빙에 동의하면, 노회는 위임식을 조직하고 인도함으로써 청빙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위임은 목회관계를 수립하는 노회의 행위이다. 위임 예식은 예배와 함께 진행된다. 예배 지침

(W-4.04)에 있는 예식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G-2.09 목회 관계의 해소

G-2.0901 공동의회

위임 목회 관계는 오직 노회만 해소할 수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개체교회, 또는 노회 중 어느 누가 목회 관계 해소 절차를 시작했다든, 공동의회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하고 목회 관계 해소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해야 한다.

G-2.0902 담임목사, 동사무사, 부목사의 요청

담임목사, 동사무사, 부목사는 노회에 목회 관계 해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자신의 의사를 당회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해당 요청에 대해 조치하고 노회에 이를 제안해야 한다. 만일 개체교회가 관계 해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회는 노회가 목회관계를 해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교회가 선출한 대의원을 통해 들어야 한다. 개체교회가 출석하지 않거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노회는 그 요청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목회 관계는 해소된다.

G-2.0903 개체교회의 요청

만일 개체교회에서 목회 관계 해소를 원할 경우에, 위의 G-2.0902와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담임목사와의 목회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할 것을 개체교회가 당회에 요청하면,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이 공동의회 의장을 임명해 줄 것을 노회에 요청해야 한다. 만일 담임목사가 이 관계 해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노회는 목회 관계를 해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그 목사로부터 들어야 한다. 그 목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목회 관계는 해소된다.

G-2.0904 노회의 조치

개체교회 내의 어려움이 보고되면 노회는 이를 조사할 수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당회, 개체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의 사명이 목회 관계 해소를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고 노회가 판단하면, 노회는 목회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G-2.0905 요청받았을 때만 개체교회를 섬길 수 있음

목회 관계 해소 이후, 전 담임목사, 전 부목사는 당회장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이전 개체교회의 성도들을 목회해서는 안 된다.

G-2.10 사역 장로를 특정 목회 사역에 파송함

G-2.1001 직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회 또는 관련 위원회와 협의한 후, 노회의 사역 수행 전략상 필요하다고 노회가 판단한 경우에, 노회는 노회가 정한 제한적인 목회 사역에 사역 장로를 파송 사역 장로라고도 불리는 '파송 목사(commisioned pastor)로 파송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명된 사역 장로는 노회가 인준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사역을 섬기도록 파송받을 수 있다. 이 사역장로를 파송할 때, 노회는 사역장로가 파송받은 개체교회 또는 개체교회들의 당회장이 되도록, 성례전을 집전하도록, 주법에 허용된 결혼을 주례하도록 그 사역장로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사역장로를 파송할 때에는 사역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그 사역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노회는 적어도 해마다 한 번은 이 파송을 검토해야 한다.

G-2.1002 훈련, 심사, 파송

G-2.1001 에 따라 섬기고자 하는 사역장로는 노회가 정한 준비 절차와 지침 사항을 받아들여 특정 파송 사역에 합당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 준비 과정에는 경계 교육과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경계 교육에는 성적 비행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은 최소한 36개월마다 재인증되어야 한다. 노회는 어느 교육이 이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결정해야 한다. 개인 신앙, 파송 사역에 대한 동기, 노회가 정한 지침 사항과 관련해, 노회는 사역 장로를 심사해야 한다. 특정 사역에 파송되었다가 나중에 사역을 그만 둔 사역 장로는 사역이 가능한 사람으로 명단에 이름을 계속 올릴 수 있으나, G-2.1001 에 명시된 직무들을 수행할 권한은 없다. 다만 노회가 이들을 개체교회 또는 사역에 다시 파송하면 이 직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

G-2.1003 파송식

위에 명시한 사역을 하며 개체교회를 섬기기에 사역장로의 자격 요건이 충분하다고 노회가 결정하면, W-4.04에 있는 질문들을 확인한 후에 노회가 지정한 목회 사역에 그 사역 장로를 파송해야 한다.

G-2.1004 감독

G-2.1001의 조건에 따라 파송받은 사역 장로는 노회의 감독을 받으며 사역해야 한다. 충분히 타당한 근거에 기초해 노회는 언제나라도 그 파송을 철회할 수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한 명을 멘토와 감독자로 배정해야 한다.

G-2.11 공인된 교회 사역

G-2.1101 공인된 교회 사역

사람들은 개체교회, 공의회, 교회 산하 조직체에서 사역하도록 공인받고 청빙받아 직원으로

로 섬길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업무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도록 애써야 하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를 견고하게 해야 한다. 소속 당회와 노회는 총회가 승인한 교단 공인 조직의 공인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이를 준비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해야 할 것이다. 교단 공인 조직을 통해 공인을 받은 이들의 명단을 총회의 해당 조직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직은 그 명단을 각 사람들이 속해 있는 노회의 정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G-2.1102 노회와 공인된 교회 사역

노회는 공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인 교육 기금과 시간을 제공하도록 당회를 격려해야 하며, 공인 시에 공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들 공인받은 사람들의 능력과 헌신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노회는 공인 교회 사역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노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특권을 줄 수 있다.

G-2.1103 기독교 교육사

a. 기술과 훈련

공인 기독교 교육사는 개체교회나 공의회의 교육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공인 자격을 취득하고 이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들은 성경 해석, 개혁 신학, 예배와 성례전, 인간 발달, 신앙 성장, 종교 교육 이론과 실행, 미국장로교 정책, 프로그램, 사명에 대한 기술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공인 기독교 교육사는 경계 교육과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계 교육에는 성적 비행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은 최소한 36개월마다 재인증되어야 한다. 노회는 어느 교육이 이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결정해야 한다.

b. 노회의 책임

노회는 공인 기독교 교육사, 공인 기독교 준교육사의 급여와 혜택에 관한 최저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사역을 감독하는 노회에 접촉할 수 있게 해야 한다(G-3.0307). 노회 관할권 하에서 교육 사역을 하는 임기 중에 공인 기독교 교육사는 노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공인 기독교 교육사가 사역 장로이면, 노회의 모든 회의에서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다. 공인 기독교 교육사와 공인 기독교 준교육사는 경계 교육과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를 소속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경계 교육에는 성적 비행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은 최소한 36개월마다 재인증되어야 한다. 노회는 어느 교육이 이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결정해야 한다. 노회는 이 두 교육 과정을 주관하는 국가 인증 기관에 이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교회의 공의회

G-3.01 공의회의 일반 원칙

G-3.0101 교회의 하나됨의 표현인 공의회

교회는 그 공의회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교회의 하나됨의 표징이다.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는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지녔으나, 그 자체로 교회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미국장로교 개체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주되심을 증거하는 임무를 개체교회 안팎에서 다른 이들과 나누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는 소명은 모든 신자가 해야 할 몫이다. 교회 공의회의 특별한 책임은 미국장로교의 일부인 그들 증인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며 통솔하여, 그와 같은 증인이 전체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미국장로교는 성도들이 선출한 장로들로 구성된 공의회에 의해 운영된다(F-3.0202). 이 공의회에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다. 교회의 모든 공의회들은 교회의 본질상 하나되어 있으며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 권리, 권한을 공유한다. 공의회들은 서로 독립적이다. 그러나 어느 한 공의회의 결정은 전체 교회의 결정이 되기도 하는 상호 관계를 지니고 있다. 각 공의회의 관할권은 미국장로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의해 제약을 받으며, 각 공의회의 조치들은 바로 위 공의회의 감사를 받는다. 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은 노회가 보유한다.

교회 공의회는 개체교회와 교단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더 신실하게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공의회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의 약속에 응답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 새 창조에 동참하도록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고 전한다.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이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를 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천국 잔치가 올 것을 기대하며,
소외되고 굶주린 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전하며 또 올바르게 받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권능을 통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제자들의 언약 공동체를 육성한다.

G-3.0102 교회의 관할권

본 교단의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 진리, 섬김, 규례, 권징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뜻을 선포하고 이에 순종하려는 목적으로만 교회의 관할권을 갖는다. 공의회는 신앙고백을 작성할 수 있으며, 교리 상의 오류나 일상의 부도덕성을 지적할 수 있고, 교리나 권징의 문제를

를 다룰 수 있으며, 양심의 문제에 대해 조언할 수 있고, 이 *규례서*의 조항에 의거해 공의회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공의회는 '예배 지침'에 따라 성례전의 집전을 허가할 수 있다. 공의회는 교회의 예배, 사명, 운영, 권징에 대한 계획과 규정을 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교회의 평화, 순결, 일치, 진보에 필요한 일들을 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 공의회는 해당 관할권 내의 교회의 리더십, 지침,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G-3.0103 참여와 대표성

교회 공의회는 교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다양성을 잘 드러내어야 하며, 의사 결정과 고용 과정에서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적인 참여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F-1.0403). 이를 행하기 위해서 공의회는 사역 관련 은사와 요건(G-2.0104)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또 임원을 선출하는 개체교회와 공의회 회원의 권리(F-3.0106)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교단은 포용성과 대표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각 공의회는 이에 대한 실행을 더 복돋고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제를 개발해야 한다. 당회 위의 공의회는 자체 규정에 의거해 대표성 위원회를 구성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일치와 다양성 원칙의 실행과 관련해 공의회에 조언하며, 리더십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직원 채용과 관련해 F-1.0403에 명시된 일치와 다양성의 원칙에 따라 공의회에 의견을 제공한다. 대표성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될 수 없으며, 다른 위원회의 하부 위원회가 되어도 안 된다.

G-3.0104 임원

개체교회의 담임목사가 해당 당회의 의장, 즉 당회장이 되어야 한다. 동사 목사가 있는 개체 교회의 경우, 두 사람 모두 당회장이 되며, 특정 회의를 누가 인도할 것인가를 규정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담임목사는 그 노회의 회원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노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불러서 회의를 진행하게 해야 한다. 만일 위임받은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 또는 위임받은 담임목사가 다른 의장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노회가 의장을 보내야 한다. 공의회가 온라인 당회 회의를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의회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고 해당 공의회 안건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공의회 의장은 해당 공의회 자체의 결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고 폐회해야 한다.

당회보다 상위에 위치한 공의회는 해당 공의회가 정한 임기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공의회 의장은 선출될 당시에 진행을 맡게될 공의회 회원이거나 대의원이어야 한다. 의장은 그 임기 중에 그 공의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공의회는 의장의 부재 시 누가 사회를 볼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각 공의회는 서기를 선출해야 하며, 그 서기는 그 공의회 업무를 기록하고, 회원 명부를 관리하고 출석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등록명부를 관리하고, 공의회 기록물을 보관하며, 교단의 다른 공의회가 요청할 경우 기록물을 발췌하여 제공해야 한다. 서기의 확인을 거친 이러한 발췌물은 교단 모든 공의회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당회의 서기는 당회가 정한 임기에 따라 당회에 의해 선출된 사역장로여야 한다. 노회, 대회, 총회의 서기는 정서기라 칭하며, 공의회가 정한 한시적 임기로 공의회에 선출되어야 하고, 반드시 사역장로 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여야

한다. 정서기는 임기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G-3.0110에 제시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공의회는 해당 공의회에 요구에 따라 다른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G-3.0105 회의

공의회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마쳐야 한다.^a 회의는 로버트 의사진행규칙 신개정판의 최신판에 기초해 진행해야 한다. 다만 헌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또한 공의회는 투표 전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그 조직체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분별의 과정을 사용할 수 있다.

‘로버트 의사진행 규칙 신개정판(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의 최신판에 따라, 공의회와 그 전권위원회와 위원회는 온라인으로 회의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참석한 모든 이들이 전자기술의 활용을 통해 동시적으로 듣고 발언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 명 이상의 사람을 대면 회의에 전자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의회는 해당 회의에 적용되는 특별 의사 진행 규칙과 일반 진행 규정을 정해야 할 것이다.

공의회가 결정을 내렸지만, 투표에서 그 결정과 다른 방향으로 투표를 했던 구성원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개시나 저지의 의미가 아니다.

- a. 이의는 공의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하는 선언이다. 이의는 그 결정이 이루어진 회기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구성원들의 이름을 기록해야 한다.
- b. 항의서는 공의회 결정이 부적법 행위나 불이행에 해당되거나 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혐의를 제기하며 그 이유를 제시하는 서면 선언문이다. 항의서는 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공의회 회기 내에 폐회 전에 해당 공의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의서가 격식에 맞는 정중한 언어로 작성되었으면, 이를 회의록에 첨부해야 하며, 이에 대해 공의회가 작성한 답변서를 같이 첨부할 수 있다.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G-3.0106 사명의 수행

교회가 사역을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형태와 구조는 사명에 의해 결정된다. 수행은 공의회가 그 결정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사명의 수행을 통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세상에 효율적으로 증거할 수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더 견고하게 증거할 수 있다.

당회 위의 공의회는 정책과 절차 실례를 모아 참고 자료집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실례들은 헌법이 요구하는 실행 사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실행은 공의회 재량이다. 또한 이와 같은 참고 자료집은 특정 공의회 사역을 향상시키거나 견고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각 공의회는 해당 공의회 사역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그 사역을 이끌어갈 사명 수행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모든 공의회들은 다음의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성적 비행 정책, 괴롭힘 관련 정

책, 유소년 보호 정책, 반인종차별 정책. 각 공의회의 정책에는 경계 교육과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이 필수 요구 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경계 교육에는 성적 비행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은 최소한 36개월마다 재인증되어야 한다.

공의회는 그 임무의 일부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직체에 위임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조직체가 해당 공의회의 책임 하에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공의회는 서로 책임, 권리, 권한을 공유하고 있기에, 사명의 수행을 통해서 교회의 일치와 상호의존성이 드러난다(F- 3.0203). 하위 공의회는 그 구성원이나 대의원을 파견하여 상위 공의회 사역의 기획과 수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명, 예산, 직원 관리, 평등 고용, 공정한 보수 같은 사안과 관련해 조직 간의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 조달 역시 교회의 일치와 상호의존성을 보여준다. 교회의 어느 부분이라도 전체 교회 사명의 청지기직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는 전체 교회의 하나됨과 상호의존성을 손상하는 것이다. 사명의 수행을 위한 기금을 사용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세상에 효율적으로 증거할 수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더 견고하게 증거해야 할 것이다.

당회 위의 각 공의회는 행정 직원 경비를 포함, 운영 경비 관련 예산을 준비해 채택해야 한다. 각 공의회는 그 산하 개별 교회들이 낸 상회비를 통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노회는 자체 기금을 조성하고, 상회비를 건여 정해진 기한에 맞추어 해당 대회와 총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노회는 그 산하 교회의 당회에 상회비 분담금을 제시할 수 있으나, 상회비를 결정하는 당회의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

G-3.0107 기록물

각 공의회는 완전하고 정확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공의회의 회의록과 기타 모든 공식 기록물은 해당 공의회 또는 그 공의회의 합법적인 승계 기관의 영구 자산이다. 공의회가 해체될 경우, 그 공의회의 기록물들은 그 해체 직전에 해당 공의회의 바로 위 공의회의 기록물이 되어야 한다. 각 공의회의 서기는 그 조직의 기록물을 '장로교 역사협회'에 영구 보관할 것, 또는 미국장로교 신학교의 온도와 습도 조절 문서보관 환경에 영구 보관할 것을 해당 조직에 추천해야 한다.

G-3.0108 행정 감사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의 업무를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 감사해야 한다:

a. 일반 행정 감사

각 공의회는 그 조직의 회의 빈도에 따라 해마다 또는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하며, 해당 조직과 관련이 있는 모든 조직체의 회의와 조치들, 그 조직에서 활동하는 모든 임원들, 그 조직의 관할권 안에 있는 공의회를 감사해야 한다. 하위 공의회의 절차들을 감사할 때에, 상위 조직은 그 절차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헌법에 부합하는지^b, 신중하고 공평한지, 전체 교회의 사명에 충실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상위 조직의 합법적 명령이 준수되었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b. 특별 행정 감사

상위 공의회가 하위 공의회들의 부적법 행위 또는 불이행을 어느 때라도 감지하면,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에게 어떤 기록물이라도 제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 시정 지시

사안이 규정에 어긋났다고 판단되면,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가 이 사안을 재검토하고 시정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행정 감사 외에도, 교회 권징에 규정되어 있는 사법 절차에 의거해 감사와 시정을 진행할 수 있다.

G-3.0109 위원회와 전권위원회

공의회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하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해 위원회와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바로 위의 공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타 공의회와 연합하여 상기 기구들을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와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의회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양성 속의 일치'의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F-1.0403, G-3.0103).

위원회는 시행방안을 연구해 권고하거나, 공의회들의 결정을 실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위원회를 구성한 공의회에 전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공의회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회 위의 공의회들의 위원회는 가능하면 거의 동수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성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권위원회에는 공의회가 의뢰한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전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의회는 전권위원회 권한의 범위와 해당 권한에 대한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공의회는 두 유형의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a. 사법 전권위원회

사법 전권위원회는 '교회 권징'에 의거해 공의회 또는 공의회들의 절차를 심의하고 판단해야 한다. 당회는 개체교회의 사법 전권위원회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당회 위의 각 공의회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D-5.0000 참고). 서로 협력하고 있는 대회들은 G-3.0404 와 D-5.0101에 따라 연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b. 행정 전권위원회

행정 전권위원회는 교회의 사법 절차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들을 다루며 판단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의회들의 사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파악하고 이를 해당 공의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행정 전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기능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으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1) (당회 사역) 사역장로와 집사를 안수하고 위임하는 일, 교인을 받아들이고 제적하는 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개체교회 내 기관을 방문하는 일;
- (2) (노회 사역)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안수하고 위임하는 일;

- (3) (노회 사역) 노회 가입을 원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회원 자격을 검토하고 받아들이는 일, 즉 청빙 조건의 승인, 안수와 위임 위원회 승인; 견습 중인 후보생을 받아들이는 일;
- (4) (노회 사역) 이민자 사역 개발, 새로운 개체교회의 조직, 개체교회 간의 합병, 또는 연합 (G-5.05);
- (5) (노회, 대회, 총회 사역) 직속 관할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고된 특정 공의회, 개체교회, 기관을 방문하여^c,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일; 다만 노회의 전권위원회는 그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목회관계를 해소할 권한이 없다 (G-2.0901);
- (6) (모든 공의회 사역) 타인에 대한 성적 학대 피의자의 사망 또는 관할권 거부로 인해 피의자에 대한 사법적 절차 관련 관할권이 종결되었을 경우에 피의자에 대해 목회적 조사를 하는 일 (D-10.0401c); 이 조사를 사법적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되나, 제기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해당 공의회에 적절하게 권고해야 한다.

노회, 대회, 총회의 전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도록 사역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가능하면 동수로 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모든 전권위원회의 정족수는 이를 구성한 공의회 또는 공의회들이 결정하나, 그 어떤 경우에도 그 구성원의 과반수 이하여서는 안 된다. D-5.0204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다.

당회의 전권위원회는 최소한 두 명의 사역장로와 한 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한 명의 평신도 목회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해당 당회가 관리하는 개체교회와 위임 목사 또는 임시 목사 관계에 있어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그 모든 활동을 다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그 기록물을 공의회 또는 공의회들에 제출해 공의회의 기록물로 보존해야 한다. 전권위원회의 조치는 그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공의회 또는 공의회들의 조치로 간주해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위원회로서 추가적인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 임무는 위원회 보고서로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행정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그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공의회의 서기에게 보고해야 하며, 서기는 이를 그 공의회의 다음 정기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공의회는 공의회의 조치들을 수정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정 전권위원회의 조치를 부결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특정 조직이나 공의회 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행정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통보해야 하며 이로써 쟁점이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G-3.0110 행정 담당 직원

당회 위의 공의회들은 그 조직의 사명을 위해 필요한 직원을 다양성 속의 일치의 원칙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F-1.0403). 공의회는 바로 위의 공의회와 협의하여, 그 조직의 사명에 필요한 직원을 공유할 수 있다. 공의회는 사명 수행 지침서(G-3.0106)에 임원 선출 절차, 기타 직원의

고용, 직무 설명, 업무 평가 방법, 고용 해지 방법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G-3.0104).

G-3.0111 공천 절차

당회 위의 모든 공의회는 공의회에서의 선출이 요구되는 직책에서 사역할 사람들을 공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절차는 조직체의 공천이 해당 공의회 구성원을 잘 대표하도록 해야 하며, 다양성 속의 일치에 대한 교단의 노력과 일맥상통하도록 해야 한다(F-1.0403).

G-3.0112 보험

각 공의회는 재산 보험과 책임 보험을 구입해 그 시설, 프로그램, 직원, 선출직 임원, 지명직 임원을 보호하도록 한다.

G-3.0113 재정

각 공의회는 예산안을 준비하고 채택해 해당 공의회 영역 내에서 교단의 사명을 지원해야 한다. 해마다 회계사가, 또는 회계 절차에 정통한 회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모든 재정 장부와 기록물에 대한 전체 재정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감사자는 회계 담당자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이 항목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하려는 차원이다. 전문 회계 분야에서 이해하고 있는 특정 감사 절차나 관행 요구 여부와는 관련없다.

G-3.02 당회

G-3.0201 구성과 책임

당회는 개체교회의 공의회다. 당회는 개체교회가 시무장자로 선출한 사람들,^d 그리고 위임 목사, 부목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당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투표권을 갖는다. 담임목사가 당회의 의장(당회장)이 되어야만 한다. 담임목사 또는 임시 당회장이 없으면 당회는 모일 수 없다. 만일 위임받은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 또는 위임받은 담임목사가 다른 당회장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노회가 당회장을 보내야 한다. 공석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당회장이 없는 경우, 노회는 규정에 따라 당회장을 보내야 한다.

당회는 개체교회를 이끌고^e 개체교회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증거하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다. 이를 통해 개체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증거의 공동체로 존재하며, 더욱 그러한 공동체로 발전한다. 개체교회의 증거 사역을 이끌어 갈 때, 당회는 교회의 표지(F-1.0302)와 개혁 장로교회가 역사 속에서 정립해온 정체성(F-1.0303)과 교회의 원대한 목표(F-1.0304)를 그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이 책무에 비추어 볼 때, 당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a.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고 전한다.

개체교회가 예배, 교육, 영적 양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말씀 사역을 위해 준비되고 승인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전

하도록 하는 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제자로의 헌신을 촉구하며 공동체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지속적인 노력을 계획하고 이끄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말씀에 따라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치유와 화해의 사역을 계획하고 이끄는 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범교회적 차원의 노력을 시작하고 이에 호응하는 일이 책임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b.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전하고 진행한다.

예배 지침의 원칙에 따라 주의 만찬을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진행하게 하며, 필요할 때 세례식을 진행하게 하는 일; 성례전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며 개체교회가 성례전에 구현된 일치의 삶을 살아가도록 개체교회를 목회적으로 돌보는 일이 이 책임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c. 그리스도 제자들의 언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교인들을 받아들이고 제적하는 일, 활동교인 명부를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검토하여 교인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이들을 권면하는 일, 양육, 교육, 교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일, 개체교회가 선출한 사역장로와 집사를 훈련하고 검증하며 안수하고 위임하는 일,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에 대한 관대함과 신실한 청지기적 자세를 장려하는 일, 교회 사역의 증대를 위해 개체교회의 물리적 자산을 관리하는 일, 집사, 재정담당자, 개체교회의 모든 기관의 사역을 인도하는 일, 개체교회의 행정 직원을 고용하는 일, 전체 교회의 사명에 개체교회가 참여하도록 하는 일, 개체교회와 공동체 내에서의 교리의 오류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증거하는 일, 교회 권징에 따라 사법적 사안을 다루는 일이 이 책임에 포함되어야 한다^f.

G-3.0202 타 공의회와의 관계

당회는 타 공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체 교회의 삶에 동참해야 하는 특정 책임이 있다. 당회가 다음의 일을 행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 a. 개체교회 내에서 사역장로를 최소 일 년의 임기의 노회 대의원으로 선출하고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일;
- b. 대회 및 총회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대회 및 총회 위원회 또는 전권위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 장로를 노회에 추천하는 일. 이를 위해 당회는 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포용성과 대표성의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함(F-1.0403);
- c. 노회, 대회, 총회의 방향과 지침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지, 또 구속력이 있는 모든 조치들을 준수하며 실행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
- d. 노회 대표들이 방문했을 때 이들을 환영하는 일;
- e. 교회의 사명에 있어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노회에 제안하거나, 노회를 통해 대회 및 총회에 제안하는 일;
- f. 노회와 총회가 그 관련 조항에 따라 요청한 통계 자료, 기타 정보를 자발적 헌금과 함께 노회,^g 총회에 보내는 일.

G-3.0203 회의

당회는 그 정기 회의를 최소 분기에 한 번 열어야 한다. 당회장^h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또는 당회원 두 명이 서면으로 요청했을 때 임시 당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 당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회의 소집 요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안건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임시 당회에 대한 합당한 통지가 있어야 한다. 노회가 지시했을 경우에도 당회는 모아야 한다. 당회는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정족수에는 당회장을 포함시켜야 하며, 사역 장로의 구체적인 수 또는 당회에서 현재 시무하고 있는 사역 장로의 구체적인 비율을 포함시켜야 한다.

G-3.0204 회의록과 기록물

당회의 회의록은 G-3.0107의 규정을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체교회의 모든 회의, 그리고 집사와 재정부가 함께하는 모든 합동 회의의 회의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당회는 다음의 명부와 기록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a. 교인 명부

G-1.0401, G-1.0402, G-1.0403에 따라 세례교인 명부, 활동교인 명부, 임시 교인 명부가 있어야 한다. 당회는 교인이 소천했을 경우, 타 교회 또는 노회로 교적을 옮겼을 경우, 또는 관할권을 거부했을 경우에 교인 명부에서 해당 교인의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교인이 요청했을 경우, 교인이 이사갔을 경우, 또는 2년간 교회 활동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당회는 교인 명부에서 해당 교인의 이름을 삭제할 수 있다. 당회는 해당 교인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활동 결여로 명단을 삭제할 경우엔 사전에 서면으로 공지해야 한다.

b. 기록부

당회가 승인한 세례를 기록한 세례 기록부, 사역 장로와 집사 기록부, 재임 기간을 기록한 위임 목사 기록부, 그 외에 당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기타 기록부를 만들어야 한다.

G-3.0205 재정

G-3.0113에 기술된 책무 외에, 당회는 예산안을 준비하고 채택해 현금의 사용처를 결정해야 한다. 당회는 현금을 기독교적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현금과 사용내역을 설명해야 한다. 당회는 현금 사용 결정에 관한 정보를 개체교회에게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

당회는 당회가 정한 임기로 회계 담당자를 선출해야 한다. 당회는 회계 담당자의 업무를 직접 감독하거나 집사회 또는 재정부가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의 회계 담당자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또 요청이 있을 때마다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당회는 교회의 표준 재정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적법하게 임명된 최소 2인 또는 공인 신용보증인 1인이 모든 현금을 계수하고 기록해야 한다.
- 모든 재정 기록을 기록한 재정 장부와 기록물은 보관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임명받은 제직이 감사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 정기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이상, 모든 재정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당회 또는 재정

감독 조직체에 제출해야 한다.

G-3.03 노회

G-3.0301 구성과 책임

노회는 특정 지역 내의 교회들의 연합체로 기능하는 공의회로서 그 지역 내의 모든 개체 교회들ⁱ 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구성된다. 노회는 각 당회가 노회에 파송할 대의원으로 몇 명의 사역 장로를 선출해야 하는지 계획하고, 이를 당회에 알려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 장로가 될 수 있으면 동수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 계획은 각 당회가 적어도 한 명의 대의원^j 을 선출하도록 해야 하며, 개체교회의 규모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F-1.0403과 G-3.0103의 참여와 대표성의 원칙을 반영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노회 임원으로 선출된 사역 장로는 그 임기동안 노회의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역 장로가 노회 또는 노회 안 개체교회 내에서 선출되어 일하는 임기동안, 노회는 해당 사역 장로를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규정에 의해 등록을 제안할 수 있다.

노회의 최소 구성 요건은 적법하게 구성된 열 개의 당회와 열 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다. G-3.01과 G-3.03에서 노회에 부여된 책임을 고려하여 해당 대회와 총회가 예외를 허용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

노회는 그 영역 내에 있는 교회들을 이끌고,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개체 교회가 증거^k 하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개체교회들은 믿음, 소망, 사랑, 증거의 공동체로 발전한다. 노회 안 개체교회의 증거 사역을 이끌어 갈 때, 노회는 교회의 표지(F-1.0302)와 개혁 장로교회가 역사를 통해 정립해온 정체성(F-1.0303)과 교회의 여섯 가지 원대한 목표(F-1.0304)를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이 책무에 비추어 볼 때, 노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a.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고 전한다.*

교인들과 협의하여 개체교회를 조직하고 영입하며 합병하고 해산하며 해소하는 일, 목회자가 없는 개체교회를 감독하는 일, 목회 관계를 수립하고 해소하는 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인도하는 일, 노회 영역 내 교회의 삶과 사명을 확장하는 범교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교회의 증거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선교, 전도, 리더십 개발, 예배, 복음, 행정의 부문에서 개체교회를 격려하고 인도하며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이 책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b.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진행한다.*

노회 회의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승인하는 일, 미조직 친교모임, 새 개척 교회, 개체교회는 아니지만 노회 영역 내에서 만나고 있는 조직체에서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승인하는 일, 성례전 집전의 필요를 채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의 만찬을 집전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역 장로를 승인하고 훈련하는 일, 성례전을 은혜의 도구로 받아들여, 성례전이 갖고 있는 일치의 삶을 노회가 살아가도록 노회의 개체교회와 회원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실행하는 일이 이 책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c. 그리스도 제자들의 언약 공동체를 육성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인 노회 회원을 안수, 입회, 해임, 위임, 제명, 권징하는 일¹, 평신도 목회자를 제한적인 목회 사역에 파송하는 일, 개체교회의 평화와 조화를 증진하며 개체교회 내 갈등의 원인을 조사하는 일, 개체교회가 관대함, 청지기직, 섬김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일, 개체교회가 사명을 발전시키고 전체 교회의 사명에 동참하도록 지원하는 일, 해산된 개체교회의 교인에 대한 관할권을 받고 그들의 교인 자격을 다른 개체교회로 옮기는 일, 노회 영역 내에서의 교리적 오류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일, 교회 권징에 따라 사법적 사안을 다루는 일이 이 책임에 속한다.

G-3.0302 대회, 총회와의 관계

노회는 다음을 통해 대회, 총회와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 a. 대회, 총회에 파송할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들의 보고를 받음;
- b. 교단 안수 시험 채점자로 사역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선출함;
- c. 대회, 총회의 방향과 지침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지, 또 구속력이 있는 모든 조치들을 준수하며 실행하고 있는지 파악함;
- d.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대회에 제안하거나, 적어도 다른 한 노회로부터 동의를 받은 헌의안을 총회에 제안하며,
- e. 대회, 총회가 요구하는 통계 자료와 기타 정보들을 매년 제출함.

G-3.0303 당회와의 관계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그 영역 내에 있는 개체교회의 당회가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개체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하도록 그 사역을 조정하고 인도하며 격려하고 지원하며 자원을 제공할 구체적인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노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a. 노회에 속한 교회의 사명을 위한 전략을 개발함;
- b. 성도들과 협의하여 새 개척 교회의 위치를 조정하며, 이전, 분할, 해소, 해산하려는 교회의 위치를 성도들과 협의하여 조정함;
- c. 노회 내의 목회자, 임시 목회 사역자, 공인 기독교 교육사, 공인 기독교 준교육사에 대한 관계 해소 조항이 포함된 최소 급여 기준을 마련함;
- d. 개체교회 내의 문제를 보고한 당회에 조언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일을 포함한다:
 - (1) 보고된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조치를 당회에 조언함.
 - (2) 조정자 역할을 함.
 - (3) 문제 해결에 대해 당회의 요청이 있거나, 당회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거나, 또

는 할 의지가 없을 경우, 노회는 교회 권징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시정할 조치를 취함;

- e. 당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노회가 판단했을 경우 당회의 관할권을 환수함. 자세히 조사한 후에, 또 당회가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준 후에, 노회는 개체교회의 당회가 사안들을 지혜롭게 다룰 수 없거나 다룰 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회의 모든 권한을 지닌 행정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이 전권위원회는 기존 당회가 있다면 그 관할권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며, 해당 당회는 노회가 달리 지시할 때까지 활동을 중단해야 함.
- f. G-4.0206에 명시된 부동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허가를 개체교회가 요청할 경우 이를 논의하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함.

G-3.0304 회의와 정족수

노회는 매년 적어도 두 번의 정기 노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회의 방향에 따라 회의를 해야 한다. 노회 자체 규정에 따라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노회는 자체적으로 정족수를 정할 수 있다^m. 그러나 노회 회원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세 명, 세 개의 다른 개체교회로부터 파송된 사역 장로 세 명 이상이어야 한다.

G-3.0305 회의록과 기록물

노회의 회의록과 공식 기록물들은 노회의 자산이며, G-3.0108에 명시되어 있는 감사를 받는다. 노회의 정서기는 노회의 회의록과 기록물의 보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노회 회원 명부, 공인 기독교 교육자 명부, 공인 기독교 부교육자 명부, 특정 목회 사역 파송 사역 장로 명부가 이 기록물에 포함되어야 한다.

G-3.0306 노회 회원 자격

각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회원 자격을 확인하며 이들이 하려는 사역을 인준한다. 이 과정에서 노회는 그 영역 내의 사역 인준을 위해 노회가 개발한 서면 기준을 따라야 한다 (G-2.0503a).

노회는 각각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노회 가입 후보자들을 교단의 신학, 성례전, 운영체제 측면에서 그들의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확인해야 한다.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교사, 전도자, 행정가, 기관 목사, 그리고 노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기타 사역 형태에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명된 이들은 노회가 승인한 시간과 장소에서 성례전을 집전할 수 있다.

모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노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노회는 노회의 지리적 범위 밖에 있거나 노회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않은 인증된 사역에 목회자가 참여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노회도 다른 노회의 지리적 범위 내에 있으며 다른 노회의 책임 하에 있는 사역에 목회자가 참여하도록 다른 노회의 동의없이 허락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두 노회가 모두 허락해야 하며 매년 검토

하고 갱신해야 한다.

미국 밖에 있는 교단에서 사역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그 사역 기간 중에 노회의 허락 하에 그 교단의 회원 자격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이 교단의 노회 회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3.0307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개체교회에게 목사, 상담자, 조연자가 됨

노회는 노회 내의 개체교회들의 삶과 사역에 대해 항상 의사소통해야 한다.

각 노회는 노회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평신도 목회자 (파송받은 사역장로), 그리고 노회의 공인 기독교 교육자를 목사와 조연자로서 섬기는 일, 노회와 노회 내 개체교회/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평신도 목회자/공인 기독교 교육자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는 일,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에 노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위한 메커니즘과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각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지도하고 교육하며 감독할 메커니즘과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지망생과 후보생에 대한 노회의 감독,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회원의 입회와 감독, 목회자 청빙과 임시 목회자 청빙의 승인, 목회자가 없는 개체교회에 대한 감독, 관계 해소, 회원의 제적, 개체교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노회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노회는 노회의 권위를 노회 내의 해당 조직체에 위임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조직체를 구성할 때에는 사역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거의 같은 수로 기용하여야 한다. 이는 F-1.0403의 다양성 속의 일치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위임된 권한의 결과로 수행된 모든 조치는 노회의 다음 정기 회의에서 노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G-3.04 대회^a

G-3.0401 구성과 책임

대회는 그 영역을 아울러 교회들의 연합체로 기능하는 중간급 공의회다. 대회는 특정 지리적 영역 내의 세 개 이상의 노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회가 소집되면, 대회는 노회가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각 노회는 대회에 파송할 대의원으로 적어도 한 명의 사역 장로와 한 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선출해야 한다. 대회는 대회에 파송할 대의원을 선출할 계획과 F-1.0403과 G-3.0103에 적시되어 있는 참여와 대표성의 원칙을 이행할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과 방안은 대회 산하 노회들의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노회에서 파송된 대의원은 같은 수의 사역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회는 대회 사역을 위해 선출된 기간동안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 장로를 가능하면 거의 동수로 등록하거나, 규정에 의거해 이러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등록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참여성과 대표성의 원칙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대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수 인종 지도자를 등록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의장 또는 임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후임자가 선출되어 위임될 때까지 대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대회는 그 영역 내의 교회의 삶과 사명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노회가 개척교회의 증거 사역을 지원하고자 할 때 대회 산하 노회들의 사역과 사명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로써 대회 산하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증거의 공동체로 성장한다. 대회 산하 교회의 증거 사역을 이끌어 갈 때, 대회는 교회의 표징(F-1.0302)과 개혁 장로교회가 역사 속에서 동일시해 왔던 특징(F-1.0303)과 교회의 여섯 가지 원대한 목표(F-1.0304)를 그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이 책무에 비추어 볼 때, 대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a.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고 전한다. 산하 노회들과 협력하여 대회 구역 내에서, 또 총회의 더 큰 전략과 맥락을 같이하는, 교회의 사명을 위한 광범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청빙, 안수, 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요청이 있을 경우 산하 노회를 지원하는 일, 산하 교회의 삶과 사역을 확대할 수 있는 범교회적 관계를 산하 노회들과 협력하여 만들고 유지하는 일, 대회 영역 내의 타 교단 그리고 기관과의 연합 선교 사역을 조율하는 일, 대회 산하 노회들 간의 의사소통과 대회 산하 노회와 총회 간의 의사소통을 조율하는 일, 광범위한 지역적 기반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서비스를 산하 노회에 제공하는 일이 이 책임에 속한다.
- b.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진행되게 한다. 대회 회의에서, 또 대회 관할권 내에서의 기타 행사와 모임에서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승인하는 일, 성례전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며 대회가 성례전에 구현된 일치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회를 목회적으로 돌보는 일이 이 책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 c. 그리스도 제자들의 언약 공동체를 육성한다 산하 노회들에게 필수적인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선교, 예언적 증거, 리더십 개발, 예배, 복음화, 행정의 부문에서 노회를 격려하고 인도하며 자료를 제공하는 일, 노회의 사역을 감사하는 일, 대회 영역 내에서의 교리적 오류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일, 교회 권징에 따라 사법적 사안을 다루는 일이 이 책임에 속한다.

G-3.0402 총회와의 관계

대회는 총회의 방향과 지침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지 또 구속력이 있는 모든 조치들을 준수하며 실행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또 전체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 공동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총회에 제안함으로써, 총회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G-3.0403 노회와의 관계

각 노회는 대회에 파송하는 대의원을 통해 대회의 책임과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대회는 그 산하 노회들의 사역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다음의 사항들이 그 책임에 해당한다:

- a. 산하 노회들을 격려하고 노회들에게 지침을 제시하며 노회들의 사역을 감독하면서, 사명 완수를 위한 연합 계획과 목표를 산하 노회들과 협의하여 개발하는 일;
- b. 산하 노회들의 사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요청했을 경우에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

- c. 새로운 노회를 조직하는 일, 노회들 또는 기존 노회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연합시키며 합병시키는 일, 기존 노회들의 동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비지역 노회를 신설하는 일, 소수 인종 또는 이민 교회에 있어 선교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여타의 조치를 취하는 일. 이러한 노회는 G-3.0301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게 조직되어야 하며, 노회가 만들어진 지역의 대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G-3.0404 기능의 축소

대회는 산하 노회 3분의 2의 찬성으로 그 기능을 축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노회 사역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행정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 대회의 기능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G-3.0401c). 대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와 상임 행정 전권위원회의 조치를 기록하기 위해 최소한 2년에 한번 모아야 한다. 대회 산하의 노회들은 노회와 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호 동의 하에, 이와 같은 대회의 기타 역할들을 맡아야만 한다.

서로 인접해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대회들은 각 대회 산하 노회의 3분의 2의 승인으로 행정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으며 연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가능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각 대회 내의 노회들의 수에 비례하여 전권위원회의 수를 정한다. 각 대회는 그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법적 사안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G-3.0405 회의와 정족수

대회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의 정기 노회를 개최해야 하며, 총회의 방향에 따라 회의를 해야 한다. 대회 자체 규정에 따라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대회는 자체적으로 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으나, 이 정족수에는 동수의 사역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은 적어도 세 노회를 대표하거나 대회 산하 노회들의 3분의 1을 대표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더 큰 쪽을 반영한다.

G-3.0406 회의록과 기록물

대회는 그 회의와 사역들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물을 보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와 규제를 위해 다음 총회에 이 기록물을 제출해야 한다. 대회는 산하의 노회 수, 그리고 그 영역 내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모든 중요한 변화들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G-3.05 총회

G-3.0501 구성과 책임

총회^P는 전체 교회의 공의회로서 미국장로교 대회, 노회, 당회, 개척교회의 일치를 보여준다. 총회는 노회에서 선출된 사역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영역 내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F-1.0403 and G-3.0103). 이들은 다음의 비율에 따라 대

의원으로 사역한다:

소속 교인 8000명 이하:	1명의 사역 장로와 1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8001-16,000:	2명의 사역 장로와 2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16,001-24,000:	3명의 사역 장로와 3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24,001-32,000:	4명의 사역 장로와 4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32,001-40,000:	5명의 사역 장로와 5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40,001-48,000:	6명의 사역 장로와 6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48,001 이상:	7명의 사역 장로와 7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의장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후임자가 선출되어 위임될 때까지 총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총회는 산하 개체교회들, 공의회들 사이의 일치, 공동체, 사명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이로써 전체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증거의 공동체가 되는 목표를 이룬다. 전체 교회의 증거 사역을 이끌어 갈 때, 총회는 교회의 표지(F-1.0302), 개혁 장로교회가 역사 속에서 동일시해 왔던 특징들(F-1.0303)을, 또 교회의 여섯 가지 원대한 목표(F-1.0304)를 그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이 책무에 비추어 볼 때, 총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a.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고 전한다. 교회를 위한 종합적인 사역 전략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 다른 기독교 조직과의 범교회적 관계와 의사소통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일, 미국장로교의 신앙과 체제와 상응하는 다른 기독교 조직을 총회의 관할권 내에서, G-5.02 와 G-5.03의 규정에 따라 받아들이고 이들과 연합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선교 사역자들을 위임하며 파송하는 일이 이 책임에 속해야 한다.
- b.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진행한다. 총회 회의, 관할권 내의 기타 행사와 모임에서의 주의 만찬의 집전을 승인하는 일, 총회의 공식 대표가 참석한 범교회 행사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하는 일, 성례전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며 교회가 성례전에 구현된 일치의 삶을 살아가도록 전체 교회를 목회적으로 돌보는 일이 이 책임에 속해야 한다.
- c. 그리스도 제자들의 언약 공동체를 육성한다. 교단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자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 공동 관심사에 대해 전체 교회와 의사소통하는 일, 교회, 세상에서의 교리적 오류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일, 노회가 요청한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선교, 예언적 증거, 리더십 개발, 예배, 복음화, 행정의 부문에서 노회를 격려하고 인도하며 자료를 제공하는 일, 교회와 세상에게 영감을 주고 이들을 도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진리와 비전의 사안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분별하고 제시하는 일, 교회 권징에 따라 사법적 사안을 다루는 일, 이 헌법에 따라 총회에 제시된 갈등을 해결하고 각 사

안 별로 조언하는 일, 전체 교회에 구속력을 갖는 사안에 대해 *규례서* 최신판을 G-6.02 조항에 의거해, 또는 시정과 징계 사안에 대한 총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규례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가장 최근의 해석을 통해 권위를 갖고 해석하는 일, 총회 정서기 사무처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일이 이 책임에 속한다.

G-3.0502 타 공의회와의 관계

총회는 다음을 통해 노회, 대회와 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 a. 노회와 대회가 그들의 헌법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조언하고 자원을 제공함.
- b. 대회의 사역을 감독함.
- c. 대회의 기록물들을 검토하고 대회가 이 헌법을 준수하도록 함.
- d. 새로운 대회를 조직함, 기존의 대회나 대회의 일부분을 분할하거나 연합시키거나 합병시킴.
- e. 노회 또는 노회의 일부분을 조직하고 분할하며 연합시키고 합병시키는 대회의 조치를 승인함.

G-3.0503 회의와 정족수

총회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바로 이전 정기 총회에 참석한 사역 장로 대의원의 최소 4분의 1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대의원의 최소 4분의 1이 요구하거나 동의하면, 총회장, 또는 총회장이 할 수 없는 경우엔 총회 정서기가 임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 때 요구하거나 동의한 대의원들은 최소 다섯 개 대회의 관할권 내의 최소 열 다섯 개의 노회를 대표해야 한다. 임시 총회의 대의원들은 직전 정기 총회의 대의원들이거나 그들의 교체 대의원이어야 한다. 임시 총회에 대한 공지는 총회 소집 60일 이전에 발송되어야 하며 이 총회의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지문에 명시된 안건 외에는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

총회의 정족수는 100 명의 대의원이어야 하는데, 그 중 50명은 사역 장로여야 하며 50명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여야 한다. 이들은 적어도 전체 대회들의 4분의 1을 대표하는 노회들로부터 파송되어야 한다.

제 4 장 교회와 민법

G-4.01 법인과 이사

G-4.0101 법인과 권한

민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각 개체교회는 법인을 조직해 유지해야 한다. 법인이 허용되지 않으면, 개체교회는 사람들 중에서 이사들을 선출해야 한다. 집사와 사역 장로를 그 직제 사역에 선출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교인들 중에서 이들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사역 기간은 G-2.0404의 조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조직된 법인이나 이사들은 다음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교회의 부동산 또는 자산을 수령, 보유, 저당, 관리, 이전함.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각하거나 용자를 얻을 때, 적법하게 구성된 회의에서 개체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이사들이 조치를 취해야 함; 해당 자산 증서를 수령하고 행사함; 해당 자산 증서를 보유하고 지킴; 개체교회의 목표를 이루어 가기 위한 모든 영구 특별기금을 관리함. 이 모든 목표는 당회의 권위에 따라야 하며 미국장로교 헌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이사들의 권한과 책무는 당회 또는 집사회의 권한과 책무를 침범해선 안 된다.

민법에 허용된 경우에, 노회, 대회, 총회는 각각 법인을 설립하여 유지해야 하며 자체 규정에 의거해 이사회를 구성할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설립된 법인, 또는 이사는 다음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 공의회의 지침에 따라 교회의 부동산 또는 자산을 수령, 보유, 저당, 관리, 이전함.

G-4.0102 법인의 구성원

개체교회 또는 공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법인의 구성원이 될 자격과 이사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법인체가 이사 선출 방식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또 시무장로들이 민법상 하자가 없는 한, 개체교회 당회의 시무장로들이 법인체의 이사가 되어야 한다. 노회, 대회, 총회는 공의회 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이사를 선출한다는 규정을 정해야 한다.

G-4.02 교회 자산

G-4.0201 사명 완수의 도구로서의 자산

미국장로교, 산하 공의회, 조직체, 산하 개체교회의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세상에서 완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G-4.0202 자산과 관련된 결정

이 교단 내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를 검토하며 수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이 헌법의 조항들은 자산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G-4.0203 교회 자산의 신탁 보유

개체교회, 노회, 대회, 총회, 미국장로교가 소유하거나, 이들을 위해 소유된 모든 자산은, 그 법적 소유권이 법인, 이사(들), 또는 비법인 사단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자산이 개체교회나 상위 공의회의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될지라도, 또는 수입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이익을 위해 신탁 보유된다.

G-4.0204 헌법에 어긋나는 자산의 활용

미국장로교 개체교회가 소유한 자산 또는 미국장로교 개체교회를 위해 소유된 자산을 미국장로교 개체교회로서 헌법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은 노회의 규정에 따라 노회가 보유하거나 활용하며 적용하고 이전하며 매각해야 한다.

G-4.0205 해산 또는 소멸된 개체교회의 자산

개체교회가 노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해산되었거나, 교인의 이탈, 사역 포기, 기타 사유로 인해 개체교회가 소멸된 경우, 해당 자산은 노회가 지정하고 제한하며 지명할 수 있는 사용, 목적, 신탁을 위해 보유되거나 활용되며 적용되어야 하고, 또는 해당 자산은 노회가 지시한 대로 매각 또는 처분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두 미국장로교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

G-4.0206 교회 자산의 매각, 저당, 임대

a. 교회 자산의 매각 또는 저당

개체교회는 해당 당회로 전달된 노회의 서면 허가 없이는, 교회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용자를 얻거나 또는 담보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조건이 걸려 있는 부동산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b. 교회 자산의 임대

개체교회는 해당 당회로 전달된 노회의 서면 허가 없이는, 예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해당 개체교회의 부동산을 임대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타 부동산들을 5년 이상 임대해서는 안 된다.

G-4.0207 분열된 개체교회의 자산

노회가 헌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에만, 개체교회와 미국장로교 사이의 관계가 끝날 수 있다.(G-3.0303b). 만일 개체교회 구성원 간의 분열이 있고 노회가 화해를 중재할 수 없거나 미국장로교 내의 독립된 교회들로 분할할 수 없다면, 노회는 여러 분파 중 어느 하나가 미국장로교 내의 진정한 교회인지 파악하여 그 분파가 자산을 맡을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은 분열 당시에 어느 분파가 개체교회 내에서 다수표를 받았는지와는 관련없다.

G-4.0208 예외 사항들

이 장의 규정은 미국장로교의 모든 개체교회에게 적용된다. 다만 개체교회가 미국 남장로교(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와 미국 연합장로교(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연합하여 미국장로교(The Presbyterian Church (U.S.A.))를 형성하기 전에 해당 개체교회가 속해있던 교단 헌법의 비슷한 조항에 귀속되지 않았을 경우엔 이 장의 규정의 예외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그 개체교회가 미국장로교 설립 이후 8년 이내에 정기 회의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투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소속 노회에 그 투표 사실을 통보했을 경우로 한정한다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로 투표한 개체교회는 미국장로교 설립 직전에 속해있던 헌법 규정 하에 그 자산 명의를 보유하며 법인 설립과 자산 소유의 특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문단은 수정할 수 없다(G-6.05).

G-4.03 비밀보장과 그 예외의 경우

G-4.0301 신뢰와 개인 정보 보호

목회적으로 사람들을 돌볼 때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제한된 목회 사역에 노회에 의해 파송된 사역장로(G-2.10)는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가운데, 신뢰의 공동체, 책임을 지는 공동체, 개인의 비밀이 보호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개인의 비밀 보호는 근심, 의문, 염려를 공유하고 영적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성스러운 공간이 만드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 비밀 보호가 피해 사실, 특히 미성년자나 정신 취약 성인에 대한 신체 학대, 방치, 성적 학대 관련 피해 사실 인지 또는 위험성을 감추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파송 사역 장로는 목회 과정에서 그들이 받은 모든 정보와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그 비밀과 관련된 사람이 개인 정보를 밝혀도 된다고 명확하게 동의를 한 경우, 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파송 사역장로가 어떤 사람에게 급박한 신체 위협의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경우,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파송 사역장로는 그 개인 정보를 밝힐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G-4.0302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

직제 사역을 맡고 있는 교단의 구성원, 그리고 미국장로교 또는 미국장로교 소속 개체교회에 의해 고용된 모든 공인 기독교 교육자는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방치 및/또는 성추행과 성적 학대로 인한 위험 또는 위협의 가능성을 다음의 경우에 교회 사법 당국 또는 민사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1) G-4.0301 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외의 의사소통으로 이와 같은 정보를 얻었을 때, (2) 전문가-고객 비밀 보장 의무에 법적으로 영향 받지 않을 때, 또는 (3) 앞으로도 신체적 위하나 학대가 행해질 위험이 있다고 목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범교회적 연합과 일치

G-5.01 범교회적 일치 노력

G-5.0101 범교회적 연합

미국장로교는 그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됨을 더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교회들과의 대화, 협력, 행동의 기회에 열려 있다. 미국장로교는 다른 개혁신교회와 다른 그리스도교 조직체들과의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며 강화하고자 노력한다.

G-5.0102 종교 간 관계

미국장로교는 모든 영역에서 비기독교 종교 조직체들과의 대화와 이해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장로교는 모든 영역에서 타종교 조직체, 사람들과의 정중한 대화와 상호 관계를 나눌 기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를 추구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온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표징이요 이를 이루는 도구임을 믿기 때문이다.

G-5.0103 일반 사회 조직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미국장로교는 일반 사회 조직이나 기관과의 대화와 공동 행동에 대한 노력을 시작하고 또한 상대방의 노력에 호응할 것이다.

G-5.02 타 교단과의 관계

G-5.0201 교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G-5.0101), 총회는 다른 기독교 조직들과 함께 언약, 협정을 맺고 목적과 지향 선언문을 만들도록 허가하고 지시할 수 있다. 총회가 허가하고 승인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세례의 상호 인정, 목회자 교류 그리고 그 밖의 사항을 다룰 것이다. 교단의 모든 공의회들은 기독교 타 조직들과의 상호 인정과 격려 속에서 함께 사역하는 기회를 갖도록 권고받는다.

총회는 총회사무국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관들의 최상위 공의회 또는 운영 기구와 교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a. 미국 밖에 있는 교단으로 미국장로교와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에 있으며 총회가 인정한 교단;
- b. 미국장로교가 회원으로 있는 범교회 조직의 회원 교단;

- c. 미국장로교가 총회의 승인을 받고 공식적인 범교회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교단.

G-5.0202 완전 교류

미국장로교 총회는 총회가 인정한 교단들과 완전한 교류 관계를 유지한다. 완전한 교류 관계에는 범교회적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세례의 상호 인정과 목회자의 상호 교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교단의 모든 공의회들은 미국장로교와 완전한 교류 관계에 있는 교단들과의 상호 인정과 격려 속에서 함께 사역하는 기회를 갖도록 권고 받는다.

G-5.0203 범교회적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F-1.0302a, G-5.0101), 위에 언급된 관계에 더하여, 총회사무국은 타 기독교 조직과 함께 공식 협정과 범교회적 양해 선언문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협정과 선언문은 상호 협력에 대한 지침으로 총회가 승인해야 하며, 노회의 찬반 투표를 위해 각 노회에 보내야 한다.

G-5.03 완전한 유기적 연합

다른 교회 조직과 미국장로교 간의 완전한 유기적 연합은 다음의 승인을 통해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 제안된 연합안에 대해 총회가 승인하고 그 권고안을 노회들로 보냄;
- 모든 노회들의 3분의 2의 서면 승인;
- 차기 총회, 또는 제안된 연합안에 명시된 다른 총회에서의 승인과 완결;

G-5.04 연합 노회

미국장로교 노회는 타 개혁 교단의 회원으로 하나 이상의 동등한 공의회 또는 운영 조직^a과 연합 노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대회 또는 각 조직이 속한 동등 공의회 또는 운영 조직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G-5.0401 헌법적 권위

연합 노회는 연합체에 참여한 각 교단의 헌법을 따라야만 한다. 교단의 헌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한 교단의 모든 강행 규정은 다른 교단의 헌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사안에 적용해야 한다. 강행 규정이 서로 상충될 때, 연합 노회는 각 교단의 최고 공의회 또는 운영 조직에 유권 해석 또는 헌법 수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건의해야 한다.

G-5.0402 연합을 위한 계획

연합 노회는 연합 당사자인 각 노회 또는 운영 조직의 3분의 2 투표로 연합 계획에 찬성할 때에만 창설할 수 있다. 그 연합체를 구성하는 각 조직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대회 또는 운영 조

직이 연합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G-5.05 연합 개체교회 전도 사역

선교 전략의 필요에 따라, 노회는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 간의, 또 타 기독교 교단의 개체교회와의 연합 전도 사역을 만드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이 때 기독교 타 교단의 개체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인식하며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세례와 주의 만찬의 성례전을 지키는 교단이어야 한다^b.

- a. 이와 같은 연합 사역은 이에 참여한 각 교단의 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교단들의 헌법들이 서로 다를 경우, 한 헌법의 강행 조항은 다른 헌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사안에 적용되어야 한다. 강행 조항들이 상충될 경우, 개체교회의 공의회는 바로 위 상위 공의회 또는 운영 조직에 이의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
- b. 이와 같은 연합 사역은 적법하게 구성된 각 개체교회의 정기 회의에서 각 개체교회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승인된 계획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각 교단의 노회 또는 동등한 공의회 또는 운영 조직이 승인해야 한다. 연합 전도 사역 계획안의 조항을 미국장로교 헌법에 대한 수정 또는 개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c. 연합 사역에 관련된 개체교회 및 이에 관련된 타 교단의 다음 상위 공의회나 운영 조직과의 협의를 거쳐, 노회는 그 교단으로부터 개체교회를 받아들이거나 그 교단으로 개체교회를 이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전을 통해 그 개체교회의 선교 전략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당시에 이 교단은 미국장로교와 완전한 교류 또는 교신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G-3.0303b).

제 6 장 헌법의 해석과 개정

G-6.01 개혁

미국장로교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개혁된 교회, 항상 개혁되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한다(F-2.02). 이러한 노력에 비추어 볼 때, 다음의 헌법 해석과 개정 절차는 신실함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G-6.02 헌법에 대한 해석

총회는 *규례서*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시정 또는 징계 사안에 대해 이 항목에 설명되어 있는 방식으로 또는 총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해석이 이루어졌다면, 이 해석은 전체 교단의 공의회들에게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총회는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자문위원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 장로가 가능한 거의 동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총회 정서기는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한다. 헌법 자문위원으로 6년의 전체 임기를 다 채운 사람은 6년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추가적으로 4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재선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야 한다. 총회는 헌법 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자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교단 공의회에서 *규례서*에 대한 총회의 해석이 필요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다음 총회 개최 120일 이전에 총회 정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서기는 해석에 관한 모든 요청을 헌법자문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데, 사법 전권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에 관련된 해석은 예외이다. 헌법자문위원회는 다음 총회 개최 60일 이전에 그 보고서와 권고안들을 총회 다음 회기에 제출해야 한다.

G-6.03 신앙 고백서 개정

미국장로교의 고백문들^a에 대한 개정은 다음의 모든 단계가 충족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 a. 신앙 고백서 개정 제안을 교단 내에서 연구하도록 총회가 승인한다.
- b. 총회가 이 제안을 검토하도록 15명 이상의 사역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나 이들 중 같은 대회에서 참여한 사람이 2명을 초과해선 안 된다. 이 위원회는 제안을 기안한 위원회 또는 공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그들의 연구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c. 다음 총회는 연구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개정 제안을 승인한 후에 투표를 위해 각 노회에 보낸다.
- d. 개정 제안은 노회의 3분의 2의 서면 찬성을 통해 승인을 받는다.

- e. 개정 제안은 노회의 3분의 2의 찬성 이후에 개최되는 다음 총회에 의해 승인되고 제정된다.

G-6.04 *규례서* 개정

*규례서*에 대한 개정은 다음의 모든 단계가 충족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 a. *규례서*에 대한 총회의 해석 요청은 다음 총회 개최 120 일 이전에 총회 정서기에 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b. 정서기는 *규례서* 개정 제안을 헌법자문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G-6.02). 헌법자문위원회는 언어의 명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또 미국장로교 헌법의 다른 조항들과의 양립성 측면에서 개정안을 검토해야 한다. 총회 개최 전 적어도 60 일 이전에 자문위원회는 권고안과 함께 그 연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된 제안에 대한 채택 또는 거부 의견 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 제안안에 대한 수정안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총회는 헌법 자문위원회의 보고서와 모든 권고안을 검토하기 전엔 어떤 개정안도 검토해선 안 된다.
- c. 동일한 총회가 개정 제안안을 승인하고 그 안을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낸다.
- d. 노회는 개정 제안안을 보낸 총회가 폐회하고 1 년 이내에 총회 정서기에게 투표 결과를 보내야 한다.
- e. 총회 정서기는 *규례서* 개정안이 모든 노회의 다수의 찬성 투표를 받았음을 서면으로 접수한다. 이렇게 승인된 개정안은 이 개정안을 제출한 총회의 폐회 후 1 년 후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G-6.05 예외 사항

이 헌법의 G-4.0208 조항은 개정할 수 없다.

G-6.06 특별 조항의 개정

신앙 고백문들의 개정 절차와 완전한 유기적 연합(G-5.03)을 이루는 절차는 각 항목에 기술되어 있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예배 지침

예배 지침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예배 지침'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교역 장로라고도 함)가 한다고 기술한 역할을 사역 장로도 수행할 수도 있다.

머리말

이 '예배 지침'은 교회의 신앙, 삶, 예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 이 '예배 지침'의 신학은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미국장로교 신앙고백서의 방향을 따르며, 범교회적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풍부한 전통과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권장하고 있다.

'예배 지침'은 정해진 예배 순서와 기도문들을 모아놓은 예배 책자가 아니다. 이는 우리 예배의 바탕에 있는 신학을 설명하고 있으며, 적절한 예배 형식을 제시하는 가운데, 예배, 그리스도인의 삶, 전도, 섬김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 지침서는 미국장로교 개체 교회와 공의회 of the 예배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제시한다. 개혁 교회 예배의 비전 가운데, 이 지침서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개발하도록 요청하며 지속적인 개혁을 북돋운다. 예배 지침은 우리 예배에 질서를 부여하는 헌법 문서로 교단 내에서 권위를 갖는다.

성경, *신앙고백서*, *규례서*에서 직접 인용한 것들은 괄호로 표기하며, 기타 성경, 신앙고백, 교회 자료들은 각주로 표기했다.

제 1 장 기독교 예배의 신학

W-1.01: 기독교 예배: 서론

W-1.0101: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모든 영광, 존귀, 찬양, 감사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린다. 특별히 말씀과 성례전의 은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모여 예배한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 속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섬긴다.

W-1.0102 : 은혜와 감사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에 응답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선언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하시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고 기뻐한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이 리듬은 성경, 인류 역사, 일상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신앙, 삶, 예배의 모든 것을 형성한다.

W-1.0103 : 하나님의 언약

구약 성경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노아와 그 가족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다윗의 집안에게 언제나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사람들이 이에 대해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하셨다.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다.

W-1.0104: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간추린 신앙고백 11.2)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모든 이에게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창조 시에 선포되었고, 성경 안에 약속되었고 계시되었다.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권능으로 다시 살어나

-
- W-1.0101: 사 6:3; 계 4: 8, 11; 7:12; 니케아 신경 1.1; 사도 신경 2.1; 스코틀랜드 3.01; 하이델 베르크 4.122; 제 2 헬베틱 5.023; 웨스트민스터 6.011-6.013, 6.112-6.113; 스코틀랜드 7.001, 7.045-7.048; 대요리문답 7.111, 7.213-7.216, 7.289; 1967년도 신앙고백 9.35-9.37; 벨하 10.1; 간추린 신앙고백 11.1.
- W-1.0102: 시 136:1; 렘 33:1-9; 롬 6:1-11; 8:12-17; 요일 4:19; 하이델베르크 4.002; 1967년도 신앙고백 9.17; 간추린 신앙고백 11.4.
- W-1.0103: 창 2-3; 9:1-17; 15-17; 출 19-31, 34; 삼하 1:1-17; 렘 1:4-10, 31:31-34; 히 8:8-12; 스코틀랜드 3.02-3.06; 웨스트민스터 6.037-6.042; 1967년도 신앙고백 9.18-9.19; 간추린 신앙고백 11.3.
- W-1.0104: 요 1; 롬 10; 고후 4; 빌 2; 골 1; 히 1-2; 계 19; 니케아 신경 1.2; 사도신경 2.2; 스코틀랜드 3.06-3.11; 제 2 헬베틱 5.001-5.004, 5.062-5.079; 웨스트민스터 6.043-6.50; 바르멘 선언 8.10-8.15; 1967년 신앙고백 9.07-9.11, 9.21-26, 9.32-33; 간추린 신앙고백 11.2.

셨다. 이 세상의 구속을 위해 증보하고 계시며, 또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형상화된 것이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응답할 때의 모범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완전하고 분명한 계시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깨닫는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발견한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섬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배한다.

W-1.0105 : 성령

성령은 "생명을 주며 새롭게 하는 존재"(간추린 신앙고백 11.4)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한다. 성경은 창조가 시작될 무렵 성령이 어떻게 운행했는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뻐부었는지, 예수를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렸는지, 오순절에 어떻게 교회에 임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같은 성령이 여전히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드러내며, 이에 대해 우리가 더 분명하게 감사하며 응답하도록 하신다. 성령은 우리가 모여 예배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준비시키며, 성례전을 통해 우리를 구별하고 양육하며, 세상을 섬기도록 보내신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구성원이 교회 내에서 사역하고 세상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다.

W-1.0106 :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

기독교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의 선물을 통해 우리와 진정으로 함께하시며 우리 가운데 활동하신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세례와 주의 만찬이 거행되는 모든 곳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즉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하며 믿음의 신비를 선포한다. 이 은혜의 도구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시며, 우리 일상의 삶에 질서가 있게 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같은 예배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삶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W-1.0105: 요 14:15-31; 고전 12:1-11; 니케아 신경 1.3; 사도 신경 2.3;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3.12-3.13;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00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51-6.054, 6.183-6.186; 1967년도 신앙고백 9.20, 9.31; 간추린 신앙고백 11.4.
W-1.0106: 눅 24:13-35;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3.18; 하이델 베르크 4.065;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134-5.13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78-6.080, 6.140-6.145; 소요리문답 7.088; 대요리문답 7.264; 바르멘 신학선언 8:16-8.18, 8.26; 1967년도 신앙고백 9.27, 9.30, 9.35-9.37;간추린 신앙고백 11.4.
W-1.0107: 사 55:1-13; 마 28:1-20; 요 21:15-19; 고전 13:13; 고후 13:13; 엡 4:1-16; 니케아 신경 1.3; 바르멘 신학선언 8.26; 1967년도 신앙고백 9.48-9.52.

W-1.0107 : 예배와 교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말씀과 성례전은 교회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 준비시킨다. 하나의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의 사명은 세례를 통해 시작되며, 주의 만찬을 통해 자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하며,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역은 세례에서 시작되어, 주의 만찬을 통해 성장해, 주의 말씀을 통해 그 모습을 갖춘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의 핵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다.

그리스도인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예배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W-1.02: 시간, 공간, 물질*W-1.0201 : 창조와 구속*

시간, 공간, 물질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가 구속하셨으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에서, 물질의 봉헌을 통해 드러지는 기독교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 공간, 물질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다.

W-1.0202 : 시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 시편은 하나님 백성의 일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으며, 토라, 즉 모세오경은 칠 일 중 하루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도록 가르친다. 선지자들은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이기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한 주의 첫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도들은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고,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통해 죄와 사망에 대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선포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마다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시작했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거행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주의 첫째 날에 계속 모였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복음을 들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만찬을 했다.

지난 이천 년 동안 예배를 드리며, 교회는 예배 절기를 발전시켜 왔다. 이들 중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이 지키셨던 이스라엘의 절기와 금식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기독교 교회력의 이러한 양식은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선포하고자 할 때, 예수의 제자로 성장해갈 때, 또 그리스도의 사명을 섬기고자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한다.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초점

W-1.0201: 롬 12:1-2; 1967년도 신앙고백 9.16.

W-1.0202: 창 1:1-5; 2:1-3; 시 1:2, 92:1-4; 사 58:1-14; 욥 2:1-16; 눅 24:13-35; 행1:14; 2:42; 3:1, 10:9, 20:7; 롬 14:5-6; 골 2:16-17; 계 1:9-1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03;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223-5.22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18-6.119; 소요리문답 7.057-7.062; 대요리문답 7.225-7.231

을 맞추어 시작한다. 예수님의 탄생과 주님의 공현이 포함된 대강절과 성탄절 기간이 그 시작이다. 주현절 후에는 예수의 세례와 산상 변화를 기념한다. 교회력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재의 수요일, 성 삼일(세족 목요일, 성 금요일, 부활 전야), 주님의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절이 있는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이 바로 그 시기다. 성령 강림절 이후 삼위일체 주일, 만성절, 그리스도 통치 주일을 기념한다.

또한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교회는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수백 년간의 기독교 전통, 예수의 습관과 연결된다. 큰 모임에서, 작은 모임에서, 또는 집에서 날마다 드리는 기도는 예배와 개인의 삶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우리는 일반 생활 및 농업 생활 주기, 문화 및 가족 기념 행사, 중요한 사람 및 사건 기념 행사, 교회 프로그램 및 활동을 고려해 예배에서 다른 기념일들을 기념한다. 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지키는 것도 적절한 일이다.

W-1.0203 : 공간⁴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 속했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 구약 성경은 돌 제단, 성막, 성전 등을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회당과 성전에서 예배 드렸지만, 또 동시에 광야, 산등성이, 호숫가에서도 예배 드렸다고 전한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집에서, 동굴에서, 또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곧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교회는 예배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건축하기 시작했다.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예배 공간은 하나님 백성이 모인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주로 형성된다.

예배를 위해 구별된 공간은 공동체를 복돋우며,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 공간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공간이 아니어야 하며,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또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한다. 기독교 예배 공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공간, 세례단, 주의 만찬 제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말씀과 성례전의 이 상징물의 배치는 이 상징물들 간의 관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예배에서 이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W-1.0203: 창 28:18; 출 25-31; 왕상 6-8; 스 6:13-22; 시 24:1; 눅 2:22-52; 4:16-21; 요 4:20-24; 6:1-14; 행 2:43-47; 16:25-34; 고전 3:16-17; 벧전 2:4-5; 제 2 헬베타 신양고백 5.214-5.216; 웨스트민스터 신양고백 6.117.

W-1.0204: 창 1:31; 출 25-31, 32; 시 50:7-15; 사 1:11-17; 암 5:21-24; 미 6:6-8; 마 26:6-13; 막 14:22-25; 눅 5:1-11; 요 13:1-20; 롬 12:1-2; 고전11:17-34; 12:12-13; 스코틀랜드 3.2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66-4.068, 4.096-4.098; 제 2 헬베타 신양고백 5.020-5.022, 5.169-5.184; 웨스트민스터 신양고백 6.149-6.153; 소요리문답 7.092-7.093; 대요리문답 7.272-7.274; 1967년도 신양고백 9.50.

W-1.0204 : 물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를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예배 중에 물질의 선물을 사용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 가지 물건들, 즉 언약궤, 세마포, 제사 도구, 기름, 향료, 악기, 곡식, 과일, 동물을 사용했다고 구약 성경은 전하고 있다. 동시에, 선지자들은 우상숭배, 즉 눈에 보이는 물체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혼한 물건들, 곧 그물, 물고기, 병, 기름, 수건, 물그릇, 물, 빵,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그의 가르침, 치유, 나눔의 사역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십자가에서 예수는 그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쳤다.

예수를 따르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물, 빵, 포도주를 상징, 곧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상징,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으로 여겼다. 우리는 이를 성례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와 이에 감사하는 우리의 응답의 상징이다. 세례와 주의 만찬의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성장시키신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 몸을 찬양의 산 제사로 드린다.

예배 중에 물질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표현한다.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드리는 행위는 또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우리가 지켜가겠다는 자세를 반영하고 있다. 지구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명을 위해 십일조와 헌금을 드린다.

또한 우리는 예배 중에 창의적인 은사, 곧 음악, 미술, 연극, 율동, 영상, 휘장, 의상, 도구, 집기, 건축물을 드린다. 우리가 이 은사들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이들은 우상이 된다. 그러나 그 단순한 형식과 기능을 통해 이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이들은 예배에 적합하다.

W-1.03: 언어, 상징, 문화

W-1.0301 : 육신이 된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모든 물질이 존재하게 하신다.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동일하며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특정 시대에 특정 장소에서 구체적인 사람, 곧 나사렛 예수로 우리 가운데서 살아가셨다. 기독교 예배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상징, 문화 형식은 예수의 성육신의 선물에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며 은혜로 다가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되게 말할 수 있으며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릴 수 있다.

W-1.0301: 요 1:1-18; 골 1:15-20; 히 1:1-4; 1967년도 신앙고백 9.27.

W-1.0302: 출 3:13-15; 24:17; 신 32:11-12, 18; 시 22:9-10; 23:1; 27:1 사 40:18-26; 42:14; 43:14-15; 49:15; 55:3-9; 66:13; 겔 34:11-31; 호 11:3-4, 10; 마 17:9; 막14:36; 눅 5:33-35; 요 10:11-18; 롬 11:33-36; 갈 3:27-29; 약 2:1-9; 제 2 헬베타릭 신앙고백 5.21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14; 간추린 신앙고백 11.1, 11.3.

W-1.0302 : 언어

하나님의 신비와 실재는 우리의 경험, 이해, 언어를 초월하기에,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 안에 다 담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의 세계에, 성경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 선하심, 은혜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한 인간의 모습, 곧 창조주, 언약의 주체, 위로자, 해방자, 심판자, 구속자, 산파, 어머니, 목자, 주권자, 잉태하는 자, 잉태케 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 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 이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름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은 자연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하나님을 바위, 샘물, 불, 빛, 독수리, 암탉, 사자로 묘사하고 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에 관해 말씀하실 때, 특별히 아바 아버지라고 친밀한 단어를 쓰시면서, 이러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다 쓰셨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는 또 본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미지들 중 몇몇을 사용하셨다. 선한 목자, 신부, 인자가 바로 그것이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때 구약 성경의 언어들에 받아들여 사용했다. 특히 이 세계의 권세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여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성경과 우리의 신학 전통만큼이나 다양하고 다채로운 언어를 예배 중에 의도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설명하는 언어는 포괄적이다. 이러한 언어가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할 때 사용한 깊고 너른 용어와 이미지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백성을 진실되게 묘사하고 설명하는 언어는 포용적이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사람, 문화, 배경, 경험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언어들 통해 모든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동일하게 포용하시고 이끄시며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많은 민족과 문화로 구성된 공동체가 되어 왔으며, 이를 성령께서 그 권능으로 하나되게 하셨다. 그렇기에 우리의 교회들은 여러 언어로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예배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상의 언어, 곧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언어여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믿음을 진실되게 표현하며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다양한 언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한다.

W-1.0303 : 상징물

성경에서 일부 이미지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여러 면에서 관련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를 상징물이라 부른다. 구약 성경에는 나무, 성전, 무지개, 강, 양, 종이 두루마리, 건물, 몸 같은 수많은 상징의 예가 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많은 이들이 그 의미를 아는 상징에 의존하여 그리스도, 복음,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W-1.0303: 창 2:9; 9:8-17; 출 15:20-21; 삼하 6:1-5; 시 23:5; 30:11-12; 겔 3:1-3; 34:11 31 36:24-28; 47:1-12; 욕 2:12-14; 미 6:8; 습 3:14-20; 마 26:26-29; 28:18-20; 막 6:56; 10:21; 눅 9:1-2, 12-17; 10:1-2; 요 6:35; 8:12; 13:1-20; 고전 1:18; 갈 6:14; 계 20:11-15; 22:1-5, 17; 간추린 신앙고백 11.2.

이해를 전달했다. 빛, 책, 물, 빵, 잔, 십자가와 같은 일부 친숙한 상징물들은 기독교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징물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표식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서 선포되고 구체화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더 완전히 알게 된다. 구약 성경은 예배에서의 상징적 행위들, 곧 금식과 잔치, 기뻐함과 탄식함, 춤추고 노래함, 재의 수요일 십자가 굿기와 기름부음, 씻음과 드림, 정의를 행함과 자비를 베푸는 것과 같은 행위들을 설명하고 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기존의 신앙 관습, 특히 떡을 떼는 일과 세례에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는지, 또 일반적인 구제행위, 곧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 예배에는 다양한 상징적 행위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 신앙 관습들, 또 그 외의 신앙 관습들과 분명하게 연계되어 있다. 모임과 보냄, 무릎 꿇음과 일어남, 말함과 노래함, 씻음과 드림, 재의 수요일 십자가 굿기와 기름 부음, 먹음과 마심, 축복함과 손을 얹음이 바로 그 상징적 행위들이다.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전달하며 우리의 감사의 응답을 전한다.

W-1.0304 : 문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 주셨다. 또 성경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이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사도행전과 신약의 서신서들은 당시 형성되던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어려움과 논쟁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초대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으며"(갈 3:28),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주장했다. 지난 이천 년 동안 성장하고 퍼져 나가면서, 교회는 온 세계의 문화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번성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곳에서의 그리스도의 주권을 증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나와 하나님의 어린양을 찬양하는 큰 무리가 될 것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다.

기독교 예배는 상황적이다. 특정 공동체에서 시작되어,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전달하는 말씀, 이미지, 상징물, 행위를 통합시킨다. 또한 기독교 예배는 교차문화적이다. 신앙 공동체 안팎의 전통과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기독교 예배는 문화 초월적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의 보편적인 의미를 선포하며, 모든 문화를 초월한 우리 삶의 공통 요소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 기독교 예배는 반문화적이다. 복음의 도전적인 면을 지지하며 하나님의 공의, 정의, 평화의 나라를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는 상호문화적 행사여야 한다. 모든 사람들 사이의 상호성, 대화, 평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우리는 모든 시대와 장소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다. 따라서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또 그 교회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화 외의 문화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W-1.0304: 욕 2:28-32; 행 2:17-21; 10:9-16; 롬 10:13; 고전 9:19-23; 10:23-33; 계 7:9-12; 벨라 신앙고백 10.3; 간추린 신앙고백 11.4; *예배와 문화에 대한 나이로비 성명서* (루터란 세계 연맹, 1996).

제 2 장 개혁 전통 예배의 순서

W-2.01: 근거와 원리

W-2.0101 : 예배 순서의 근거

예배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에게 신실해야 한다. 교회는 예배순서를 정할 때, 성경의 증거를 권위있고 탁월한 출처로 이용한다. 또한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할 책임이 있는 이들은 미국장로교 헌법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개혁 전통의 지혜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보편 교회의 전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예배 공동체의 문화와 상황에 민감해야 한다.

W-2.0102 : 형식과 자유

형식과 자유 사이의 긴장은 기독교 예배를 언제나 두드러지게 하는 특징이다. 어느 전통은 정해진 예배 순서를 강조하면서 성경에 충실하고자 한다. 다른 전통은 정해진 예배 순서를 거부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자유를 강조한다. 우리는 모든 예배 형식이 잠정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개혁되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고정된 예배 형식은 신앙의 삶과 신실함을 형성하도록 하는 지속적인 유형과 관습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 좀더 즉흥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예상치 않은 통찰력과 영감의 공간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성령의 창의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

W-2.02: 예배를 위한 모임

W-2.0201 :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한다. 예배는 하나님 백성의 집합적 행위이며 우리 공동의 삶과 사역의 표현이다. 그리스도의 온 지체들은 마음, 정신, 영혼, 힘을 다하여,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온전히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특별한 은사를 드리며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하는 이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예배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개체교회의 문화적 다양성의 풍성함과 그 개체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적 상황을 예배

W-2.0101: 수 22:5; 요 4:23-24; 계 2:7; 22:8-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06, 6.112.

W-2.0102: 요 3:8; 고전 12-14; 갈 5:1;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3.2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08-6.112; 제 2 헬베티크 신앙고백 5.219.

W-2.0201: 출 19:5-6; 신 6:4-9; 마 19:13-15; 막 12:28-31; 벧전 2:9-10; 신성 전례 법전 (제 2 바티칸 공의회, 1963).

순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예배 순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격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W-2.0202 : 기도로 참여함

기도는 예배의 핵심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며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기도는 믿음의 태도이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방법이다. 또 기도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주된 방법이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지며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는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신실하게 하며 이 기도는 우리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한다.

기도에는 찬양, 감사, 고백, 간구, 중보, 헌신 기도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여러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그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말로 할 수 있으며, 침묵이나 찬양으로 할 수도 있으며, 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시편, 찬송가, 영가를 부르는 것은 중요하고 오래된 기도 형식이다. 찬양은 우리의 전인격이 행하는 것이며,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회중 자체가 교회의 주 성가대이다. 성가대나 그 외의 찬양 사역자를 조직하는 목적은 기도의 찬양을 하는 회중을 이끌고 돕기 위함이다. 특별 찬양, 성가, 악기 연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며 개체교회의 기도를 더욱 뜨겁게 한다. 더 나아가, 예배의 많은 요소들을 노래로 부를 수 있다. 예배에서의 음악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러지는 제물이어야 한다. 이는 예술적 표현, 즐거움의 원천, 또는 침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 외의 행위들을 통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무릎 꿇는 것, 고개 숙이는 것, 일어서는 것, 손을 들어 올리는 것, 춤추는 것, 북을 치는 것, 박수 치는 것, 껴안는 것, 손을 잡는 것,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이 그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예배에서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며, 사람들의 유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예배자들과 예배 인도자들은 자신들만이 인정받게 하고 전체 개체교회의 필요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W-2.03: 예배 인도와 직제 사역

W-2.0301 : 예배를 위한 은사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은사들을 사용하도록 부름 받는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누구

W-2.0202: 엡 5:19; 골 3:16;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16-4.118;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218-5.22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14-6.115; 소요리문답 7.098-7.099; 대요리문답 7.288-7.296; 1967년도 신앙고백 9.50.
W-2.0301: 롬 12:4-8; 고전 12:1-11; 엡 4:7-16; 뱌전 4:10;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55; 1967년도 신앙고백 9.38-9.40.

라도 그들의 은사를 활용해 기도하고 성경을 봉독하며,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보조하는 것은 적절하다.

어떤 이들은 그 은사와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특별한 사역에 부름받기도 하며, 예배 진행과 관련해 특별한 책임을 맡기도 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역할과 책임은 하나님과 회중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만 제한되며, 어떤 경우에도 다른 구성원의 지도력을 약화시킬 수 없고, 예배하고자 모인 사람들의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W-2.0302: 집사

집사는 구제, 전도, 섬김에 대해서 회중을 이끌어, 세상에서 교회가 사역하고 있음을, 또 교회 내에 세상이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집사는 예배 순서에서 특별한 책임을 맡진 않지만, 당회는 집사가 (예배에 참석한 경우,) 예배를 정기적으로 인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들의 구제, 전도, 섬김의 사역을 교회의 예배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W-2.0303 : 사역 장로

사역 장로는 그들의 분별력과 운영 능력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공동의 삶을 성장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또 이들은 말씀을 가르쳐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노회가 사역 장로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파송하면, 사역 장로는 특정 회중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며 성례전을 집전할 수 있다(G-2.1001).

특정 회중에서 사역 장로는 예배를 만들어 사람들이 이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역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는 함께 당회를 섬기는 가운데 다음의 일을 수행한다: 설교, 성례전, 합심 기도, 찬양을 준비함; 회중 내의 모든 공적 예배를 감독하고 승인하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의 책임으로 규정된 것은 관여하지 않음; 예배의 종류, 일자, 시간, 장소를 결정함; 예배 공간의 배치, 특별 장식물-꽃, 초, 현수막, 강단 장식, 기타 물건-의 사용, 음악, 연극, 무용, 미술 사역에 대한 책임을 짐.

W-2.0304 :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교역 장로라고도 함)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전하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도록 준비시키도록 부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는 다음의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진다: 성경 봉독 본문 선정, 설교 준비, 예배 기도, 예배 찬양 선정, 예배 보조 유인물 또는 영상, 특정 예배에서의 연극, 무용, 기타 예술 형식의 사용.

W-2.0305 : 공동 책임과 의무

특정 회중 내에서, 예배 순서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의 책임이며 당회의 동의를 통해서

W-2.0302: 딤후전 3:8-13;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148.

W-2.0303: 딤후전 5:17-22;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147.

W-2.0304: 딤후전 4:6-16;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147, 5.163.

W-2.0305: 고전 12:4-31; 엡 4:11-16.

정한다. 찬양, 예식서, 성경, 기타 영구 예배 자료의 선정은 당회의 책임이며, 이에 대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의 동의, 교회 찬양사역자와 교육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다.

찬양 사역 담당자나 성가대 담당자가 있는 곳에서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는 성가와 기타 음악 프로그램에 관해 그 담당자와 협의할 것이다. 당회는 이 논의가 적절하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는 특정 예배를 계획할 때 위원회와 논의할 수도 있다.

당회는 회중이 교회 예배에 온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예배에 관해 회중을 교육할 책임이 있다. 당회가 이 '예배 지침'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특히 사역 장로와 집사 교육 시 이를 교육한다.

예배 관련 책임을 수행할 때 당회는 노회에 책임을 진다. 노회가 개체교회의 예배의 성격, 예배 운영 기준, 교회의 선교와 사역 면에서의 예배의 열매에 관해 당회와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노회가 목회 후보생을 준비시키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를 교육할 때, 이 '예배 지침'을 활용해 예배 관련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제 3 장

주일 예배

W-3.01: 주일의 예배

W-3.0101 : 부활의 날

우리는 주일(일요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이 그 주의 첫째날 새벽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일은 또 창조의 "여덟째 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새창조의 표시이다.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나, 특별히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며 도래할 하나님의 통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W-3.0102 : 주일 예배 형식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말씀과 성례전의 예배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만나 말씀을 듣고 떡을 떤다. 주님은 그 주의 첫번째 날, 곧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날에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교회는 주님의 날에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복음의 온전함을 선포한다.

주일 예배에는 그 외의 행위들이 또 포함된다: 모여 찬양하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며,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며, 축복받고 파송받는다. 이 모든 행위들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보냄 받는다.

주일 예배의 형식은 주일 아침 이외의 날과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부활 전야와 같은 토요일 저녁 예배 때에 주일 예배의 순서를 따른다. 고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계산법에 따르면 새 하루는 해가 지면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주중 예배는 주일 외의 주중에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제시한다.

W-3.0103 : 예배의 순서

예배 순서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의미있고 신뢰할 만한 구조를 제시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배 순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을 형성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형식이 된다.

이 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일예배 순서는 성경, 보편 교회의 전통, 우리의 개혁 전통 유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이는 교회의 믿음, 삶, 예배에 있어서 말씀과 성례전의 중심성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한 주일 예배 순서는 하나의 권장 사항이며, 다른 예배 순서 방법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특정 개체교회나 문화의 상황 속에서 다른 유형의 예배 순서를

W-3.0101: 창 1:1-5; 계 1:9-11; 소요리문답 7.060.

W-3.0102: 눅 24:13-35; 행 2:42; 20:7; 제 2 헬베타릭 신앙고백 5.21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16; 1967년도 신앙고백 9:35-37.

W-3.0103: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3.2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08-6.112.

따르는 것도 적합할 수 있다. 물론 이 순서가 말씀에 충실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W-3.02: 예배 드리기 위해 모임

W-3.0201: 예배를 준비함

예배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시작된다. 서로 인사하고 묵상 기도하며 공지 사항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세상에 증거하는 행위이다.

W-3.0202: 예배 초청 문구

예배로의 부름은 대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이 예배 처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모이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함으로써 예배의 상황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거룩하신 분과의 만남으로 설정된다.

W-3.0203: 시편, 찬송가, 영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로 시편을 노래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삶, 죽음, 부활에 비추어 시편을 해석하며, 시편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기도하며 연구했다. 시편을 찬양하는 것은 개혁 전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교회는 시편 외에 다른 찬양, 찬가, 영가를 추가해 왔다. 여러 세대에 걸쳐, 또 다양한 문화로부터, 교회는 여러 악기가 반주하는 회중 찬양을 발전시켜 왔다. 우리는 이 풍부한 곡들에서 선곡해 주일 예배 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한다.

W-3.0204: 기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뻐하여, 또 모인 예배 공동체 위에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도록 간구하며 기도드릴 수 있다. 이 기도는 기도를 하는 그 날의 성경 구절이나 교회력에서 정해 놓은 것으로부터 주제나 형상을 활용할 수 있다.

W-3.0205 : 죄의 고백과 용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또한 세상과 우리 삶의 죄악된 상태를 마주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믿기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간다. 공동체 전체의 찬양에서 공동체 전체의 죄의 고백으로의 이 전환은 하나님 은혜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으며 개혁 전통의 특징들 중의 하나다.

고백으로의 부름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약속하는 것 모두 하나

W-3.0205: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3.1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31-6.036, 6.081-6.086, 6.097-6.100.

님께서 주도하심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개인의 삶에 또 공동체의 삶에 죄, 포로됨, 상함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한다. 고백의 기도에는 은혜를 간구하는 찬양을 넣을 수 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와 같은 것이다. 용서의 선포는 하나님의 자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의 확신을 갖게 한다. 세례반에서 이 예배 순서를 인도함으로써, 우리는 세례의 은혜와 정결케 함,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으로의 부르심을 우리의 죄의 고백과 연결시킨다. 이들이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고백으로의 부름을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뒤에 다른 순서들을 더할 수 있다. "아버지께 영광을"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과 같은 찬양, 율법의 요약 또는 신실함으로의 부름, 세례식,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의 표시인 평화의 나눔과 같은 것이다.

W-3.03: 말씀

W-3.0301 : 말씀 선포의 신학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라" 말씀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요 1:14).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신다. 따라서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하고 확인하는 것은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며 주일 예배에선 필수적이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공예배에서 봉독할 성경 본문을 정할 책임이 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성경 본문을 정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경의 광범위한 내용과 전체 주제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성경 본문 선정은 교회력의 주기,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 지역 회중 내의 목회적 관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구집은 다양한 본문을 다루면서 보편 교회와 일관성있게 연결되게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공예배에서 사용할 성경책 종류를 정할 책임이 있다. 성경 본문은 예배 공동체가 사용하고 있는 공통의 언어로 읽어야 한다. 중요한 변화, 의역, 새로운 번역에 대해 회중에게 알려야 한다.

선포하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그러면서도 분별력있게 연구해야 하며, 매일 기도하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복음의 주제들을 신학적으로 묵상해야 하며, 개체교회의 상황에 민감해야 하며,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깊게 들어야 하며,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변함없이 순종해야 한다. 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제시한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찬양, 연극, 춤, 미술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

W-3.0301: 창 1:1-5; 시 19:1-14; 사 40:1-31; 55:10-11; 눅 4:16-21; 24:13-35; 요 1:1-18; 롬 10:8-17; 약 1:22-27; 히 1:1-4; 4:12-13;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3.19; 제 2 헬베티크 신앙고백 5.001-5.00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01-6.010, 6.055-6.058, 6.187-6.190; 소요리문답 7.002-7.003; 대요리문답 7.113-7.115; 7.265-7.270; 바르멘 신학선언 8.10-8.12; 1967년도 신앙고백 9.27-9.30, 9.49.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이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한다: 교회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세례식을 진행하거나 재확인하는 것, 교회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들이 그 응답이다. 하나님 백성들의 응답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말씀의 선포는 불완전하다.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그의 은혜를 받으며 그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한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며, 기도로 성령을 구해야 한다.

W-3.0302 : 조명을 위한 기도

조명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선포하고, 또 이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시도록 성령께 간구하는 기도다. 조명해 주시도록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세는 개혁 전통의 중요하고 구별되는 특징이다. 성경 봉독과 설교 전에 조명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며, 또 말씀 선포 뿐만 아니라 모든 봉독 전에 이 기도를 한다.

W-3.0303 : 성경

성경을 공적으로 읽을 때에는 본문의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읽어야 한다. 교회 강대상에 비치된 성경을 통해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과 무게감을 전달하며 성경 내용의 공동체적 특성을 보여주게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라도 성경 봉독할 수 있다. 집사는 복음 증거 사역을 맡고 있고 사역 장로는 말씀의 선포에 책임이 있으므로, 집사 또는 사역 장로가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 적절하다. 당회는 모든 성경 봉독자들이 이 중요한 사역을 잘 준비하도록 한다.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될 때, 개체교회는 이 말씀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이것이 개체교회의 역할이다. 이와 같이 들으려면, 기대감, 집중력, 상상력이 필요하다. 개체교회는 함께 성경을 읽거나, 인도자와 교대로 성경을 읽거나, 노래하듯 성경을 읽거나, 유인물이나 프로젝터 화면을 따라 읽으며 성경 봉독에 동참할 수 있다. 성경 봉독은 말로 응답함으로써 마무리된다. 성경 본문을 음악을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다.

W-3.0304: 음악으로 응답함

시편, 찬가, 성가, 알렐루야 송, 찬양, 기타 음악으로 성경 봉독 후에 응답할 수 있다. 첫번째 봉독에 대한 응답으로 시편을 찬양할 수 있으며, 이는 개체교회가 그 본문을 묵상하고 그에 기초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W-3.0305: 선포

예배 중에 봉독한 성경 본문에 기초해서, 설교는 부활하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복음의 선물과 부르심을 제시한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그를 더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준비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웃에게 복음을

W-3.0302: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005; 소요리문답 7.089; 대요리문답 7.114, 7.265.
W-3.030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16; 소요리문답 7.090; 대요리문답 7.267.
W-3.0305: 대 요리문답 7.268.

선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된다. 설교는 기도, 설교 후 찬양, 또는 제자로의 부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이므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일반적으로 설교한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그 외의 방법에는 찬양, 연극, 춤, 미술, 간증이 있다. 설교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예배 시간에 봉독한 성경 말씀을 조명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말씀의 선포를 위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때, 예배 인도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과 이들을 서로 연결해야 할 것이다.

W-3.0306 : 믿음의 확인

선포된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한다. 이 믿음의 확인 문구는 성경, 신경, 신앙고백문, 요리문답에서 가져오면 된다. 회중 찬양, 성가, 기타 음악을 통한 응답은 믿음의 확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때 개인이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세례나 세례의 재확인 때, 세례 예식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가장 초기의 범교회적인 신앙고백인 니케아 신경은 전통적으로 주의 만찬과 연관이 있다.

W-3.0307 : 세례와 그 제자도

세례식(W-3.0402-W-3.0408), 또 세례 언약과 관련된 기타 예배는 일반적으로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한다. 이 예배에는 신앙고백에 따른 세례의 재확인(W-4.0203), 새 교인 환영(W-4.0204), 사역을 위한 파송(W-4.03), 직제 사역을 위한 안수와 위임(W-4.04), 삶 또는 사역에서의 변화(W-4.05), 공동 행사의 기념, 결혼(W-4.06), 부활에의 증거(W-4.07)가 포함된다. 제자로의 부르심을 이 때 선언할 수 있다. 곧 예배자들이 세례받도록, 또는 세례의 약속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촉구할 수 있다.

W-3.0308 : 증보 기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증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성령의 탄식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기도는 한 사람의 인도자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인 전체 개체교회가 함께 하는 행위이다. "아멘"이나 기타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에 동참한다.

증보와 간구의 기도는 다음의 경우에 한다: 보편 교회와 지역 개체교회의 선교와 사역, 피조 세계에 대한 보호와 자원의 적절한 활용, 세계의 평화와 정의, 모든 국가의 지도자와 사람들, 가난하고 주리고 억압받는 자들, 지역 공동체 내의 구제와 화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치유와 온전함, 그 외의 특별한 필요. 성찬식 중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며 또는 성도들 중에서 기도를 인도할 수도 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음악을 통한 응답이나 상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예배 순서

W-3.0306: 고전 15:1-11; 빌 2:5-11; 골 1:15-20; 딤후전 3:16.

W-3.0307: 마 28:16-20.

W-3.0308: 요 3:16-17; 롬 8:26-27; 딤후전 2:1-7; 히 4:14-16; 벧전 2:4-10;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16-4.118;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218-5.22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14-6.115; 소요리문답 7.098-7.099; 대요리문답 7.288-7.297; 1967년도 신앙고백 9.50.

앞에서 하지 않았으면, 이 후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할 수 있다.

목사는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로 섬기도록 부름받았기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증보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집사는 구제 사역에 책임이 있고 사역 장로는 개체 교회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집사와 사역 장로가 이 기도를 인도하는 것 또한 적절하다. 그 외에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증보 기도를 인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W-3.0309: 헌금과 주의 만찬

십일조 및 헌금 봉헌(W-3.0411)과 주의 만찬 집례(W-3.0409-W-3.0414)는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실행한다. 이 행위들은 복음에서 선포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시이다. 주의 만찬이 없는 경우에, 봉헌을 한 후에 감사 및 헌신의 기도를 한다 (W-3.0415).

W-3.04: 성례전

W-3.0401 : 성례전 신학

성례전은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의 삶에 구현되고 입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례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서, 이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신다. 또한 이는 인간의 감사의 행위로서,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과 섬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성례전은 교회의 공동 예배의 맥락에서 물리적 표시이며 동시에 영적 선물이다. 여기에는 말씀과 행위가 포함되며, 이는 기도에 둘러싸여 있다. 성례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일상적인 것들, 곧 물, 빵, 포도주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사용한다. 개혁 전통은 세례와 주의 만찬-성체 또는 성찬이라고도 함-의 성례전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보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켜오셨음을 인정한다.

W-3.0402 : 세례의 신학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확정하는 표시이며 봉인이다. 예수는 그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 본인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성령을 보내사 기름 부으셨다. 사역하시는 중에 예수는 생명수의 선물을 주셨다. 예수는 그의 고난과 죽음의 세례를 통해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제자로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

W-3.0401: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3.21-3.2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66-4.06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49-6.153; 대요리문답 7.286-7.287.
W-3.0402: 창 1:2; 6:1-9:17; 17:1-14; 출 14:1-31; 사 43:1-4; 44:1-4; 55:1-3; 렘 31:31-34; 겔 36:25-27; 47:1-12; 암 5:21-24; 마 3:1-17; 28:16-20; 막 1:1-11; 10:35-40; 눅 3:1-22; 요 1:19-34; 3:1-5; 4:7-15; 7:37-38; 행 1:4-5; 2:37-41; 22:16; 롬 6:3-11; 고전 6:11; 10:1-4; 12:12-13; 고후 1:21-22; 갈 3:27-29; 엡 1:13-14; 2:11-22; 4:4-6; 5:14; 골 2:11-12; 딤후 3:4-7; 벧전 3:18-22; 계 7:13-17; 21:6; 22:1-5, 17;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3.21-3.2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69-4.074;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185-5.19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54-6.160; 소요리문답 7.094-7.095; 대요리문답 7.275-7.277; 1967년도 신앙고백 9.51.

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의 사명과 사역을 계속해 나가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권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의 선물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이다(롬 6:11).

세례의 성례전은 깊은 신학적 의미를 품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 용서, 정결케 됨, 새로워짐, 성령의 은사,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됨, 하나님 통치의 표지가 그것이다. 개혁신론은 세례를 하나님 언약의 표지로 이해하고 있다. 세례 시의 물은 창조, 홍수, 출애굽 때의 물과 연결된다. 따라서 세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 죄사함의 능력,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구속의 약속과 연결시킨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은혜의 언약의 표지인 할례와 마찬가지로 세례는 하나님이 교회와 맺은 은혜의 언약의 표지이다. 이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신다. 또한 세례는 정의와 공의가 강 같이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을 상징한다.

세례는 말씀이 선포한 것, 곧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형상화하고 인 증한다. 동시에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그 은혜에 응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개, 신실함, 제자도로 부르신다. 세례를 통해 성령은 교회에 정체성을 부여하며 세상을 섬기도록 교회를 파송한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되며 사람들과 서로 하나되며 모든 시대와 장소의 교회와 하나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 신분, 성별의 장벽은 무너지며, 우리는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화해를 찾아가도록 부름 받는다.

신자와 그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에 포함된다. 신자의 세례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감사의 응답을 요구한다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 어린이의 세례는 그들이 믿음으로 대답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불드셨다는 진리를 증거한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증거는 하나의 같은 성례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신실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 따라서 세례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의 선물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시간을 예배 시에 자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믿음의 고백 시간; 다른 이의 세례식에 참여할 때; 교회에 등록하거나 떠날 때; 안수식, 위임식, 파송식 때;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새로운 삶의 모습은 깊은 헌신, 훈련된 분별, 성장하는 믿음의 삶이다. 세례 받을 때에 또 세례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며, 이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갈 때에 마주하게 될 어려움들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강건하게 한다.

세례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일반적으로 주일에 진행한다. 언약 공동체가 세례식에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속하게 된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증거한다. 세례를 공 예배 시간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척교회의 대표로 한 명 이상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몸이 하나인 것과 같이 세례도 하나다. 미국장로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

령의 이름으로 물을 이용하여 집례된 다른 기독교 교단의 모든 세례를 인정한다.

W-3.0403: 세례에 대한 책임

세례는 당회가 승인해야 하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가 집례해야 한다. 세례에 대한 당회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부모-또는 부모의 책임을 행사하는 이들-가 아이들이 세례를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늦게 받게 하지 않도록 격려함; 새 신자가 세례 받도록 권면함; 세례 대상자나 그 부모를 심사하고 성례전의 중요성을 교육함; 세례 받은 이를 개체교회의 구성원으로 등록함; 이들이 세상에서 세례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교육함. 전체 회중은 세례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보편 교회를 대신하여 이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 당회는 세례 받은 이들이나 그 부모를 위해 개체교회의 구성원 중에서 후견인이나 조연자를 지명할 수 있다.

어린 아이가 세례를 받는 경우에는 적어도 부모 -또는 부모의 책임을 행사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세례를 진행하는 회중, 곧 기독교 교회의 활동 교인이어야 할 것이다. 부모가 다른 교회의 활동 교인인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당회는 이를 검토할 수 있다. 당회가 이 세례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당회는 그 다른 교회의 공의회와 의사소통해야 하며 성례전을 집전할 시기를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자녀가 세례를 받게 한 이들은 그들의 자녀가 자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활동 교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 자녀를 양육하고 인도할 것을 약속한다.

공의회는 특정한 경우에 교회 외의 장소, 곧 병원, 교도소, 학교, 군 기지, 기타 사역 장소에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가 세례를 집전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는 새롭게 세례 받은 사람의 이름이 공의회에 해당 명부에 기록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G-3.02, G-3.03).

W-3.0404: 세례 대상자 소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세례의 성례전을 시작한다. 다른 성경 구절을 사역 장로, 개체교회의 구성원, 또는 세례 증인이 읽을 수 있다. 당회를 대표하여 사역 장로가 각각의 세례 대상자를 소개한다. 자녀가 세례를 받게 하거나 본인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들은 성례전을 받고자 하는 자신들의 의도를 설명한다. 부모, 후견인(후견인이 존재하는 경우), 개체교회는 세례를 받으려는 이들을 지지하고 양육할 것을 선서한다. 세례식에는 아무도 혼자 오지 않는다. 가족이나 친구가 기뻐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한다.

W-3.0405: 믿음의 고백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들의 부모는 악을 거부하고, 우리의 주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 믿음을 고백하고 이에 따라 세례를 받는 이들은 교회의 예배와 사명에 적극적으로 또 책임감 있게 참여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선포한다. 초대 교회에서 세례를 확정할 때 사용했던 사도신경으로 그들은 회중과 함께 그들의 믿음을 고백한다.

W-3.0406: 세례 전 감사 기도

세례를 집전하려는 곳에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이끈다. 지난 역사에 걸쳐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대해 신실하셨음에 대해 감사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화해의 행위를 찬양하고, 성령께서 세례에 임하시라 권능을 베푸시고 죄로부터 이끌어내사 다시 태어나게 하시며 교회가 신실하게 하시도록 간구한다.

W-3.0407: 세례의 집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물이 보이게, 그러면서도 물을 적절하게 사용해, 각 사람의 세례명이나 이름을 부르며, 이와 같이 말을 해야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피세례자의 이름]에게 세례를 주노라"(마 28:19). 세례에 사용할 물은 그 지역의 물이어야 할 것이며, 세례수를 손으로 바르거나, 물을 뿌릴 수도 있고, 물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다른 행위들, 곧 손을 얹는다거나 기쁨으로 안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주는 핵심적인 행위를 가리우면 결코 안 된다.

W-3.0408: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임

새롭게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기뻐하며 받아들인다. 적절한 선물을 줄 수 있다. 양초(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함)나 세례 예복(그리스도로 옷입었다는 의미)과 같은 선물이다. 예배 순서 앞에서 하지 않았으면, 이 때 그리스도의 평화를 할 수 있다.

교회는 단 한번 진행되는 세례의 성례전, 또 반복해서 진행되는 주의 만찬의 성례전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비로 정결케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신다. 이 고대의 입문 과정에는 두 성례전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에, 세례 이후에 주의 만찬을 진행하는 것도 적절하다. 방금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W-3.0409: 주의 만찬의 신학

주의 만찬 (또는 성찬식)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이자 봉인이다. 이 땅에서 살며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으셨다. 곧 일상의 저녁 식사, 기적적인 연회,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 기념식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다. 참 포도나무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지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빵과 포도주를 드셨다. 그는 빵과 포도주가 각각 그의 몸과 피, 곧 새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했으며 이 만찬을 계속

W-3.0409: 출 12:1-28; 16:1-36; 시 107:1-3; 사 25:6-9; 43:5-7; 55:1-3; 마 5:23-24; 8:11; 14:13-21; 15:32-39; 22:1-14; 26:17-29; 막 6:30-44; 8:1-10; 14:12-25; 눅 4:18-21; 5:27-32; 7:36-50; 9:10-17; 10:38-42; 14:15-24; 22:7-23; 24:13-43; 요 2:1-13; 5:1; 6:1-13; 7:1-39; 10:22-42; 12:1-3; 13:1-35; 21:1-14; 행 1:1-11; 2:42-47; 롬 14:1-23; 고전 8:1-13; 10:14-33; 11:17-34; 15:20-28; 갈 3:27-29; 었 1:22-23; 빌 2:5-11; 골 3:1-4; 살전 4:16-17; 약 2:1-7, 14-17; 요일 3:16-18; 계 19:9;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3.21-3.2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75-4.082; 제 2 헬베틱신앙고백 5.193-5.21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61-6.168; 소요리문답 7.096-7.097; 대요리문답 7.278-7.285; 1967년도 신앙고백 9.52.

함으로써 그를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떡을 떼셨다. 제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기도, 공동 식사에 지속적으로 헌신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빵과 잔을 나눌 때, "많은 우리는 한 몸이 된다"(고전 10:17).

주의 만찬의 성례전은 신학적 의미가 풍성한 연회를 베푸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성부 하나님께 감사 드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 성령님을 모셔 들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통함, 하나님 나라에서의 식사. 개혁 전통은 주의 만찬을 하나님 언약의 표징으로 이해하고 있다. 주의 만찬의 빵은 유월절의 빵, 광야에서의 만나와 연결된다. 따라서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대대로 이어져 온 하나님의 섭리의 돌보심과 우리를 연결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감사를 나타내며 올렸던 제물과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은 찬양의 제물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주의 만찬은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초청하고 계심을 의미한다. 또 주의 만찬은 우리가 배불리 먹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부르심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영원히 죽음을 이기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주의 만찬은 말씀이 선포한 것, 곧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형상화하고 봉인한다. 동시에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그 은혜에 응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롭고, 신실하게, 또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신다. 주의 만찬을 통해 성령은 교회의 정체성을 늘 새롭게 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 교회를 파송한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위해 모이면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임재로 이끌어 가시고, 모든 시간과 장소의 교회와 하나가 되신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실한 자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우리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하나님, 성도들,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다시 다짐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기회는 이를 받을 만한 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믿음과 회개와 사랑으로 나아왔을 때 주어지는 특권이다. 주의 만찬의 식탁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연령이나 이해여부와 상관없이 빵과 잔을 받는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자 하나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우에, 세례 준비와 세례에의 초청을 은혜로 연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예배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화해함으로써,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한다. 의심이 드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할 수 있도록 주의 만찬에 나아올 수 있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가운데 주일 예배에서 말씀 선포 후에 정기적으로 기념해야 한다. 지역 교회의 상황 때문에 주의 만찬의 횟수를 좀더 줄여서 해야 하는 경우, 당회는 이 주의 만찬 일정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분기별 1회 이하로는 할 수 없다. 주의 만찬을 매주마다 하지 않는 경우, 주의 만찬을 하는 주의 최소 일주일 전에 공지를 미리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만찬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한다.

W-3.0410: 주의 만찬에 대한 책임

주의 만찬은 당회가 승인해야 하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가 집례해야 한다. 목회자가 없는 경우에, 사역 장로가 주의 만찬을 집례하도록 노회가 승인하고 사역 장로를 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G-3.0301b). 당회는 주일 예배 외의 사역에서도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예식, 안수식 및 위임식, 치유 예배, 심방 사역, 부활을 증거하는 장례 예식과 같은 사역이다. 이 모든 사역에서 말씀을 봉독하고 선포해야 한다. 주의 만찬이 공예배와는 별개로 진행된다면, 개체교회의 한 두 사람이 회중을 대표하여 참여해야 한다.

공의회는 어떤 경우에 교회 외의 장소, 곧 병원, 교도소, 학교, 군 기지, 기타 사역 장소와 같은 곳에서 주의 만찬을 집례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G-3.02, G-3.03).

W-3.0411: 우리의 삶을 드림¹⁸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과 마주하게 된다. 그의 은혜로 자유로워진 자들로서 우리는 감사로 응답한다. 곧 그에게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 은사, 우리의 물질을 드린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응답하는 기회가 모든 예배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청지기 자세를 표현하며, 이웃에 대한 우리의 돌봄을 보여주며,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며,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행위로서 십일조와 헌금을 한다. 가난한 자를 위한 음식의 헌물도 이때 받는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위한 성찬단을 준비할 수 있다. 이 모든 헌금과 헌물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기도와 함께 받는다. 이 기도를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도 있다. 사역 장로와 집사가 교회 자원에 대한 청지기직을 맡고 있고 가난한 자를 위한 사역을 인도하고 있으므로, 사역 장로나 집사가 이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해를 나누는 시간을 앞 순서에서 갖지 않았으면 이때 이를 해도 좋다.

W-3.0412: 성찬식 기도

헌금을 하고 성찬단을 준비한 후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배자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인도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는 성찬단에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인도한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깊은 돌봄,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주의 만찬 당일의 특별한 축복에 대해 감사함. 예수의 탄생, 삶,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예수의 성만찬 제정-주의 만찬으로 초대할 때, 또는 빵을 떼 때 하지 않았다면-을 기억함;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로 예배자들을 이끌어 가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그들을 양육하며, 모든 곳의 성도들과 교회와 교통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들을 사명 가운데 세상으로 보내시

W-3.0411: 창 1:28-31; 2:15-17; 레 23:22; 민 18:21-29; 신 28:1-12; 대상 29:10-22; 대하 24:8-14; 말 3:8-10; 행 2:43-47; 4:32-37; 롬 12:1-8; 고전 12; 16:1-2; 고후 8:1-15; 9:6-15; 엡 4:1-16; 딤후 5:17-18; 약 2:1-8; 요삼 5-8;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3.14;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110-5.123, 5.21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87-6.093, 6.146-6.148.

도록 간구함.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마친다. "거룩, 거룩, 거룩,"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아멘"과 같은 송영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나서 주기도문을 한다.

W-3.0413: 떡을 떤다

성찬단에서 사람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는 떡을 떤 후 포도주를 따른다. 또는 미리 채운 잔을 들어올린다. 이때 성경 구절을 같이 언급할 수도 있고 아무 말하지 않고 집전할 수 있다. 빵 한 덩어리와 잔 하나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과 성례전의 공동체성을 표현한다. 주의 만찬에 사용하는 빵은 개체교회의 문화에 익숙한 것이어야 하며, 빵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개체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주의 만찬에 포도주를 사용할 것인지를 당회가 결정할 것이다. 포도주를 사용할 때, 알코올 성분이 없는 것도 같이 제공해야 하며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W-3.0414: 성찬식

빵과 잔은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눈다. 예배자들이 성찬단 주변으로 모일 수도 있고, 예배자들이 성찬위원 앞으로 나올 수도 있으며, 예배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빵과 잔을 받을 수도 있다. 빵을 떤 후 사람의 손에 놓아줄 수 있으며, 나눠주기 위해 미리 잘라둔 빵 조각을 줄 수도 있다. 하나의 잔으로 같이 마실 수도 있고, 개별 잔을 받을 수도 있으며, 개별적으로 받은 빵을 잔에 찍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역 장로, 집사,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가 빵과 잔을 나누며, 당회는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이를 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빵과 잔을 나누는 동안, 예배자는 찬양할 수 있으며, 음악이 연주될 수 있으며, 적절한 성경 구절이 낭독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묵상기도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빵과 잔을 받고나면, 남은 성찬물은 성찬단 위에 올려 놓는다. 이후 기도를 하는데, 성례전이라는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한다.

예배가 끝난 후 가능하면 빨리 (대개 당일), 두 명 이상의 직제 사역자들이 빵과 잔을 예배에 오지 못한 성도들, 외출하지 못하는 성도들, 입원하고 있는 성도들과 나눌 수 있다. 이 성찬 확대 사역을 하는 이들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신학, 목회, 예식과 관련해 필요한 사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말씀과 성례전의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나서, 빵과 잔은 성찬단에서 치우고 당회가 승인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폐기하도록 한다. 이는 성례전에 대한 개혁 전통의 이해와 선한 청지기직의 원칙에 일치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남은 것을 먹거나 성찬 요소들을 땅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이는 완결될 수 있다.

W-3.0415: 주의 만찬을 하지 않는 경우

주의 만찬은 주일 예배, 곧 말씀과 성례전의 예배에 필수적인 요소다. 교회의 상황과 당회의 결정으로 주의 만찬이 주일 예배에서 생략되는 경우, 예배는 헌금 기도, 감사와 헌신의 기도의 순서로 이어지고 주기도문으로 마친다.

W-3.05: 파송

W-3.0501: 결단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우리는 제자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결단의 행위를 통해 응답한다. 이러한 결단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파송하는 폐회 찬양, 시편, 영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표현하는 창의적 또는 상징적 행위; 세례의 성례전을 받거나 세례 언약을 재확인하려는 의도의 선언; 복음화, 구제, 정의, 화해의 사역에 대한 파송; 교회를 떠나는 성도에 대한 작별 인사; 교회의 사명과 관련된 초청 또는 광고.

W-3.0502: 축도와 권면

주일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함으로써 끝난다. 제사장적 축도나 사도적 축복이 그것이다. 이 축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표현이며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의 연장이다.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선포한다.

다른 이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 권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집사가 증거와 섬김의 사역에 책임이 있고, 사역 장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지 살필 책임이 있으므로, 집사나 사역 장로가 권면을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W-3.0503: 세상에서의 섬김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섬김은 주일 예배가 마무리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나아간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 목적, 곧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일을 추구한다.

제 4 장 목회적 특별 예배

W-4.01: 세례에 기초한 예배, 세례를 완성하는 예배

W-4.0101: 세례로부터 비롯됨

하나님께서서는 은혜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는 이에 감사함으로 응답한다. 이 행함과 응답의 표시와 봉인인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토대가 된다. 다음에 나오는 목회적 특별 예배는 세례의 언약에 기초하며 세례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주일 예배 중에 말씀의 선포가 있는 후 하거나, 따로 공예배로 할 수 있다. 세례는 교회의 세례반이나 세례장에서 한다.

W-4.02: 세례 언약의 재확인

W-4.0201: 세례 받은 이를 목양함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인침을 받으며, 성령에 의해 봉인되고, 주의 만찬에서 환영을 받으며,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섬김의 삶을 위해 택하심을 받는다. 세례를 받은 이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제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 노력할 때, 이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개체교회 전체의 책임이며, 구체적으로 당회가 그 책임을 진다. 어린이가 세례를 받을 때, 당회는 이를 위해 부모-양측 혹은 한 명, 혹은 보호자로서 책임을 행사하는 사람-를 준비시키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는, 당회는 그 사람이 기독교 교육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회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W-4.0202: 주의 만찬 참여를 격려함

주의 만찬에 참여한 적이 없지만 세례를 받은 어린이가 성례전을 받기를 원할 때, 그들을 주의 만찬에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한다. 그리고 당회는 이들이 성례전의 의미와 신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W-4.0203: 공적 고백

어린이일 때 세례받은 이가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할 준비가 되었고 교회 생활의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종종 "입교"라고 불림), 당회는 이 신앙 고백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앙 교육을 받고, 당회의 심사를 받고, 활동 교인으로 받아들여지며, 공예배에서 회중 앞에서 소개되어야 한다. 이 때, 이들은 악을 포기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겠다는 세례의 서약을 재확인하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의 예배, 삶, 운영, 사명에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참여할 의지를 밝힌다. 이러한 때, 모든 예배 참석자들이 세례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W-4.0204: 새 교인

새 교인이 되려면,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거나 신앙을 재확인하거나 이명 증서를 제출한다. 당회는 교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재)확인하려는 신앙에 대해 살펴볼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당회는 그들을 심사하고 교인으로 받아들인 후, 예배 시간에 그들을 소개한다. 공적인 환영의 일환으로, 이미 세례받은 이들이 세례 언약을 다시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의 예배, 교회 생활, 교회 운영, 교회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또 책임감 있게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에, 모든 예배 참석자들이 세례 언약을 다시 다짐하는 것도 적절하다.

W-4.0205: 새롭게 되며 다시 다짐함

믿는 이의 삶과 개체교회의 삶 안에는 새롭게 깨닫고 새로워지며 다짐하는 특별한 기회들이 있다. 세례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중요한 순간들과 성령의 감동을 사람들이 당회와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이 공예배에서 인정되고 확정된다.

W-4.03: 섬김을 위한 파송

W-4.0301: 그리스도인의 섬김

세례를 받음으로써, 각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으며 또 세상을 섬기도록 보냄 받는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교회와 세상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활동을 섬기도록 부름받는다: 회중 안에서 교사, 이사, 음악 담당자, 위원회 일원으로 사역하도록; 회중을 대표하여 지역 사회 내의 개체교회의 사역을 하도록; 교단 공의회나 범교회적 공의회에서 일하도록; 그리고 교단 밖에서 복음화, 긍휼, 정의와 평화, 피조물 돌봄의 사역을 하는 이들과 협력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이러한 종류의 소명은 주일 예배에서 말씀 선포에 대한 응답으로 혹은 파송 행위로 공식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다른 예배를 통해 이를 공식화할 수도 있다.

W-4.04: 안수, 위임, 파송

W-4.0401: 사역으로 부르심

세례를 받음으로써, 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도록 부르심 받는다. 하나님은 특정한 역할을 하도록 회중에서 몇몇 사람을 부르시어, 하나님 전체 백성의 사역이 번창하게 하신다. 교회는 교회의 의견을 듣고 하나님께서 집사, 사역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로 섬기도록 부르신 이들을 안수식에서 기도와 안수로 택하여 세운다. 교회는 이전에 집사, 사역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로 안수받았으며 이제 다시 이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안수식에서 기도로 각 자리에 세운다. 파송식에서 교회는 교회 내 다른 형태의 사역들을 승인한다. 여기에는 제한된 목회사역을 위해 파송받는 사역장로, 공인 기독교 교육사, 다른 형태의 섬김으로 공인받는 이들이 있다.

W-4.0402: 안수, 위임, 파송 예식의 기본 요건

안수식, 임명식, 파송식은 주일 예배에서 말씀의 선포에 대한 응답으로 할 수 있다. 안수식, 위임식, 파송식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사, 교회의 사명과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또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는 특별 예배에서 할 수도 있다. 이 예배에서 주의 만찬을 거행할 수도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의 안수식이나 위임식은 상당수의 노회원이 참석 가능한 시간에 해야 한다.

W-4.0403: 예배 순서

안수식, 위임식, 파송식은 그 초점을 그리스도에 두어야 하며, 또 교회가 사명과 사역을 수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과 책임에 둔다. 설교 후에, 해당 공의회 의장(또는 의장 대리인)이 안수, 위임, 파송을 받는 사역의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안수, 위임, 파송 받는 이들은 세례반 앞에 모인다. 의장(혹은 대리인)이 그들에게 헌법 질문을 묻는다(W-4.0404 참고). 사역장로 한 명이 이에 상응하는 질문을 회중에게 묻는다. 모든 질문에 예라고 답을 했다면, 안수 받을 이들은 안수와 안수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무릎을 꿇는다. (노회의 안수 위원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 안수식에서 안수한다. 해당 위원회 의장은 안수를 위해 다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와 사역장로를 초청할 수 있다. 당회 구성원은 사역장로와 집사의 안수식에서 안수한다. 당회는 안수를 위해 다른 사역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를 초청할 수 있다. 각 직책에 대해서 한번만 안수하기에, 안수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이전에 이미 안수 받은 사람은, 일어설 수 있는 경우, 회중과 더불어 일어서서 위임 기도를 받는다. 새로 위임 받았거나 파송받은 사람에게 축복의 표시와 상징을 수여할 수 있다. 안수나 위임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의장은 안수, 위임, 파송 선언을 한다. 당회나 노회의 구성원은 새로 안수, 위임, 파송된 이(들)를 환영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의 위임식의 경우, 신실한 사역과 상호 관계에 대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와 회중에게 권면할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가 안수나 위임받을 때, 막 안수나 위임받은 사람이 그 예배에서 주의 만찬을 집전하는 것은 적합하다. 또 이 사람은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를 할 수도 있다. 사역장로나 집사가 안수받거나 임직받을 때, 이들 중 한 명 이상이 예배 마지막에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W-4.0404: 안수와 위임 관련 헌법 질문

안수, 위임, 파송받는 이들이 속한 공의회 의장은 이들이 회중을 바라보고 다음의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 a. 당신은 당신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가 만유의 주요 교회의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습니까?
- b. 당신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성령에 의해 쓰여졌고,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하고도 권위 있는 증거이며, 또 당신에게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 c. 당신은 우리 교단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개혁주의 신앙의 본질적인 교리가 성경이 우리가 믿고 행하도록 하는 것들을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십니까? 또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이러한 신앙고백서를 지침으로 삼고 따르시겠습니까?

- d. 당신은 성경의 권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사역을 완수하며, 계속해서 신앙고백서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 e. 당신은 우리 교단의 운영 절차를 따르며 교단의 규율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사역 동료들과 친구가 되며, 그들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명령에 따르시겠습니까?
- f. 당신의 삶 안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화해를 위해 일하시겠습니까?
- g.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 h. 당신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열정, 지성, 상상력,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 i.
 - (1) (사역장로를 향해) 당신은 성도들이 예배하도록 하며,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이 봉사하게 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신실한 사역 장로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운영과 권징에 참여하고, 교단의 공의회에서 일하며,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 (2) (집사를 향해) 당신은 신실한 집사가 되어 사랑을 가르치고, 관심을 갖게 하고, 친구가 없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 (3)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를 향해) 당신은 신실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가 되어 말씀과 성례전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돌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운영과 권징에 참여하고 교단의 공의회에서 일하며,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 (4) (평신도 목회자[파송 사역 장로라고도 불림]를 향해서) 당신은 이 파송에 걸맞게 신실한 사역장로가 되어,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돌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 (5) (공인 기독교 교육자를 향해) 당신은 신실한 공인 기독교 교육자가 되어, 신앙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돌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시겠습니까?

사역장로나 집사의 임직식에서: 임직을 받는 사람(들)이 헌법 질문에 예라고 답한 후, 사역장로 한 명이 선출된 사역장로들이나 집사들과 함께 회중을 마주하고 다음의 질문들을 회중에게 해야 한다:

- a. 우리 교인들은 [이름을 언급함]을, 회중의 의견을 듣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할 사역장로 혹은 집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 b. 우리는 홀로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들이 우리를 인도할 때 따를 것을 동의합니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의 위임식에서: 위임받는 사람(들)이 헌법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후, 한 사역장로는 위임받은 (부)목사와 함께 회중을 마주하고 다음의 질문을 회중에게 해야 한다:

- a. 우리 교인들은 [이름을 언급함]을, 회중의 의견을 듣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할 (부)목사로 받아들일겠습니까?
- b. 우리는 홀로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을 격려하며,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들이 우리를 인도할 때 따를 것을 동의합니까?
- c. 이들이 우리 중에서 사역할 때, 이들에게 공정하게 급여를 지급하고, 복지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까? 곤경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기쁨을 나눌 것을 약속합니까? 우리는 이들이 설교하는 말씀을 경청하고, 이들의 목회적 돌봄을 기쁘게 받고,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순종하려고 힘쓸 때에 이들의 권위를 존중할 것입니까?

W-4.05: 변화를 기념하며

W-4.0501: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각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변화, 계절, 시련, 기쁨을 겪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지속적으로 돌보실 것을 세례를 통해 확신을 얻는다. 사역의 변화와 관련된 예배는 이러한 은혜를 증거하며, 예배자들이 감사, 지원, 관심을 표현하게 한다.

W-4.0502: 떠나는 교인

떠나는 교인이 있음을 알리는 것은 주일 예배 안에서 말씀 선포에 대한 응답이나 파송으로 이루어진다. 예배는 떠나는 교인을 위한 감사기도와 중보기도를 포함할 수 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W-4.0503: 섬김의 종료

특정 사람들의 소명과 은사에 감사하며, 그들의 섬김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섬김이 집사, 사역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 같은 안수 사역이든지, 특별한 제자도의 역할을 했든지, 교회, 공동체, 세상 속 다른 형태의 사역이든지 그러하다. 이러한 인정은 주일 예배에서 말씀 선포에 대한 응답으로 혹은 파송 행위로, 혹은 다른 예배에서 이루어진다. 이 예배에는 사역을 종결하는 이를 위한 감사기도와 중보기도를 포함된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다른 중요한 공적이나 업적을 예배 중에 기념할 수 있다.

W-4.0504: 문책과 복권

교회는 교회의 안녕을 위하여, 구속과 화해의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권위의 표현으로서의 권징을 행한다. 문책과 복권의 형식은 *규례서* 교회 권징 편에 제시되어 있다. 문책과 복권은 기도와 목회적 관심 속에서, 적절한 교회 공동체나 교회 공의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W-4.06: 결혼 언약

W-4.0601: 그리스도인의 결혼

세례를 통해서 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언약을 맺게 된다. 결혼은 하나님이 전체 인류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결혼은 두 사람,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겠다는 고유한 약속이다. 두 사람을 연합시키는 희생적인 사랑은 이들이 교회 그리고 더 넓은 공동체의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한다. 민법상으로 결혼은 결혼한 두 사람이 사회 안에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계약이다. 개혁 전통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언약이기도 하다. 이를 신앙 공동체가 공적으로 증언하고 인정한다.

W-4.0602: 결혼 준비

만약 결혼하고자 하는 지역의 민법상 관할권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결혼하려는 두 사람은 미국장로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에게 기독교 결혼 예식의 집례를 요청할 수 있다. 결혼 사실을 기록할 때, 해당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는 민사 관할권의 대리인으로 행동할 권한이 있지만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결혼 예식을 요청한 두 사람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는 이 두 사람이 결혼 언약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고, 또 이 언약의 가치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헌신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이 두 사람의 요청에 동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해당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는 결혼 예식을 위해 교회 건물이나 부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는 당회에 조언을 구할 수 있다.

W-4.0603: 결혼 예식 순서

결혼 예식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와 당회의 감독 하에 결혼 언약과 개혁 예배 형식에 적절한 방식으로 거행되어야 한다. (W-2.03). 결혼 예식에서 상호 서약을 주고받음으로써,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이루어진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는 이 두 사람의 서약의 증인이 되며 이 결합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한다. 신앙 공동체는 이 두 사람이 그들의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지지하기로 서원한다. 이 두 사람, 이들을 지지하는 공동체들, 신실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다.

W-4.0604: 사회법에 따른 결혼을 인정하는 일

만일 두 사람이 요청한다면, 사회법에 따른 결혼을 인정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를 확증하는 예배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이 이미 일반 사회법에 따라 결혼했다는 사실을 그 예식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이 예식은 기독교 결혼 예식과 비슷할 것이다.

W-4.0605: 어떤 것도 강요해서는 안 됨

여기에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나 당회가 그들의 성령을 통한 분별과 하나님 말씀에 대

한 그들의 이해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결혼 예식에 대해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예식을 거행하도록, 혹은 당회가 해당 결혼 예식을 위한 교회 건물 사용을 허가하도록 그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W-4.07: 죽음과 부활

W-4.0701: 부활에 대한 증거

세례를 통하여 각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약속 받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을 세례의 완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죽음을 마주하여,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과 부활의 소망을 슬픔과 기쁨으로 확인한다. 우리는 홀로 슬퍼하지 않으며, 성령의 권능과 신앙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는다.

W-4.0702: 장례식 방침

당회는 장례 예식에 관한 일반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하고, 품위있고, 선한 청지기직을 표현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증거하고,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장례식을 할 수 있다.

W-4.0703: 장례 예식의 요건

부활을 증거하는 예식은 개체교회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공동체의 신앙, 삶, 소망이 지속됨을 보여준다.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장소에서 장례 예식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자택, 장례식장, 화장터, 무덤가에서 장례 예식을 할 수도 있다. 이 예식은 주중에 할 수도 있지만, 당회의 승인이 있다면 주일 예배의 일부로서 할 수도 있다. 이 예식은 시신을 매장하기 전이나 후에 할 수 있다. 이 예식은 그 예식이 진행될 개체교회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인도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재량에 따라, 예식을 인도하는 데 참여하도록 다른 이들을 초대할 수도 있다.

W-4.0704: 장례 예식 순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사망했을 경우, 그 시신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거나, 의료 목적으로 기증하거나, 또는 책임감 있고 경건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통 사망한 이의 가족, 공동체 구성원, 교회의 목사(들)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타 예배 행위를 하면서 시신 안치 장소까지 사망자의 시신과 동행한다.

안치 장소로 그 시신을 운구하는 과정의 일부로, 혹은 이 과정의 전후로, 보다 온전한 예배 예식을 할 수 있다. 예식은 성경구절로 시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산 소망과 부활에 대해 증거한다. 예배 참석자들은 부활, 영생, 성도의 교통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찬송가, 시편, 영가를 부를 수 있다. 치유와 화해를 위해 신앙 고백과 죄사함의 행위를 포함할 수도 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도록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한다. 이후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다. 이후에 기도를 드린다.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에 대해, 복음의 약속에 대

해, 고인의 삶과 증언 사역에 대해, 성령의 위로에 대해, 신앙 공동체가 함께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슬픔에 잠긴 이들, 유족을 돌보는 이들, 고인의 죽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올린다. 상실의 시간에 은혜와 믿음을 주시도록 구한다. (주의 만찬 예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주기도문으로 끝맺는다. 당회의 승인이 있다면 주의 만찬을 거행할 수도 있다. 고인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탁하고, 고인의 시신이 다루어질 다음 장소로 보내며(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석자들을 돌려 보내면서 예식을 마친다.

관이나 유골함은 세례식에서 그리스도로 옷입었음을 상징하는 천으로 덮을 수 있다. 예식은 세례반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만일 부활절 양초를 사용하는 것이 개체교회의 관행이라면, 이를 관 주위에 놓을 수 있다. 음악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교회의 신앙을 표현한다. 꽃과 기타 장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온전함과 단순함을 보여준다. 신앙 공동체와 그 문화적 맥락에서 친숙한 기타 행위를 예배에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동교회 예식, 민간 예식, 군대 예식은 별도로 치루어야 한다.

제 5 장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

W-5.01: 예배와 개인의 삶

W-5.0101: 개인의 삶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공예배와 섬김 그리고 개인적인 헌신과 제자도로 응답한다. 개인의 삶과 공예배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독교 예배에서 시작된다. 예배에서 우리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제자로서의 소명을 발견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예배로 흘러 들어간다.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는 매일의 기도 훈련, 제자 훈련, 가정 예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과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한다. 우리가 날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형성해가고, 성령은 능력을 부어주신다.

W-5.0102: 일상의 삶에서의 기도

기도의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응답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꾸준한 기도의 삶이다. 하루하루 제자로서 살아가며 마주하는 도전들로 말미암아 매일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와 대화하고 교통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활짝 여는 것이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과 의식적인 대화, 주의를 기울이며 기다리는 침묵, 성경 묵상, 예배서나 묵상집이나 시각 예술의 사용, 찬송이나 춤이나 노동이나 신체 노동, 교단의 주중 예배 형식(W-5.0202)을 개인적인 신앙의 실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기도는 공적인 증언과 항거, 긍휼의 행동, 기타 형태의 규율에 따른 섬김을 통해 행동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기도는 과제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 오는 영감과 강인함을 끌어내는 기회이다. 기도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은사와 인도를 구하는 방식이다. 기도는 일평생 가꾸고 실천해야 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W-5.0103: 그 외의 제자도 실천 사항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 안식일 준수, 성경공부, 묵상과 행동, 금식과 잔치, 청지기직과 자기 봉헌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 이러한 실천사항들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돕는다.

W-5.0101: 엡 4:15; 뱀후 3:18.

W-5.0102: 시 119; 130; 마 6:5-14; 눅 11:1-13; 롬 8:26-27; 12:12; 고전 12-14; 살전 5:17; 웨스트민스터 6.117.

W-5.0103: 창 2:1-3; 출 20:8-11; 신 5:12-15; 고전 4:1-2; 벧전 4:10; 히 4:12; 하이델베르크. 4.103; 제 2 헬베타 신앙 고백 5.223-5.226, 5.227-5.23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17-6.119; 소요리문답 7.057- 7.062; 대요리문답 7.225-7.231.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배, 쉼, 회복을 위한 시간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이다. 초대 교회 시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혹은 일요일)에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왔다. 한 주의 첫 날로서, 주일은 제자로 사는 우리의 삶을 빚어낸다. 그러므로 주일은 공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이며, 섬김, 증거, 긍휼의 사역에 참여하는 날이고, 쉼과 회복의 시간이다. 주일에 일해야만 하는 이들에게는 주중에 안식일을 지킬 방식을 찾아보도록 권유한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삶에서 의미, 방향, 위로, 도전을 찾는다. 성경으로 할 수 있는 정기적인 훈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말씀 읽기, 성경을 이용하여 기도하기, 주석을 공부하기, 주요 성경구절을 암송하기,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항상 성령의 조명과 신앙 공동체의 도움에 의지하며,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읽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금식과 잔치는 애도와 축하의 고대적인 표현방식이다. 교회력의 축일과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의 역사 속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는 금식과 잔치의 주기를 나타낸다. 세계, 국가, 공동체, 개인의 삶에서의 사건들은 감사, 애도, 회개, 항의의 행위를 요구할 수도 있다.

청지기직과 자기 희생의 훈련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소하고, 관대하고, 환대를 베풀며, 긍휼히 여기고, 피조물을 돌보는 삶을 살도록 부름 받는다. 십일조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과 자기 헌신의 주된 실천이다. 우리는 물질, 영적 은사, 시간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W-5.0104 : 가정 예배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는데, 특히 함께 사는 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하다. 가정 예배는 개혁교회 전통 내에서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중요한 관행으로 신앙 교육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가정 예배나 가족 예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안식을 누리며 매일 기도하기;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성경 암송; 식전 기도; 찬송가, 시편, 영가 부르기; 다른 이들에게 주고 나누며 그들을 섬기는 일. 가정이나 가족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체교회가 그들을 목양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한다.

가정 예배는 주의 날을 기억하고 고대하며, 정해진 성경 구절을 연구하고, 세례와 주의 만찬의 성례전을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준다.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같은 기독교력의 절기 또한 가정 예배의 형태와 의미에 영향을 준다. 가정이라는 환경 안에서의 예배에서 생일, 세례일, 기타 중요한 기념일을 축하할 수 있으며 자연의 주기, 일반 사회의 행사, 지역이나 국가나 전 세계의 사건들을 반영할 수 있다.

가족 식탁에서의 감사, 축복, 탄식의 기도는 고대 유대인의 관습과 예수님, 제자들,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범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식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역사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계속해서 동

W-5.0104: 신 6:4-9; 수 24:15; 웨스트민스터 6.117; 대요리문답 7.228.

참할 수 있다. 일상의 음식을 나눌 때에 우리는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한다.

어린이들은 부모나 그들을 돌보는 다른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게 된다. 어린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교리를 배우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과 나눔으로써,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가정 예배는 주일 예배의 형태와 요소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면, 어린이들은 교회의 예배에 온전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W-5.0105 : 그리스도인의 소명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 세례식에서 우리는 온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어드렸고,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역을 위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할 때나 놀 때나, 사적인 관계에서나 공적인 관계에서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소명이 있다. 이러한 섬김과 사랑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것은 특히 개혁 전통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래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일상의 삶과 일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할 기회를 가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예배, 일, 증거하는 일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W-5.02 : 예배와 신앙 공동체 내의 교회 사역

W-5.0201 : 신앙 공동체 내의 교회 사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신다.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예배는 깊이 연계되어 있다. 사실 예배가 사역이다. 교회의 사역은 교회의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예배는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이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기쁨과 염려들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교회의 사역은 다시 예배로 흘러 들어간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매일 기도, 기독교 교육과 목회적 돌봄의 사역, 교회 공의회 활동, 교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한다. 교회의 사역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형성되고 성장하며, 신실한 제자 훈련과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수행된다(F-1.0301; F-1.0302a; F-1.0303; F-1.0403).

W-5.0202 : 매일 드리는 기도 예배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쉬지말고 기도하라고 교회를 부르신다. 매일 드리는 기도 예배는 우리에게 교회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기도에 참여하는 길을 제공해준다.

W-5.0105: 엡 4:1.

W-5.0201: 요 13:12-17, 31-35; 롬 12:9-21; 갈 6:2; 엡 4:11-16.

W-5.0202: 롬 12:12; 살전 5:17.

이러한 예배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시편 찬송 혹은 기도, 성경 봉독, 감사의 기도와 증보기도.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친다. 주중 예배는 하루 중 정해진 시간 (아침, 정오, 저녁, 하루의 끝 시간)에 드리거나, 일상 속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개인 및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형식을 따를 수도 있다. 이러한 예배는 교회의 공의회, 회중, 교인의 소그룹, 가정, 개인이 드릴 수 있다. 개체교회 내에서 드리질 때에는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교회의 어느 교인이든지 이러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W-5.0203 : 기독교 교육

하나님은 교회가 삶의 모든 계절과 변화들을 통과하는 동안 서로를 인도하고 양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도록 부르신다. 특히 교회는 교인이 신앙 공동체로 들어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 책임을 감당할 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스도인을 목양할 때, 교회가 사용하는 주된 기준과 자료는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 증거하는 성경 속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스도인을 목양하는 중심된 기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거행되는 주일 예배이다. 공예배에서 행해지는 그리스도인 형성 과정을 넘어서, 예배의 말씀과 행위는 특별히 유익한 탐구와 성찰의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하도록 모든 교인을 격려해야만 할 것이다. 교육적인 활동이 예배의 참석을 막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시간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교육 사역은 개체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서약하는 세례의 약속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회는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감독, 사역장로와 집사를 위한 훈련, 교인의 제자훈련에 대해 책임이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 교회 학교 수업, 기도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모범이 됨으로써 공동체를 육성하는데 기여한다. 훈련받고 공인된 기독교 교육자는 가르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술과 전문성을 교회의 양육과 교육 사역에 더하여준다. 당회는 기독교 교육의 은사를 가진 다른 이들을 분별하고 격려하고 준비시키는 책임을 진다. 당회는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모나 다른 이들을 지원할 책임도 있다.

교회 학교 모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찬양, 기도, 말씀 듣기로 구성된다. 또한 교회 학교 모임은 자기 봉헌과 섬김의 기회를 포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회 학교의 예배가 전체 개체 교회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목양하는 다른 기회들도 제공한다: 신학교의 교육과 평생 교육; 특정 주제나 문제에 관한 워크샵; 음악 프로그램과 리허설; 선교와 프로그램 설명회; 위원회, 이사회, 공의회 회의; 수련회 캠프 컨퍼런스 등이 그것이다.

W-5.0204 : 목회적 돌봄

하나님은 서로를 돌보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시기에 지원하고,

W-5.0203: 마 28:20;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146, 5.233.

W-5.0204: 고후 5:16-20; 약 5:13-16;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5.23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86, 6.147; 1967년도 신앙고백 9.07, 9.22.

충고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계속하도록 교회를 부르신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에 의지하면서, 교회는 위협과 죽음, 질병과 상실, 위기와 축하, 투쟁과 죄를 겪고 있는 교인들을 돌보려고 노력한다. 특히 이 사역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와의 관계의 표지이자 봉인인 세례와 주의 만찬의 성례전을 통해 시작되고 성장한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목회적 돌봄 사역의 토대이자 배경이다. 교인들은 서로를 돌보는 일에 예배 자원들을 사용하며, 말씀의 은혜와 도전, 성례전의 은사와 부름, 기도 시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능력, 신앙 공동체의 교제와 위로를 함께 나눈다. 그들은 이러한 자원들을 가지고 가정, 병원, 호스피스, 학교, 및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를 나눈다.

모든 교인이 아픈 이들을 방문하고, 연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로하는 목회적 돌봄 사역에 참여하도록 초청된다. 사역장로, 집사,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목회적 돌봄을 행하는 데 특별한 책임이 있다. 특별한 은사와 적절한 훈련을 받은 이들은 특정 목회적 돌봄 특별 사역에 부름받을 수도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받기 위해 자격증이 있는 다른 전문가에게 보내야만 할 수도 있다.

온전함과 치유를 위한 예배는 목회적 돌봄을 하는 교회 사역을 실행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예배의 중심 요소는 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간구, 또는 삶과 죽음, 영, 혼, 육을 통해 받은 치유에 대한 감사이다. 온전함을 위한 예배는 그리스도 안의 평화와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에 초점을 둔 말씀의 선포를 포함한다. 기도는 손을 얹고 성유를 붓는 일을 통해서도 행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조심스럽게 도입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여러 형태의 치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인간 기도의 성취물이 아니다. 주의 만찬은 말씀 안에서 선포된 온전함에 대한 약속을 입증하는 적절한 방식이다. 온전함을 위한 예배는 당회가 승인해야 하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의 방향에 따라 진행된다. 하지만 사역장로, 집사나 기도 은사를 가진 이들이 인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배는 정기적으로 특별 행사 혹은 주일 예배의 일환으로 드러질 수도 있다.

수용과 화해의 예배는 죄와 고통의 실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부서진 관계들과 죄로 가득 찬 사회 구조에 대한 우리의 참여와 책임을 인정하는 적절한 방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예배의 중심 요소는 평화와 화해의 표시와 함께 하는 적절한 고백과 용서이다. 이러한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는 성경 말씀 봉독이 포함되며, 기도, 감사의 표현, 헌신의 실행 등의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

W-5.0205 : 교회의 공의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도록 교회를 부르신다. 미국장로교 교인들은 함께 공의회를 이루면서,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른다. 이러한 공의회들은 성경의 가르침, 신앙 고백서의 증언, 이 예배 지침의 원칙을 지키면서 정기적으로 예배한다. 당회보다 위에 있는 공의회는 정기적인 말씀의 선포와 주의 만찬을 준비한다. 공의회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 공의회들은 분별과 숙고를 하는 중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고백하

W-5.0205: 빌 2:5; 웨스트민스터 6.173-6.176.

고 중보기도와 간구를 할 기회들도 마련한다.

W-5.0206 : 기타 모임

하나님은 배우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누리도록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모이도록 부르신다.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언약 그룹과 기타 모임들은 주중이나 하루 중 다양한 시간에 모일 수 있다. 교회 건물 안에서, 또는 교인의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모일 수 있다. 이러한 모임은 다음의 일들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된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일; 그리스도인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 이웃, 교단,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일; 개인적인 이야기, 축하할 일, 걱정거리를 나누는 일; 공동으로 작업하거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일; 증언과 섬김의 행위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일.

그리스도인들은 배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 수련회, 캠프, 컨퍼런스에서 모이기도 한다. 이러한 장소에서 하는 예배는 관련 공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경과 신앙고백서와 이 예배 지침의 원칙을 따른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예배의 순서는 주중 예배, 주일 예배, 또는 본 예배 지침에 설명된 다른 예배 순서들을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의 만찬의 거행은 해당 행사를 감독하는 공의회 혹은 행사가 열리는 지역 공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범교회적 그룹으로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한다. 이러한 예배는 교단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세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모임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초청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이에 참여해도 되는데, 그들의 참여가 성례전에 대한 개혁신앙의 이해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다른 사람 앞에서, 특히 종교간 모임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이러한 모임은 다른 신앙을 가진 이웃의 말을 경청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고 나누는 기회이기도 하다. 종교 간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다른 신앙과 관행의 자율성, 고결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말과 행위로 기독교 신앙을 보여주어야 한다.

W-5.03 : 예배 그리고 세상에서의 교회의 사명

W-5.0301 : 세상에서의 교회의 사명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내신다. 예수님의 사명과 교회의 예배는 깊이 연계되어 있다. 사실, 예배는 곧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에서 시작되며,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실체와 그 약속을 엿볼 수 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세상의 기쁨과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오면서 예배로 다시 흘러 들어온다.

세상 속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긍휼을 베풀며 정의와 평화를 위

W-5.0206: 마 18:20; 히 10:25.
W-5.0301: 요 20:19-23.

해 일하며 피조물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려고 노력한다. 교회의 사명은 말씀과 성례전에 의해 형성되고 성장하며, 세상을 위한 기도로 이루어지는 삶을 대표한다(F-1.01; F-1.0303; F-1.0304).

W-5.0302 : 복음화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교회를 보내신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본 소식을 알리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도록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제자로 삼고, 그리스도 안의 영원하고 풍성한 삶에 대해 약속한다.

주일 예배에서 우리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재헌신하며, 복음의 선포를 듣고 신앙 안에서 응답할 기회를 가진다. 따라서 세례를 준비하고 세례받은 제자로 살라는 초청을 일요일 예배에서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또 기독교 예배는 믿는 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 그들이 받은 복음을 사람들과 나누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게끔 믿는 자들을 준비시킨다.

당회는 복음화를 위한 특별 예배를 승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배의 중심 요소는 말씀의 선포인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이끄심, 제자로 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다. 말씀의 선포 전후로 기도를 한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은 신앙 공동체로부터 양육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공동체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 만일 이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이들은 주일 예배 때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세례의 성례전을 받는다. 이미 세례를 받은 이들은 세례를 재확인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할 기회를 갖는다.

W-5.0303 : 긍휼

하나님은 세상을 긍휼히 여기도록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이들을 돌보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방문하고, 포로된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집없는 이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들을 환영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과 함께 한다.

이 긍휼의 행위는 혼자서 하든지, 아니면 함께 하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당면한 상처와 어려움을 직접 도와주라고 부름받았다. 우리는 인간의 불행을 계속되게 하는 시스템에 맞서고 도전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지역 사회에서의 증거와 옹호 행위를 통해서, 더 큰 범위의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간 행복에 헌신하는 기관이나 조직과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긍휼 사역에 참여한다.

긍휼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성례전을 통해서 실행된다. 우리는 억압적인 구조에 우리가 가담했었음을 고백하고, 상처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통을 덜기 위한 우리의 자원을 제공하고, 어려움에 처한 일들을 돌보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이의 존엄

W-5.0302: 웨스트민스터 6.055-6.058, 6.187-6.190.

W-5.0303: 사 61:1-4; 마 25:31-46; 막 1:32-34; 눅 4:18-21; 6:17-19; 갈 6:9-10; 약 1:27, 2:14-17.

성을 존중할 것이며,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들도 돌볼 것이며, 주고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것을 맹세한다.

W-5.0304 : 정의와 평화

하나님은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도록 교회를 보내신다: 공동 선을 위해 교회의 힘을 발휘하고, 개인적인 공간과 공적인 영역에서 정직하게 처신하며,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자유를 추구하며, 자신이 사는 곳에 낮은 이들을 환영하며, 법적인 정의와 공정성을 높이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격차를 줄이며, 폭력과 억압의 시스템에 저항하여 증거하고, 개인, 단체, 사람들에게 가해진 잘못을 시정한다. 하나님은 또한 평화를 추구하도록 교회를 보내신다: 보편 교회나 교단이나 개체교회의 차원에서의 평화; 국가와 종교 단체 혹은 민족들이 서로를 배척하며 전쟁을 벌이는 세계 속에서의 평화; 그리고 지역 공동체, 학교, 직장, 이웃, 가정에서의 평화. 평화 증진과 정의를 향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기초하여 확립된다. 그리고 이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증보와 옹호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주일 예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선포하고 받고 실행한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확신을 얻으며, 이러한 선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도록 격려를 받는다. 세례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우리를 갈라놓는 적대감의 벽을 무너뜨릴 힘을 얻는다. 우리는 불공정한 시스템에 참여했음을 고백하고, 폭력과 불의를 종식하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해방 사역에 우리의 은사를 더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데 헌신한다.

W-5.0305 : 피조물을 돌봄

하나님은 교회를 보내시어 창조물의 청지기직을 나누어 맡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선함과 영광됨을 보존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주시면서 피조물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돌보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소명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경외하고 놀라워하며 땅, 물, 공기를 돌봄; 약탈, 오염, 파괴없이 지구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생명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함; 모든 이가 필요로 하는 바를 채우기 위해 생산과 소비를 조정함; 출산과 생식에 있어 책임감 있는 행동을 장려함;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아름다움, 질서, 건강, 조화, 평화를 추구함.

주일 예배에서 우리는 피조 세계에 대한 돌봄을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며 표현한다: 하나님의 창조 권능에 감사하며 피조물이 지속가능하게 하심에 감사함; 지구의 청기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인식하고 피조물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음을 고백함; 말씀과 성례전 안에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회복의 약속을 기뻐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과

W-5.0304: 출 22:21-27; 레 19:33-34; 시 82; 사 2:1-5; 32:1-8, 16-17; 암 5:6-15, 21-24; 미 6:6-8; 마 23:23-24; 눅 4:16-21; 고후 5:16-21; 약 3:13-18; 웨스트민스터 6.127-130; 소요리문답 7.067-7.081; 대요리문답 7.244-7.258; 1967년도 신앙고백 9.43-47.
W-5.0305: 창 1:26-31; 2:15-20; 시 8; 24:1-2; 사 11:6-9; 1967년도 신앙고백 9.53; 간추린 신앙고백 11.3.

자원을 내어놓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피조물의 선한 청지기로 헌신함.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성실히 돌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종이, 성례전 용품, 예배 공간 건축이나 기타 자원 등 예배를 위해 사용되는 재료들을 책임감 있게 선택하는 것이다.

W-5.04: 예배와 하나님의 통치

W-5.0401 : 하나님의 통치

예배하고 섬기는 중에, 교회는 현재의 현실인 동시에 미래의 약속인 하나님 통치의 살아있는 표징이 된다. 교회의 활동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들은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응답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워졌다는 확신과 이 나라가 곧 온전히 영광 중에 드러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기를 추구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 7:12)

W-5.0401: 마 6:33; 막 1:15; 히 12:28-29; 계 11:15; 스코틀랜드 3.25; 하이델베르크 4.128-4.129;
웨스트민스터 6.180-6.182; 소요리문답 7.107; 대요리문답 7.306; 1967년도 신앙고백 9.54-56.

교회 권징

교회권징

제 1 장 교회 권징의 원칙 전문

D-1.01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여된 권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에 부여한 권한, 즉 교회 권징의 행사를 통해 드러나는 권한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권한이지 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며,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분노가 아니라 긍휼의 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이 서게 하기 위함이다.

D-1.02 교회 권징의 정의

D-1.0201 교회 권징의 정의

교회 권징은 그리스도가 주신 권위를 교회가 행사하는 것으로, 그의 성도들을 인도하고 통솔하며 양육하기 위함이며, 과오를 시정하고 억제하기 위함이다. 교회의 사법 절차는 사회의 사법 절차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의 사법 절차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함이다. 미국장로교 헌법에는 모든 활동 교인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자발적으로 따라야 하는 원칙과 기준이 담겨 있다.

D-1.0202 교회 권징의 한계

신학, 체제, 정책, 권력, 신뢰에 기인한 본질적인 차이를 교회 권징만으로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갈등은 헌법 개정, 조정, 행정 감사, 행정 전권위원회를 통해서도 다룰 수 있다. 사법 절차를 통한 교회 권징은 교회의 개인 또는 공의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또는 문제의 해결이 지체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으며 효율적이지 않아 기도하며 심사숙고한 끝에 개인이나 공의회가 그들의 행위나 불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사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사용해야 한다.

D-1.03 교회 권징의 목적

D-1.0301 교회 권징의 목적

교회 권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명확히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 신앙 공동체 내에서 성도를 양육함으로써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함;
- 진리를 추구하고 드러냄;
-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정의와 공흠을 성취함;
- 과오를 바로잡고 억제해 성도들이 회개하고 회복되도록 함;
-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함;
- 불화와 분열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회복함;
- 심판 절차의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결정을 보장함.

D-1.0302 적법 절차

모든 측면에서, 당사자들은 이러한 교회 권징의 원칙에 부합하는 절차적 보호와 적법 절차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D-1.04 화해와 조정

교회 권징이라는 방법이 있다 해도, 갈등없이 화해시키고 조정하며 차이를 해결하는 전통적인 성경적 의무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 이 규칙들이 교회 내에서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법 절차를 장려하거나 또는 이를 더 어렵게 하거나 비용이 발생하게 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법 절차의 이용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는 성경적 의무를 생각해야 한다 (마 5:25). 제기된 사안에 대해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 기도하며 심사숙고한 후에, 평화, 일치, 순전함을 지키고 교회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가 아니면, 사법 절차에 따른 공식적인 과정을 피해야 한다. 사법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는 이 의무가 소멸되진 않는다.

제 2 장 사법 절차의 정의

D-2.01 사법 절차

D-2.0101 책임소재 확인을 위한 절차

미국장로교의 교회 권징은 사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공의회
의 책임소재는 시정절차를 통해 확인된다. 개인의 책임소재는 징계절차를 통해 확인된다.

D-2.0102 교단의 공의회

교단의 공의회에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다. 당회는 징계 절차에서 교회 성도에 대한
심판절차를 진행한다. 노회, 대회, 총회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통해 시정과 징계 절차에서
의 심판절차와 상소를 진행한다.

D-2.02 시정 절차

D-2.0201 공의회의 책임

시정은 공의회가 교회, 성도, 타 공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절차다. 하위 공의회 또는 총회
조직체가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헌법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상위 공의회는 시
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D-2.0202 부적법 행위와 불이행

D-4.0201의 정의된 대로,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행위는 "부적법 행위"이며, 헌법의 의
무를 따르지 않는 행위는 "불이행"이다.

D-2.03 징계 절차

D-2.0301 개인의 책임

징계 절차는 활동 교인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교회와 이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절차
이며, 위법 행위에 대해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함을 회복하려는 목적 하에 사용된다.

D-2.0302 위법 행위의 정의

D-7.0103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위법 행위는 성경 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교인 또
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모든 행위 또는 불행위이다.

D-2.04 기준과 절차

사법 절차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는 미국장로교 헌법 내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이다.

제 3 장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D-3.01 선출

D-3.0101 구성

총회, 개별 대회 또는 연합 대회, 개별 노회는 관할권 내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 장로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각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거의 동수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 장로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은 G-3.0111에 규정되어 있는 공천 조직체의 선출의 원칙에 따라, 또 다양성 속의 일치성을 위한 교단의 노력에 따라 공천되어야 한다(F-1.0403).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구성원의 수가 홀수인 경우, 추가 구성원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이거나 사역 장로일 수 있다.

- a. 총회 전권위원회는 총회 산하 각 대회의 회원 한 명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b. 대회 전권위원회는 열한 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가능한 한 대회 산하 노회들에게 균등하게 구성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열한 개 미만의 노회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회의 경우엔, 각 노회에 적어도 한 명의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대회가 연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이 위원회는 열두 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각 대회 내의 노회의 수에 따른 비율에 의해 구성원을 선출한다. 관련 대회들은 연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제기된 사건을 다룰 서기를 임명해야 한다.
- c. 노회 전권위원회는 일곱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같은 교회에서 두 사람 이상의 사역 장로가 참여해서는 안된다.

D-3.0102 검토자와 정족수에 미치는 효력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은 세 명으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를 지정해, 징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중의 조사 위원회의 절차를 검토해 달라는 청원을 검토하게 하거나(D-7.11), 징계심판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검토해 달라는 청원을 검토하게 하며(D-7.1402), 직위 해제의 필요성을 결정하게 한다(D-7.0902). 특별 위원회는 적어도 한 명의 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D-3.0602b에 규정되어 있는 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두 명을 포함시킬 수 있다. 특별 위원회의 위원들은 후속 심판절차에 참여해선 안된다. 사건 기록 검토 이후에 심판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정족수는 전술한 사건 기록 검토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의 과반수가 되나, 어떤 경우에도 정족수가 다섯 명 미만이어선 안된다(D-3.0602). 당회는 모든 검토 청원서를 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며, 노회 서기는 이 절차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D-3.02 직책 수행

D-3.0201 조와 임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6년 임기의 3 개의 조로 편성되며, 각 조는 가능한 한 그 수가 동일해야 하고 한 조는 그 임기가 2년이다.

D-3.0202 공석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채운다:

- a. 사임, 사망, 기타 이유로 인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공석은 해당 위원을 선출한 공의회에 의해 채워질 수 있는 바, 해당 공의회는 향후 모임에서의 잔여 임기를 채울 사람을 선출할 수 있다.
- b. 매 짝수 해에 총회는 총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다음 조를 선출해야 하며, 발생하는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직책의 임기는 이를 선출한 총회가 해산됨과 동시에 시작된다.

D-3.0203 자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은 다음의 추가적인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 a. 잔여 임기를 채울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 임기의 절반 이상을 섬긴 사람은 임기 전체를 봉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잔여 임기에 대한 연임의 자격이 없다.
- b.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서 전체 임기를 완전히 섬긴 사람은 그 임기 6년 후에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선임될 자격이 없다. 어느 누구도 두 개 이상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총회에 의해 선출된 조직체의 구성원은 그 직위를 사임하지 않는 한 총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섬길 수 없다. 공의회 의장, 서기, 직원 또는 총회 조직체의 직원은 총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섬길 수 없다.
- c. 노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서의 위원 활동 지속 여부는 노회 산하 교회 내의 회원 자격 여부 또는 노회 내의 회원 자격 여부에 달려 있다.
- d. 대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서의 위원 활동 지속 여부는 대회 산하 교회 또는 노회의 회원 자격 여부에 달려 있으며, 대회들이 연합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엔 (G-3.0404), 대회들이 협의한 선출 규칙에 따른다.
- e. 총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서의 위원 활동은 그 위원을 공천한 대회에 속하지 않은 교회 또는 노회로 그 소속을 옮겼을 때 종결된다.

D-3.03 위원회 활동 비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서의 모든 필요한 비용은 그 위원을 선출한 공의회 또는 공의회들이 지불해야 한다. 대회가 연합해서 연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엔 그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각 대회의 관할권 내에서 발생한 특정 사법 사건을 진행하는데 드는 필요 경비는 해당 대회가 지불해야 한다.

D-3.04 임원

각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하되, 위원회의 규정을 따르거나 또는 위원들을 선출한 공의회 of 규정을 따른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또 규정에 의거해 임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D-3.05 권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할당받은 사건에 대해 미국장로교 헌법에 명시된 권한만을 소유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D-3.06 회의

D-3.0601 시간과 장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구성한 공의회 또는 공의회들이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없으면, 위원회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야 한다.

D-3.0602 정족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정족수는 위원 과반수로 한다. 다만 징계 사건에 대한 노회 전권위원회의 정족수는 D-3.0102의 규정에 따라 현재 지정된 임무를 맡고 있는 위원들을 제외한 위원들의 과반수에 의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정족수는 다섯 명 미만이어선 안된다. 사법 절차에 관련된 당회의 정족수는 사역 장로들의 과반수와 당회장이다.

a. 참여할 수 없는 이들

한 교회가 사건의 당사자일 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 중 그 교회의 구성원이거나 영구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목회적 관계를 그 교회와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는 해당 사건에 참여할 수 없다. 공의회가 사건의 당사자일 때, 그 공의회 of 구성원 또는 그 공의회 산하 교회의 구성원은 해당 사건에 어떤 경우에도 참여할 수 없다. D-3.0102에 따라 지정된 위원들은 이 사건에 참여해선 안된다.

b. 이전 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회 서기는 지난 육 년 내에 그 임기가 만료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의 최근 명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 명단은 조 내에서 철자 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조로부터 시작한다. 서기는 매년 공의회 또는 공의회들에 명단을 보고해야 한다.

c. 정족수 확인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심리 또는 심판절차를 위해 모여야 할 때마다, 서기는 전 위원 명단에서 중복되지 않게 추가적으로 위원들을 확보해서 진행 과정에서 정족수가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 공의회는 전 위원들을 중복되지 않게 선발할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써, G-3.0111과 F-1.0403에 부합하는 참여성과 대표성의 원칙을 굳건히 한다.

d. 정족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불참, 자격 미달, 기피로 인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의 수가 정족수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엔, 위에 명시된 정족수가 확보될 때까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휴회해야 한다.

e. 참가자 비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정족수의 부족으로 인해 사건을 다룰 수 없을 경우에, 사건이 발생한 지리적 관할 내에 있는 공의회가 참석을 요구받은 사람들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제 4 장 시정

D-4.01 시정 절차

D-4.0101 목적

시정의 목적은, 미국장로교 헌법을 수호하며 헌법의 요구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다룸으로써, 교회의 평화, 일치, 순진성을 견고히 하는 것이다.

D-4.0102 사법 절차의 한계

시정에 대한 청구는 개인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반면, 결코 개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될 수는 없다. 시정 청구는 개체교회에 대해서, 또는 총회 산하 공의회의 위원회나 전권위원회에 대해서 제기할 수 없다. 당회는 그 개체교회가 헌법에 반하여 범한 오류나 불행위를 G-3.0201에 따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다음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시정은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조직체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교회의 한 명 이상의 성도 또는 하나 이상의 공의회에 의해서만 제기될 수 있다.

D-4.0103 마감일과 제출

a. 마감일

어떤 서류가 적기에 접수되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서류 제출 기간의 시작을 야기하는 사건의 다음 날이 동 기간의 시작일이 된다. 예를 들어 공의회의 조치가 취해진 날의 다음 날, 또는 당사자가 결정 사항을 받은 날의 다음 날이 후속 제출서류의 제출 기간 시작일이 된다. 날짜를 계산할 때에는 공휴일을 포함해서 주 칠 일이 다 포함된다. 서류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서류가 해당 기한 최종일 당일 또는 그 전에 도달되었으면, 서류는 적기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해당 기간의 최종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서류가 최종일 다음 영업일에 도착하면 서류는 적기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b. 제출 방법

모든 제출 요구 서류는 미국 우정국의 접수 영수증 첨부 등기 우편, 배달 확인 영수증 첨부 상업 택배, 인편 배달, 또는 이 규정에 허용되어 있는 한에서 전자적으로 전달하거나 배달할 수 있다.

D-4.02 시정심판청구

D-4.0201 절차의 시작

시정 절차는 관할권이 있는 공의회의 서기에게 시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시정심판청구서에는 공의회의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부적법 행위 또는 불이행의 혐의를 제기해야 한다.

- a.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결정 또는 행위는 부적법 행위로 규정한다.
- b.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것을 불이행으로 규정한다.

D-4.0202 서기의 책임

서기는 시정심판청구서 사본을 시정을 요구받은 당사자와 해당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임원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연합 사법 전권위원회에서 사법 사건을 담당하도록 다른 서기가 임명되어 있으면, 관할권을 지닌 서기는 시정심판청구서를 해당 서기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D-4.0203 관련 당사자들

시정 절차 사건 관련 당사자들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들(시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사람들)과 피청구인(들)(시정심판청구를 받은 공의회(들))이다.

D-4.0204 변호인단

a. 구성

공의회 또는 총회 조직체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었을 때, 3인 이내로 변호인단을 지명해야 한다. 상소가 제기되는 최상위 공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변호인단이 사건의 해당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대리해야 한다. 변호인단의 모든 구성원은 미국장로교 회원이어야 한다.

b. 규정에 따른 임명

공의회 또는 총회의 조직체는 규정에 따라 변호인단을 임명할 수 있다. 변호인단의 구성원 혹은 그 구성원의 변화를 관할권이 있는 공의회의 서기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그 서기는 관련 당사자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c. 변호인단이 될 수 없는 사람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의 서기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공의회의 변호인단에 들어갈 수 없다. 또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의회의 직원들, 또는 상소 절차 상의 관할권이 있는 상위 공의회의 직원들은 변호인단에 들어갈 수 없다.

D-4.0205 기간 제한

시정 사건에서 시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의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 a. 부적법 행위 혐의 사건의 경우, 아래의 4.04 항에서 설명되어 있는 집행 정지도 함께 요청한 경우라면, 부적법 행위 혐의에 대한 시정심판청구서는 그 청구의 근거가 된 공의회의 조치 후, 삼십(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상소의 경우에는, 상소 관련

당사자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시정심판청구서는 삼십(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집행 정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적법 행위 혐의에 대한 시정심판청구서는 공의회의 조치 후 구십(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 b. 불이행 혐의 사건의 경우, 혐의가 제기된 불이행 사건을 다음 회의에서 시정해 달라는 서면 요구를 공의회가 받았으나, 이 회의에서 이를 공의회가 시정하지 못했거나 시정을 거부했으면, 이에 대해 구십(90)일 이내에 시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D-4.0206 시정 사건의 시정심판청구인 자격과 관할권

시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와 시정심판청구를 다룰 수 있는 관할권은 다음과 같다:

- a. 공의회는 동급의 다른 공의회를 상대방으로 하여 시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정심판청구 대상이 된 공의회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그 다음 상위 공의회에 시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 b. 교회의 성도는 당회를 상대방으로 하여 노회에 시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c. 노회의 대의원인 사역 장로는 그들이 등록해 참석한 노회 회의에서의 부적법 행위나 불이행 혐의에 대해 대회에 시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d. 노회의 목사 회원과 G-3.0301에 따라 노회에 의해 특정 사역에 선출되어 등록된 사역장로는 부적법 행위나 불이행 혐의가 발생한 모임에의 참석 여부에 상관없이 노회를 상대방으로 하여 대회에 시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e. 당회는 노회를 상대방으로 하여 대회에 시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f. 대회에 파송된 대의원은 그들이 등록해 참석한 대회 회의에서의 부적법 행위나 불이행 혐의에 대해 총회에 시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g. G-3.0401에 따라 대회에 의해 특정 사역에 선출되어 등록된 목사 and 사역장로는 부적법 행위나 불이행 혐의가 발생한 모임에의 참석 여부에 상관없이 대회를 상대방으로 하여 총회에 시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h. 노회는 그가 속한 대회를 상대방으로 하여 총회에 시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i. 당회, 노회, 대회는 총회 조직체를 상대방으로 하여 총회에 시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j. 본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 관할권을 지닌 공의회가 시정심판청구서가 제출된 후 육십일 기간 내에 또는 집행 정지 요청과 함께 시정심판청구서가 제출된 후 삼십일 기간 내에 특정 시정 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련 당사자의 서면 요청에 의해 그 다음의 상위 공의회가 이 사건의 관할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후 이 공의회는 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첨부해 관할권을 하위 공의회에 돌려보낼 수 있으며, 또는 이 공의회가 관할권을 유지한 채 관련 사건 자체를 마무리할 수 있다.

D-4.0207 관할권의 효력

시정 절차에서의 관할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 효력이 있다:

- a. 각 공의회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그들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상위 공의회에 결정, 결의, 명령을 인정하고 시행해야만 한다.
- b. 대회와 노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상소심을 통해 번복되지 않는 한 특정 사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대회 또는 노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단순히 선포함으로써 그 결정의 구속력을 특정 사건 관련 당사자 이외의 자들에게 확대할 수 없다.
- c. 교단 전체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권위있는 해석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총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만 보유한다(G-13.0103r).

D-4.03 시정의 내용

D-4.0301 시정심판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시정심판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청구인(들) 이름과 피청구인(들) 이름.
- b. 일자, 장소, 관련 상황을 명기한 특정 부적법 행위; 불이행 시정 서면 요구 일자과 피청구인(들)이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후속 회의 일자를 명기한 특정 불이행 사건.
- c. 부적법 행위 또는 불이행에 대한 시정심판청구 이유.
- d. 상기 D-4.0206에 따라 청구인(들)의 시정심판청구를 입증하는 사실 진술서.
- e. 요구한 시정 또는 수정 사항 ("구제"라 함). 이는 시정심판청구를 받은 공의회가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사항이어야 한다.

D-4.0302 시정심판청구서 제출 방법

시정심판청구서는 D-4.0103b에 따라 미국 우정국의 접수 영수증 첨부 등기 우편, 배달 확인 영수증 첨부 상업 택배, 인편 배달에 의해서 전달하거나 배달할 수 있다. 시정심판을 청구한 사람(들)은 수취인이 서명한 영수증 또는 인편 배달 증명서를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정심판 청구 관련 양측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향후의 모든 의사소통은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D-4.04 집행 정지 요청

D-4.0401 집행 정지 요청

집행 정지는 관할권을 지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서면 지시 사항으로, 시정심판청구 (또는 상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결정 또는 조치의 연기를 명령하는 것이다. 모든

집행 정지 요청은 상기되어 있는 것처럼 시정심판청구서 (또는 상소장)와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 요청은 다음 형식 중 하나를 통해 해야 한다:

- a. 공의회가 결정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할 당시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회원의 삼분의 일이 서명한 요청서,
- b. 상소가 진행되고 있는 시정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의 삼분의 일이 서명한 요청서, 또는
- c. 시정심판청구 또는 상소를 심리할 관할권이 있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 중 최소 삼 인이 집행 정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의 서명이 있는 요청서.

D-4.05 예비 결정

D-4.0501 서류 검토

공의회는 서기는 시정심판청구 (또는 상소와 함께 집행 정지를 요청하려는 목적의 상소)가 접수되면, 그 집행 정지 요청과 함께 이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에게 즉시 전달해, 다음의 질문에 대해 그들이 예비 결정하게 한다:

- a. 시정심판청구의 경우,
 - (1) 공의회가 관할권을 갖고 있는가,
 - (2) 한 명 이상의 청구인이 시정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가,
 - (3) 시정심판청구서가 시기에 맞게 접수되었는가,
 - (4) 사실로 판명될 경우 부적법 행위 또는 불이행을 구성하는 사실들을 청구인이 혐의로 제시했는가,
 - (5) 청구인은 허용될 수 있는 구제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가? 요청한 구제 사항을 허용해 줄 수 없으나 잠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그것이 선언적이든 또는 다른 형태이든, 잠재적 구제가 있다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결정하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해선 안된다. 공의회가 허용할 수 없는 구제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으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i. 구제를 허용하는 공의회 권한을 넘어서는 구제,
 - ii. 공의회가 기존의 계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 외의 금전적 보상,
 - iii.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구제,
 - iv.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구제.
- b. 집행 정지 요청의 경우, 이것이 D-4.0401a 또는 b에 근거하고 있는지, 요청서가 온전

히 작성되어 기간 내에 제출되었는지.

D-4.0502 예비 결정

예비 결정은 D-4.0501a에 대한 다섯 개의 질문 중 하나 이상의 답변이 부정적으로 나왔기에 이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사건을 기각할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 a. D-4.0401a 또는 b에 따라 집행 정지를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이 온전하고 기한 내에 이루어졌으며 시정심판청구 또는 상소에 대한 예비적인 사안들이 충족되었다고 위원장과 서기가 결정하면, 집행 정지는 위원장과 서기에 의해 즉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b. D-4.0501a의 예비 질문들을 고려할 때, 임원들은 혐의가 제기된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 c. 임원들은 시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십(10) 일 이내에 예비 결정에 대한 그들의 결정을 공의회의 서기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의회의 서기는 예비 결정 결과를 시정심판청구 (또는 상소와 함께 집행 정지를 요청하려는 목적의 경우, 상소)와 집행 정지 요청-요청을 받은 경우-과 함께 관련 당사자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D-4.06 D-4.0401c에 의한 집행 정지 요청 처리

D-4.0601 요청 검토

집행 정지 요청이 D-4.0401c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집행 정지는 집행 정지 요청, 시정심판청구서 (또는 상소의 경우, 상소 통지), 예비 결정을 접수한 지 십(10) 일 이내에 사건을 심리하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세 명의 위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 요청을 인정하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각 위원은 집행 정지의 대상이 되는 공의회의 구체적인 행위(들) 또는 결정(들)의 요약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들이 판단하기에 다음의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 a. 관련 행위나 결정이 유예되지 않으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 b. 그러한 결정 또는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있음.

D-4.0602 결정과 제출

집행 정지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들이 적용된다:

- a.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의 진술서는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는 공의회의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b. 공의회의 서기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세 편 이상의 진술서를 받으

면, 그 유예는 허용되어야 하며, 공의회의 서기는 집행 정지 사본을 관련 당사자들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 c. 집행 정지는 관할권을 지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나,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다.
- d. 집행 정지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공의회의 서기는 이러한 사실을 관련 당사자들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D-4.07 대응과 향후 조치

D-4.0701 예비 결정이 사건을 받아들인 경우

처음에 임원들이 사건을 받아들인 경우, 피청구인 공의회(들)은 D-4.0703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자신의 답변을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답변이 접수되면, 임원들은 답변을 검토해야 하며, 새로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의 예비 결정을 제출된 대로 확정하거나 그 예비 결정을 수정할 수 있다. 이후 그 확정된 또는 수정된 예비 결정은 공의회의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공의회의 서기는 관련 당사자들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를 배포해야 한다. 또 그 답변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배포되어야 한다.

- a. 사건을 받아들이기로 한 예비 결정이 확정되면, 피청구인(들)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은 통지를 받은 후 십오(15)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안은 D-4.0704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진행된다.
- b. 수정된 예비 결정이 사건을 기각한 경우, 사건은 D-4.0702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진행된다.

D-4.0702 예비 결정 원안 또는 수정안이 사건을 기각한 경우

사건을 기각한 예비 결정에 대하여, 다음의 사후절차를 적용한다:

- a. 임원들이 사건을 기각했음을 통지를 받은 후 십오(15)일 이내에, 한 명 이상의 청구인 또는 한 명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그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피청구인(들)은 답변을 이미 제출하지 않았을 시에는 D-4.0703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자신의 답변을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이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배포되어야 한다. 이의 제기는 D-4.0704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 b. 십오(1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지 않으면, 사건은 기각되며 집행 정지는 해제된다.

D-4.0703 시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들)의 변호인단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임원에 의해 사건이 받아들여졌다는 통지, 또는 사건에 대한 임원의 기각 결정에 이의 제기 관련 통지를 받은 후 삼십(30)일 이내에 간략한 답변을 상위 공의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답변서는 시정심판청구서에 제기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거나,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니거나 잘못 진술되었다고 부인하고, 부적법 행위 또는 불이행으로 규정된 상황을 설명하는 다른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 a. 또한 그 답변은 D-4.0501a의 사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시정심판청구 기각명령신청을 포함할 수 있다.
- b. 집행 정지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피청구인의 답변은 집행 정지에 대한 이의 또한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절차는 D-4.0704에 따라 진행된다.
- c. 공의회의 서기는 그 답변을 청구인(들)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D-4.0704 예비 결정과 집행 정지에 대한 이의 제기

예비 결정 또는 집행 정지에 대해 본 장의 조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되면, 문제가 되는 결정(들) 또는 집행 정지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고 토론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관련 당사자들은 변론 요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변론 요약서들에 기초해 사안에 대해 변론심리 없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동의할 수 있다. 이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사건 기각이나 심판절차 속행에 관해, 또 집행 정지가 접수된 경우엔 집행 정지 확정 또는 해제에 관해 최종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 5 장 시정 사건 심판절차

D-5.01 사전 심리 절차

D-5.0101 피청구인 공의회 서기의 임무

사전 심리 절차에서의 피청구인 공의회 서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시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사십 오(45) 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의회(들)의 서기 또는 당회 서기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모든 서류와 기타 자료의 목록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b. 이후 삼십(30) 일 이내에, 청구인은 사건 관련 추가 회의록 또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피청구인 서기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요구의 사건 관련성 또는 합리성에 대해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임원 또는 그 지명자들이 결정해야 한다.
- c. 상위 공의회(들)의 서기가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공지를 하면, 피청구인 공의회(들)의 서기 또는 당회 서기는 사건 관련 회의록과 서류를 자료 목록과 함께 상위 공의회(들)의 서기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D-5.0102 사건 기록

관련 회의록과 서류가 상위 공의회(들)의 서기에게 제출되면, 해당 서기는 이들 자료들을 정리해 관련 당사자들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보내고 당사자들에게 심판절차 심리 기일을 통보해야 한다.

D-5.0103 추가 제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심판절차 시 제출할 증거, 관련 당사자의 각각의 주장과 반론을 설명한 진술문, 즉 변론 요약서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D-5.0104 사전 심리 회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한 후 어느 때라도, 전권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 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 그 변호인에게 합의를 제시할 수 있다. 또는 사전 심리 회합에서, 사실과 논쟁 사안에 대해 합의를 모색하도록 하고, 서류와 기타 증거를 교환하도록 하며, 또 논쟁을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좁혀 나가 그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 혹은 그들이 지명한 자는 사전 심리 회합의 장소와 일시를 정하고 당회나 전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를 진행해야 한다.

D-5.02 심판절차 진행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시정 사건의 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심판절차는 심판절차에

적합한 중립적인 장소에서 심판절차의 격식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증언진술서의 전자적인 제출에 대해 D-5.04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절차는 직접 대면 출석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단독 재량으로, 심판절차는 G-3.0105에 따라 전자적으로 열릴 수 있다. 심판절차에 사용된 기술을 통해 증인, 당사자,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그들의 말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D-5.03 소환장과 증언

D-5.0301 사건 관련 당사자와 증인의 소환

사건 관련 당사자 또는 양측이 요청한 증인의 심판절차 출석 통보 소환장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 혹은 서기가 서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공의회의 서기가 송달해야 한다. 증인은 사실증인 또는 전문가증인이 될 수 있다(D-5.0703b 참고). 시정 심판절차에서의 사실증인은 증언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D-5.0302 소환 대상자

미국장로교의 회원만이 출석 의무가 강제되는 소환의 대상이 된다. 미국장로교 회원이 아닌 사람과 전문가 증인(소속교단과 상관없이)에게는 심판절차 출두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D-5.0303 다른 공의회 소속의 증인

다른 공의회의 관할권에 속해 있는 증인을 소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건을 다루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심판절차에 관련된 공의회의 서기를 통해 그 다른 공의회의 서기에게 신청한다. 그러면 그 다른 공의회의 서기는 심판절차에 출석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도록 증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D-5.0304 비용

증인은 심판절차에 출석하여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본인을 소환한 사건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

D-5.0305 소환장 송달

소환장은 D-4.0103b에 따라 송달되거나, 또는 전자적으로 전달하되 수신자가 칠(7)일 내에 확인해야 한다. 사건을 심리하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송달 또는 발송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만일 미국장로교 회원인 사건 당사자 또는 증인이 심판절차 출두 소환을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심판절차에 출석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여 이에 따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언을 거부하면, 당사자 또는 증인은 불복종죄나 모욕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인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공의회는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D-5.04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된 증언

G-3.0105와 D-5.02의 규정에 따라, 대면으로 열리는 심판절차에 증인들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이들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출석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D-5.05 심판절차의 진행*D-5.0501 변호인*

시정 사건 관련 당사자는 변호인과 함께 출두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대리할 수 있다. 변호인은 유급 대리인 또는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변호인은 미국장로교 회원이어야 한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동 전권위원회 위원인 상황에서 해당 전권위원회에 변호인으로 출두할 수 없다.

D-5.0502 자료 전달과 의사소통

사건 관련 자료와 사건 관련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 a.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사건을 심리하는 공의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정 사건 당사자, 그들의 변호인, 또는 어느 누구라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모든 종류의 서면 자료, 출판 자료, 전자 자료, 시각 자료를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에게 직접 배포하거나 전달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 금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혹은 추가 자료 제출을 허가할 수 있다.
- b. 사건 관련 당사자나 그들의 변호인은 사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과 의사소통해서는 안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와 그들의 변호인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D-5.0503 심판절차 진행 상의 통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은 심판절차의 진행을 통제하고 모든 당사자, 증인, 변호인, 청중의 행동을 통제할 전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진다. 여기에는 퇴장 조치도 포함된다. 이는 적절한 존엄과 품위가 유지되게 하기 위함이다. 심판절차 통제와 관련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이 전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과반수 투표로 이 문제를 결정한다.

D-5.0504 절차상 제기되는 문제

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상 증거의 허용 가능성에 관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가진 후에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D-5.0505 심판절차 불참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은 대면으로 심판절차에 출석해야 한다. 심판절차가 시작되었는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이 심판절차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후 그 위원은 그 사건 심판절차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D-5.0506 정족수의 미달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심판절차는 무효가 되며, 상임 사법 전권 위원회가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처음부터 사건심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D-5.06 심판절차

D-5.0601 위원장의 지침 안내

시정 사건의 심판절차 심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그 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은 '교회 권징' 편 of 서문(D-1)을 크게 낭독하며, 해당 공의회가 심판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야 한다. 또 위원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의회 of 심판관으로서의 위원들의 고결함과 그들이 맡을 엄숙한 임무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D-5.0602 관련 당사자의 이의 제기

당사자 또는 그들의 변호인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구성과 관할권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발언할 수 있다.

- a.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족 관계로 어느 당사자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어느 당사자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거나, 또는 사건 관련 당사자인 교회 또는 공의회 of 회원이면, 그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b. 모든 심판절차 당사자는 이해상충을 이유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을 기피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의 정당성은 나머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이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결정한다.

D-5.0603 예비 결정사항과 이의 제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모든 예비 결정사항과 모든 이의 제기를 기록해야 하며, 이 모든 사안들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또한 예비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나 심판 절차의 순서나 질서에 대해 영향을 주는 기타 이의 제기도 기록해야 하며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의 증거와 변론을 다 심리하기 전까지는 심판청구 본안에 대한 최종 법적 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심판절차 당사자들이 명백한 사실들에 대해 또는 분쟁의 여지가 없는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또는 사전심리 회합에서 합의하고, 심판절차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포기하고, 변론 요약서와 서면 제출에 기초해 분쟁을 합의하고자 할 때는 예외다.

D-5.0604 시정심판청구서의 수정

시정심판청구서 수정이 청구서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피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심판절차 시에 시정심판청구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D-5.0605 모두 진술

모두 진술을 할 기회를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에게 주어야만 한다.

D-5.07 증거*D-5.0701 정의*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증거에는 증인의 구두 증언이 포함되며, 사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제시된 기록물, 글, 물건, 기타 물품도 증거에 해당된다. 증거는 반드시 사건연관성이 있어야 접수된다. 그 입증능력의 요구치에 관하여는 직접증거와 정황증거 간에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D-5.0702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

공의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문서 기록물과 공인된 증언 기록물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 a. 공의회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공인된 문서 기록물은 심판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 b. 공의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받은 공인된 진술 기록은 다른 공의회에서의 어느 심판절차 단계에서든지 받아들여야 한다.

D-5.0703 증인

증인과 관련하여 다음이 적용된다:

- a.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는 누구라도 증인의 증언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 증인의 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은 누구라도 상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 b. 증언을 위해 소환된 각 증인은 증언할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증인의 어떤 증언이라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받아들이기 위해선, 이 증언은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적합한 근거를 지녀야 한다. 증인이 증언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고 그러한 의견이나 기타 증언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증인이라도 전문 의견 또는 기타 증언을 제시할 수 있다.
- c.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의 변호인은 여하한 기밀사항에 대해서도 증언하도록 강요받

을 수 없다. 해당 변호인은 자신이 대리하는 심판절차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증언할 수 없다.

- d. 신빙성은 증인의 증언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의미한다. 증인의 신빙성을 결정할 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증언의 정확성이나 증인의 진실성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고려할 수 있다.

D-5.0704 증언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일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 a. 위원장의 지시나, 또는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 어느 한 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증인을 심문하는 동안 사실증인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된다. 전술한 규정은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 변호인, 또는 전문 지식을 증언하기로 사전에 결정된 증인이 심판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 b. 증인들을 소환한 당사자 측이 먼저 증인들을 심문하고, 그 후에 상대방 측에서 증인들을 반대 심문해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이 추가 질문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재심문, 반대 재심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라도 추가로 질문할 수 있다.
- c. 증언을 하기 전, 증인은 다음 질문에 동의함으로써 선서를 해야 한다: “본 사안에 대해 당신이 제시하는 증거는 오직 진실임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까?”
- d. 만일 증인이 위와 같이 선서하기를 거부할 경우, 다음 질문에 동의해야 한다: “증언 하도록 소환받은 본 사안에 대해 당신은 진실, 온전한 진실,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엄숙히 확약합니까?”
- e. 각 증인의 증언은 공인 기록원 또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기타 도구-여기에는 디지털 음성 녹음도 포함됨-를 통해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 f. 심판절차에 직접 출석할 수 없다면, 증인들은 D-5.04의 조항들에 따라 전자적인 방식으로 출석할 수 있다.
- g. 사건을 다루고 있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증언할 수 있으나, 증언 이후에는 사건에 참여할 수 없다.

D-5.08 최후 진술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최후 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청구인에게는 변론을 시작하고 끝낼 권리가 있다. 변론이 끝나면 심판절차 심리는 기도로 종결해야 한다.

D-5.09 결정*D-5.0901 심의*

심의를 위해선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심판절차 심리가 최종 마무리된 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비공개로 소집해 심의해야 한다. 전권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 b. 시정 사건에서 시정심판청구 내용은 제출된 증거의 우세성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우세성이란 해당 증거가 반대 증거와 비교했을 때 더 설득력이 있어 진실일 확률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중한 심의를 거친 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심판절차에서 제기되었던 각 부적법 행위 혐의 또는 불이행 혐의에 대해 투표하되 그 투표 수를 확인해서 각 회의록에 그 투표 수를 기록해야 한다. 각 부적법 행위 또는 불이행을 인정하기 위해선 다수결 투표가 요구된다.

D-5.0902 결정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에 이르고 이를 통지한다:

- a.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이제 사건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심판청구 내용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되면, 전권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
- b. 심판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여, 결정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해야 한다. 회의 중에 결정에 대한 서면 개요를 준비해서 채택해야 한다. 심판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은 서면으로 작성된 결정문을 검토해야 한다. 심판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검토할 수 있고, 또는 심판절차 심리가 종결된 후 십(10) 일 이내에 직접 모여서 또는 G-3.0105에 따라 전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c.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서면 결정문 사본에 서명하면, 그 결정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된다. 서면 결정문 사본은 D-4.0103b에 따라, 또는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미리 합의된 경우엔 전자적으로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한다.
- d. 심판절차 심리가 종결된 후 삼십(30) 일 이내에, 그 결정문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공의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 e.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서기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그 결정 사항을 알려야 한다.

D-5.0903 결정의 효력

상소심을 통해 번복되지 않는 한, 노회와 대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그 결정이 이루어진 특정 사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노회 또는 대회 상임 사법 전권위

원회의 결정은 특정 사건 관련 당사자 외에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D-5.0904 새로운 증거

상소하기 전에 또는 상소를 제기한 후에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할 수 있다.

- a. 상소를 신청하기 전, 그러나 상소 신청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령 또는 결정에 불리하게 영향받는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는 누구라도 새롭게 발견된 증거에 기초해 새 심판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가 합리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는 점, 충분히 노력했지만 이전 심판절차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제시될 수 없었다는 점이 소명되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새 심판절차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이 서류 중일 때 접수된 상소 신청은 심판절차를 진행했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보류되어야 한다. 하위 공의회는 그 결정 사항을 상위 공의회에 알려야 한다.
- b. 만일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가 상소를 신청한 후에, 상소 신청 전에는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보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을 경우, 상소 신청을 받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심을 위한 새로운 심판절차로 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소절차의 진행은 원래의 심판절차를 진행했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새로이 재심 심판절차를 진행하여 내린 결정을 보고할 때까지 유예되어야 한다.
- c. 새로 확보한 증거 인정 신청은 심판절차 관련 상대 당사자에게 보내는 사본과 함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해야 한다. 증거 설명 요약문을 추가해 증거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새로 확보한 증거 인정 신청을 접수한 지 적어도 삼십(30) 일 이후에 그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D-5.0905 상소

상소 관련 규정은 D-6에 있다. 다음은 상소 신청 가능 기간과 신청인에 대한 내용이다:

- a. 심판절차 관련 각 당사자의 경우, 상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심판절차 결정이 그 심판절차 당사자에게 전달되었거나 그 당사자에 의해 거부된 날짜로부터 시작된다.
- b. 한 명 이상의 원래의 심판절차 당사자만이 상소할 수 있다.

D-5.10 심판절차 과정에 대한 기록

D-5.1001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서기의 임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 a. 모든 증언과 구두 기록을 정확하게 그대로 녹음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함. 구두 기록은 디지털 음성 녹음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음;
- b. (증거 채택 여부를 기록해 두며,) 증거로 제시된 모든 증거자료들을 식별하고 잘 보

관하며, 증거물들의 목록을 작성함;

- c. 심판절차 진행 과정을 의사록에 기록함. 사건과 관련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정한 조치나 명령을 기록하되 각각에 대한 투표 현황도 포함해야 함;
- d. 사건 기록을 준비함. 사건 기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함:
 - (1) 시정심판청구서와 그에 대한 답변서;
 - (2) 사건을 위해 제출된 모든 회의록과 서류들;
 - (3) 요청받았을 경우, 공식 녹취록;
 - (4) 적절하게 표시된 모든 증거물, 기록, 문서와 기타 서류
 - (5) 서면 결정문;
 - (6) 사건과 관련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모든 조치나 명령과 각각에 대한 투표 현황;
- e. 최종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진 후 삼십(30) 일 내에 사건 관련 기록을 인증하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공의회 의 서기에게 전달해야 함. 이 공의회는 사건 관련 기록을 최소한 오 년간 보관해야 하며 기록 보관에 관한 해당 공의회 정책을 따라야 함;
- f.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한 당사자의 비용으로, 서기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심판절차 과정의 모든 진술과 구두 절차 기록에 대한 진실되고 완전한 녹취록이 준비되도록 한다. 녹취록 작성자가 녹취록이 진실되고 완전함을 인증하면, 비용 지불에 대해서 정한 후에, 사본을 요구한 각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전달해야 함. 또 녹취록 사본 한 부를 추가로 만들어, D-6.0802에 따라 상소할 때에 보내는 자료에 포함해야 함.

D-5.1002 기록 추가

심판절차 진행의 책임이 있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에 의해 결정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누구도 사건의 기록을 보충하거나 사건 기록에 추가할 수 없다.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공의회 의 서기가 서면으로 기록 보완 요구를 접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요구를 고려해서는 안된다.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공의회 의 서기는 접수된 서면요구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자료 보충 요구서 사본을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모든 당사자들은 십(10) 일 내에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D-5.1003 공의회 서기의 임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로부터 결정문을 받아 공의회가 모이는 경우, 공의회 의 서기는 이 결정 사항을 즉시 보고하고 그 공의회 의 회의록에 결정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공의회가 모이지 않는 경우, 해당 공의회 의 서기는, 해당 공의회 의 첫 번째 회의 또는 연기된 회의 또는 그 결정 사항을 듣기 위한 임시 회의 중 가장 먼저 소집되는 회의에서, 그 결정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그 공의회 의 회의록에 그 결정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제 6 장 시정 사건에서의 상소

D-6.01 상소 제기

D-6.0101 정의

시정 사건에서의 상소는 심판 절차와 결정에 대한 수정, 변경, 보류, 반복의 검토를 목적으로, 하위 공의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을 다음 단계의 상위 공의회로 회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D-6.0102 상소 개시

원래 사건 당사자들(한 명 이상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들))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에 상소할 수 있다.

- a. 그 결정은 시정심판청구 내용을 다루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최종 결정이어야만 한다. 그 결정은 D-4.0702b에 따른 기각이거나, D-5.09에 따른 서면 결정문일 수 있다.
- b. 시정 사건에서 관련 당사자는 상소인 또는 상소인들과 피상소인 또는 피상소인들이다.

D-6.02 상소 청구서

D-6.0201 상소 청구서 제출

상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최종 결정문 사본을 접수한 후 사십오(45) 일 이내에 서면 상소 청구서를 다음 상위 공의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면 상소 청구서는 전자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공의회 서기는 이 상소 청구서의 수령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것도 또한 전자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상소 청구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엔, 기간 내에 제출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방식으로 상소 청구서를 전달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소 관련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거해, 이후의 모든 제출은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상소를 제기하는 이는 결정을 내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속한 공의회 서기와 상소를 심리할 공의회 서기에게 상소 청구서 서면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상소를 심리할 공의회 서기는 피상소인 또는 피상소인들에게 상소 청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D-6.0202 상소 청구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

상소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상소를 제기하는 당사자의 이름 (상소인 또는 상소인들)과 변호인이 있는 경우, 그들의 변호인;
- b. 상대 당사자의 이름 (피상소인 또는 피상소인들)과 변호인이 있는 경우, 그들의 변호인;

- c. 상소의 근거가 된 결정을 내린 공의회;
- d. 결정문 사본;
- e. 상소의 근거가 된 결정의 오류라고 여기는 부분에 대한 설명.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1) 심판 절차에서의 부적법 행위;
 - (2)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가 발언하거나 증거를 확보 또는 제출할 기회를 거부당했을 경우;
 - (3) 부적절한 증언을 받았거나 또는 적절한 증거나 증언을 받길 거부했을 경우;
 - (4) 증거나 증언을 다 받기 전에 서둘러 결론을 내린 경우;
 - (5) 심판절차 진행 과정에서 편견이 표출된 경우;
 - (6) 심판절차 과정 또는 결정에서의 부당성;
 - (7) 헌법 해석의 오류.
- f. 상소를 하게 된 결정을 내린 공의회의 서기에게 D-6.0201에 따라 상소 청구서 사본을 제출한 증명서. 상소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합의한 경우에는 전자적 의사소통 형식도 가능함.

D-6.03 공의회 서기의 임무

서면 상소 청구서를 접수하면, 상소를 심리할 공의회의 서기는 이를 해당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임원과 상대측 상소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D-6.04 상소의 효력

D-6.0401 집행 정지가 없는 경우

상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상소의 근거가 된 결정을 실행하려는 공의회의 어떤 조치도 보류해서는 안된다. 다만 처음에 시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 정지를 확보했거나 다음 문단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집행 정지를 받은 경우엔 예외다. 이 경우에, 상소의 대상이 된 결정의 집행은 상소에 대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된다.

D-6.0402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상소의 근거가 된 결정이 이루어질 때 집행 정지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D-4.04에 설명되어 있는 방법으로, 또 D-4.05 또는 D-4.06에 설명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상소 청구서와 함께 집행 정지 요청서를 제출해 이를 요청할 수 있다.

D-6.05 상소 철회

시정 사건에서의 상소 관련 당사자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미국장로교 헌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그들 간의 다툼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를 권고한다. 상소 진행 과정에서 어느 때라도 시정 사건 상소 관련 당사자들이 상소를 심리하는 공의회의 서기에게 상소 철회서를 공동으로 제출하면, 서기는 상소가 철회되었음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철회(7) 일 이내에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이 그 철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법 절차는 종결된다. 해당 철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법적 절차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해당 철회가 정의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국장로교 헌법과 상충된다고 결론 지을 수 있고 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D-6.06 예비 절차

D-6.0601 상소 청구서 검토

상소 청구서가 접수되면, 상소를 심리하게 될 상위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상소 청구서를 즉각 검토해야 한다.

- a. 공의회가 관할권을 갖고 있는가;
- b. 상소인은 상소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가;
- c. 상소가 기한 내에 또 적합한 방법으로 청구되었는가;
- d. 상소문에는 D-6.0201d에 열거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상소의 근거를 언급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D-6.0602 예비 결정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임원은 예비 결정 단계에서의 그들의 결정을 상소 관련 당사자와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D-6.0603 예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상소 관련 당사자들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은 예비 결정을 받은 후 삼십(30) 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이의를 제기한 결정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상소 관련 당사자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은 이의 제기를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또는 모든 관련 당사자가 동의하면, 관련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기초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이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 이의제기에 대한 심리를 요청했으면, 상소에 대한 본안 심리 전 최소 삼십(30) 일 전에 동 이의제기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시간과 자원의 활용을 포함한 상황으로 인해 상소에 대한 심리 직전에 이의 제기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임원이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다. 전술한 네 개의 예비 질문에 대해 어느 하나라도 부정적인 답변을 하게 된다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결정하면, 전권위원회는 상소를 기각해야 한다.

D-6.0604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예비 결정에서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을 적용해야 한다:

- a. D-6.0701 의 필수 사항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임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추가 조치 또는 명령 없이 이 사건은 기각된다.
- b. D-6.0601의 모든 사항이 다 충족되었다는 임원들의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해당 공의회의 서기는 상소 관련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일에, 그리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정족수가 참석할 수 있는 기일에 심리 일정을 잡아야 한다.

D-6.07 사건 기록

D-6.0701 문서 목록

상소 청구서를 접수하고 사십오(45) 일 이내에 하위 공의회의 서기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기타 자료들의 목록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D-5.1001d & e 참조). 그 이후 십오(15) 일 이내에 양측은 해당 서기가 제출한 자료 목록의 완전성 또는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의거해 서기는 그 목록을 수정할 수 있으나 이는 필수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이의 제기는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D-6.0702 상소 관련 기록 제출

상소를 심리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속한 공의회의 서기가 사건이 받아들여졌다고 통지하면, 상소를 한 공의회의 서기는 사건 관련 기록을 상위 공의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이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D-6.0703 기록의 수정

어느 한 당사자에게 중요한 자료가 오류 또는 사고로 기록에서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누락과 오기는 수정될 수 있다. 상소 관련 당사자들이 해당 수정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 또는 하위 공의회의 서기가 보충 기록을 인증해서 전달할 수 있다. 또는 상위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해당 누락과 오기를 수정하도록 할 수 있다. 기록의 형태와 내용에 관한 모든 문제제기는 상위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해야 하며, 이와 같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소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기 전 최소 사십오(45) 일 이전에 적법하게 구성된 전권위원회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 이 회의는 G-3.0105에 따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D-6.08 변론요약서

D-6.0801 상소인의 변론요약서 제출

상소 기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삼십(30) 일 이내에 상소인은 상소 청구서에서 주장한 오류 사실에 대해 상술하고, 상소인의 주장을 지지하는 논쟁, 근거, 판례, 헌법, 법령 등을 담은 요약

서를 상위 공의회의 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기는 변론요약서 사본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과 피상소인에게 보내야 한다.

D-6.0802 상소인이 변론요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허용된 기간에 상소인이 변론 요약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못하면, 상임 사법 전권 위원회는 이를 상소 포기로 간주해야 한다.

D-6.0803 피상소인의 답변요약서 제출

상소인이 변론요약서를 제출하면, 피상소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다:

- a. 상소인의 변론요약서를 접수한 후 삼십(30) 일 이내에, 피상소인은 상소를 심리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속한 공의회의 서기에게 상소인의 변론요약서에 대한 답변으로 답변요약서를 제출한다.
- b. 피상소인은 상소가 제기된 결정과 관련된 사안을 추가로 그 답변요약서에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서기는 답변요약서 사본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과 상대측 상소 관련자에게 보내야 한다.

D-6.0804 피상소인이 답변요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허용된 기간에 피상소인이 답변요약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못하면, 이는 답변요약서 제출, 출두, 변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D-6.0805 상소인의 추가 변론요약서

피상소인이 추가로 사안들을 제기하면, 상소인은 삼십(30) 일 이내에 첫 변론요약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사안들에 대해 추가 변론요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서기는 추가 변론요약서 사본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과 상대측 상소 관련자 또는 관련자들에게 보내야 한다.

D-6.09 기간 연장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D-6.07 또는 D-6.08에 기재된 제한 기간을 합리적인 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D-6.10 기록과 요약서의 전달

기록과 요약서를 접수하면, 또는 이들을 제출할 기간이 다 되면, 상소를 심리할 공의회의 서기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에게 이 기록과 요약서를 전달해야 한다.

D-6.11 사전 심리 회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상소를 접수한 후 어느 때라도 관련 당사자들 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 그 변호인에게 사전 심리 회합에서, 상소가 제기된 어떤 사안에 대해 합의하도록, 또 논쟁을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좁혀 나가 그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하거나 규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회합의 결과 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합의에는 상소 철회 요청이 포함된다. 상소 철회 요청은 D-6.05에 의해 진행된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서기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직접 출두하거나 또는 변호인에 의해 대리 출두해 상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심리기일을 상소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소 관련 당사자가 직접 출두하지 못하거나 또는 변호인에 의해 대리 출두하지 못하면 이는 그러한 심리에의 참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동 심리에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상소의 근거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그 발언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당사자들에게 주어야 한다. 상소인은 모두진술과 최후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D-6.12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D-6.1201 검토 기준

심판절차를 진행했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내린 사실 관계에 대한 결정은 정확했다는 추정을 상소 시에도 해야 한다. 사실 관계에 대한 결정은 부정되어선 안된다. 다만 이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분명히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다. 미국장로교 헌법 조항의 올바른 해석, 적용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정확성 추정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D-6.1202 투표 절차

심리 후에, 또 개인적 숙의 후에,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상소인이 주장하는 각각의 오류 사실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해야 한다. 투표는 "오류 사실이 인정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투표이며, 이 투표는 개수 투표여야 한다. 각 오류 사실에 대한 투표 수를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다수결 투표로 각 오류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

D-6.1203 결정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문에는 명시된 오류 사실들에 대한 결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D-6.0101에 제시된 시정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모든 중요한 질문들을 반복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정문을 준비할 수 있다. 그 결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총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외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그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에게만 해당된다.
- b. 어떠한 오류 사항도 인정되지 않고, 또 다른 오류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하위 공

의회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한다.

- c. 한 가지 이상의 오류가 확인된 경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오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공의회의 결정을 확정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 위원회는 하위 공의회의 결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파기할 수도 있다. 부분적으로 파기할 경우, 위원회는 하위 공의회의 결정을 수정할 것인지, 또는 보류할 것인지, 아니면 사건 재심리를 위해 사건을 환송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 d. 결정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선, 상소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고 투표를 해야 한다. 결정에 대한 서면 개요를 회의 중에 준비해야 한다. 상소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패널 위원들은 서면으로 작성된 이 결정문을 검토해야 한다. 상소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전권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토할 수 있고, 또는 십(10) 일 이내에 직접 모여서 검토할 수 있으며, 또는 G-3.0105에 따라 전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e.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서면 결정문 사본에 서명하면, 그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 서면 결정문 사본은 D-4.0103b에 따라, 또는 상소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미리 합의된 경우엔 전자적으로, 상소 관련 당사자들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한다.

제 7 장 징계 절차

D-7.01 징계 절차

D-7.0101 목적

징계 절차에서는 교회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지게 한다. 한 개인에 의해 신뢰가 깨졌다는 내용의 혐의가 제기되면, 신앙 공동체 내에 그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교회의 징계는 징벌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교회의 교인들을 인도하고, 통제하고, 양육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며, 오류를 시정하고 억제하기 위함이다. 징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속에 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와 긍휼을 성취하며, 성도가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오류를 수정하거나 억제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평화와 일치를 회복시키며, 심판절차의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결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D-7.0102 징계 절차의 시작

징계 절차는 교회 활동교인 또는 미국장로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위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그 회원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당회의 서기 또는 노회의 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되면 시작된다. 조사 위원회의 조사와 당회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심판절차 후에, 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유책 결정을 받은 사람은 미국장로교에 의한 문책을 받게 된다.

D-7.0103 위법 행위의 정의

위법 행위는 성경 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교인 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모든 행위 또는 불행위이다. 위원회, 전권위원회, 또는 공의회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에 참여한 단순 행위는 위법 행위가 아니다.

D-7.0104 마감일과 제출

제출 마감일 결정 방법과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마감일

어떤 서류가 적기에 제출되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서류 제출 기간의 시작을 야기하는 사건의 다음 날이 동 기간의 시작일이 된다. 예를 들어 조사 위원회의 첫 번째 모임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 또는 당사자가 결정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이 후속 제출 서류의 제출 기간 시작일이 된다. 날짜를 계산할 때에는 공휴일을 포함해서 주 칠일이 다 포함된다. 서류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서류가 해당 기간 최종일 당일 또는 그 전에 도달되었다면, 서류는 적기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해당 기간의 최종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서류가 최종일 다음 영업일에 도착하면 서류는 적기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b. 제출 방법

모든 제출 요구 서류는 미국 우정국의 접수 영수증 첨부 등기 우편, 배달 확인 영수증 첨부 상업 택배, 인편 배달, 또는 이 규정에 허용되어 있는 한에서 전자적으로 전달하거나 배달할 수 있다.

D-7.02 혐의 제기

D-7.0201 혐의

징계 사안과 관련해 혐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용된다:

a. 기간 제한

위법 혐의가 있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 후엔 서면 혐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D-7.0901 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성적 학대의 사건은 예외로 한다. 이 사건들의 경우엔 5년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D-7.0901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성적 학대 관련 합리적인 위험성을 인지했거나 합리적으로 인지했어야 하는 사람이 이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이에 대하여도 혐의제기 기간의 제한이 없다.

b. 누가 제기할 수 있는가

모든 미국장로교 교인은 미국장로교 교회 성도 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해 서면으로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미국장로교 교인이 아닌 사람은 본인을 대신해 미국장로교 회원이 혐의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c. 혐의 제기의 내용

혐의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법 혐의가 제기된 행위 또는 행위들에 대한 서면 진술서; 그리고
- (2) 진실로 판명되면 문책을 받게되는 사실들.

d. 혐의 사항의 제출

피혐의자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의 서기에게 혐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1) 위법 혐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파송 사역장로로 섬기고 있지 않은 교회 성도에 대해 혐의가 제기되었으면, 해당 피혐의자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당회 서기에게 혐의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 (2) 위법 혐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노회 목사 회원 또는 파송 사역장로인 사람에게 혐의가 제기되었으면, 해당 피혐의 노회 회원 또는 파송 사역장로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노회의 서기에게 혐의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e. 위법 행위 의심 정황을 어떤 출처를 통해 알게된 회원들

미국장로교 회원들은 여하한 출처를 통해서든지 미국장로교 다른 회원의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되면, 피혐의자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에게 혐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가 미국장로교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서면 진술문을 받았는데, 이 진술문에 조사해 봐야 할 충분한 정보가 있고, 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입증하는 충분한 정보가 있으면,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는 그 비회원을 대신해서 그 혐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 이들은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그 자격을 잃었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공의회는 그와 같은 경우에 "혐의제기자"의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규정상 정할 수 있다.

f. 본인에 대한 혐의 제기

미국장로교 회원은 본인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당회의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에게 본인에 대한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

D-7.0202 해명 확인 요청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미국장로교에게 소명이 되지 않는 출처에서 비롯된 소문이나 험담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미국장로교 회원은 해명을 위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해명에 대한 요청은 혐의를 제기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사용해서 안된다.

- a. 해명을 요청하는 회원은 해당 소문이나 험담을 기록한 진술문을 해당 회원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 b. 공의회는 D-7.0501a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c. 조사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사실과 정황을 확인해야 하며,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1) 그 첫 번째 회의 후 일 년 내에 그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공의회에 보고함. 공의회는 해당 서면 보고서를 위원회 회의록에 첨부하고 사안을 종결지음,
 - (2) 모든 증거를 비교하고 검토한 끝에, 피조사인이 성경 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위법 행위를 범했다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중요한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분명히 확신이 들면, 해당 피조사인에 대해 D-7.15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징계심판을 청구함.
 - (3) 미국장로교 회원 한 명 이상이 위법 행위를 범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회원들에 대한 하나 이상의 서면 혐의서를 해당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에게 제출함.

D-7.03 관할권

D-7.0301 일차 관할권

각 공의회는 그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책임지며 그 회원들에 대한 모든 혐의 제기와 심판절차에 관한 일차 관할권을 지닌다. 다만 D-7.0201d(2)에 제시된 경우엔 예외다.

D-7.0302 일차 관할권에 대한 예외 사항

D-7.0301에서 언급된 일차 관할권에 대한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노회가 특정 사역에 파송한 사역 장로는 D-7.0201의 조항을 따른다.
- b.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본인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노회를 벗어나 다른 노회의 지리적 영역 내에서 사역하거나 거주하면, 그 목사가 회원으로 속해 있는 노회는 그 회원이 그 영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다른 노회가 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그 조사 보고서를 그 목사가 회원으로 속해 있는 노회의 서기에게 보내며, 징계 조사, 다른 해결책, 또는 심판절차와 관련해 그 목사가 회원으로 속해 있는 노회와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공의회들이 연합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위원회의 비용은 같이 부담해야 한다. 관할권은 그 목사가 회원으로 속해 있는 공의회에 있다.
- c. 피혐의자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공의회 외의 공의회 내에서 기인한 사건과 혐의가 관련되어 있으면, 관할권을 지닌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는 징계심판청구 여부와 심판절차의 결과를 그 다른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나 공의회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 d. 관할권을 지닌 공의회가 징계 사건에 대한 징계심판청구가 이루어진 후 육십(60) 일 이내에 그 특정 사안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바로 위의 상위 공의회가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 상위 공의회는 해당 사안의 처리에 관해 하위 공의회에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거나 그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e. 혐의를 받는 교회 회원 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G-2.0407 또는 G-2.0509에 의거해 미국장로교의 관할권을 거부하는 경우에, 징계 절차의 관할권은 종결된다. 이 경우에, 당회 서기 또는 노회 서기는 관할권 거부와 그 거부 시의 사안의 상태를 해당 공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피혐의자의 이름, 조사 또는 심판절차 중의 관할권 거부 일시와 사실, 징계심판청구가 이루어졌으면 그 징계심판청구 사실을 같이 보고해야 한다. 징계심판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위법 혐의 행위의 성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 (1)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G-3.0109b(6)에 따라 목회 차원의 조사를 해달라고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에게 어느 때라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의회는 이를 논의해야 한다.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면, 공의회는 그 사안을 조사하도록 구성될 후속 위원회 또는 전권위원회의 위원에 이전 조사 위원회의 위원들을 규정상 임명할 수 있다.

- (2) 만약 피혐의자가 사망했거나 미국장로교 관할권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경우, 조사 위원회 또는 징계심판청구 위원회는 혐의제기자와,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피해자들이 G-3.0109b(6) 조항에 따라 목회적 차원의 조사를 계속하기를 공의회에 요구할 것인지, 또는 다른 위법행위(들)에 대해서 별도의 목회적 차원의 조사의 진행을 공의회에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혐의제기자와 피해자들에게 확인해야 한다. 이들이 그와 같은 요청을 하면, 또는 조사 위원회나 징계심판청구 위원회가 이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 위원회나 징계심판청구 위원회는 이에 대해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와 의사소통해야 한다.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는 그 사안을 공의회에 제출해 논의하게 해야 한다. 그 목회적 차원의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정보는 해당 공의회만 보유해야 하며, 일정 시점에서 D-7.1501c와 관련된 상황의 경우 이 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f. 한 노회에서 다른 노회로 전입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그 다른 노회가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원 노회의 관할권에 귀속된다. 노회에 의해 다른 교단으로 전출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그 새 교단이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노회의 관할권에 귀속된다.
- g. 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 당회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아직 종결되지 않은 징계 사건에 대해서는 노회가 결정해야 한다.

D-7.04 회부 의뢰서

D-7.0401 회부 의뢰서의 정의

징계 절차에서의 회부 의뢰서는 당회가, 또는 노회나 대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다음 상위 공의회에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게 다음 사안에 대해 제출하는 서면 요구서다:

- a. 위법 혐의 행위에 대한 조사와 모든 후속 사안들 (D-7.05와 그 다음 사항들),
- b. 징계심판청구 제기 이후의 사안들 (D-7.15와 그 다음 사항들), 또는
- c. 징계 사건의 상소에 대한 하위 공의회 심리

D-7.0402 하위 공의회 의무

하위 공의회는 상위 공의회에 보내는 회부 의뢰서에 그 회부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고 그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이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 상위 공의회에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그 사안을 D-7.0404b에 의거해 되돌려 보내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회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징계심판 또는 상소 심리를 포함한 모든 징계심판절차는 이후 상위 공의회에서 이루어진다.

D-7.0403 상위 공의회 의 임무

회부 요청을 받음과 동시에, 상위 공의회는 서기는 그 요청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전달해 그 사건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D-7.0404 회부 요청에 대한 조치

회부 요청에 대해 조치하고자 할 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다음의 조치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다.

- a.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회부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공의회 서기에게 지시해야 한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징계심판절차나 상소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 b. 상위 공의회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사건에 대한 회부 요청을 기각하고, 그 이유를 적시해 하위 공의회에 돌려 보낼 수 있다. 당회 또는 하위 공의회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조사, 징계심판절차, 상소 심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 c. 회부 요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상위 공의회가 그 사건에 대한 회부 요청을 받아들일지 또는 기각할 지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공의회, 관련 당사자, 또는 조사 위원회에 의한 조치의 모든 마감일이나 기한은 연기되어야 한다.

D-7.05 조사

D-7.0501 조사 위원회로의 회부

당회의 서기나 노회의 서기는 혐의 사항을 접수하면, 추가 조사 없이, 피혐의자의 이름이나 위법 행위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다만 위법 행위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을 공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혐의 사항 진술문을 조사 위원회에 즉시 회부해야 한다. 혐의 사항 진술문이 회부되면, 조사 위원회는 아래에 규정된 대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당회의 서기나 노회의 서기는 혐의제기자에게 징계 절차에 대해서 알리고, 이 절차에서의 그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

- a. 당회는 규정상 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당회의 상위 공의회는 규정상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b. 혐의 사항 접수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당회는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노회에 회부를 요청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D-7.04).
- c. 해당 회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당회 서기나 공의회 의 서기가 아닌 다른 당회 서기나 공의회 의 서기가 혐의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이 다른 당회 서기나 노회의 서기는 해당 회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당회의 서기나 노회의 서기에게 혐의 사항 진술문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관련된 공의회들은 D-7.0301c.에 따라 일을 진행해야 한다.

D-7.0502 회원 자격 이전

조사나 징계심판청구가 진행 중일 때, 당회는 해당 성도가 회원 자격을 이전하는 것을 허가해서는 안되며, 노회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 회원 자격 이전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회원 자격 이전을 허가하지 않는 이유를 당회 서거나 노회 서기가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D-7.06 조사 위원회의 위원 자격

조사위원회는 5인 이하 3인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다른 공의회 회원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당회는 현재 당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로를 조사 위원회에 임명해서는 안된다. 조사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미국장로교의 회원이어야 한다.

D-7.07 조사 위원회의 비용

조사 위원회의 비용은 조사 위원회를 구성한 공의회가 지불해야 한다. D-7.0301c에 따라 합동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엔 비용도 서로 분담해야 한다.

D-7.08 보조적인 역할

다음의 사람들은 이 항목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징계 절차 과정에서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D-7.0801 변호인

이 항목에서 언급되는 변호인은 유급 대리인 또는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변호인은 미국장로교의 회원이어야 한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그 전권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그 전권위원회에 변호인으로 출두할 수 없다.

D-7.0802 옹호자

옹호자의 역할은 혐의제기자, 피해자, 또는 피혐의자를 복돋아 주고 상담하며 목회적으로 돌봐주는 것이다. 옹호자는 미국장로교의 회원일 필요는 없다.

D-7.0803 조정인

조정인을 활용하는 경우, 이들은 침착하고, 현명한 조언을 하며,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어야 한다. 변호사 또는 공인 조정인일 필요는 없다. 이들은 미국장로교의 회원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들은 *규례서*의 징계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노회가 잠재적인 조정인들을 사전에 정할 수 있다.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는 조정 관련 모든 비용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지불해야 한다.

D-7.09 성적 학대 관련 혐의 제기

D-7.0901 정의

성적 학대는 18세 미만의 사람, 동의할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강제, 위협, 강압, 협박, 직제사역이나 직위의 오용을 당한 이들과 관련된 성적 행위를 둘러싼 위법 행위이다. 성적 학대는 성과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므로 항상 징계의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이다.

D-7.0902 직위 해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한 혐의를 처리할 때에, 직위 해제나 기타 제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D-7.0901에 정의된 성적 학대에 대한 혐의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해 접수된 경우, 그 혐의를 접수한 공의회는 D-3.0102에 따라 지명된 3명의 위원들에게 그 혐의 사항을 즉시 전달해야 한다.
- b. D-3.0102에 따라 지명된 위원들은 혐의 사항 진술문을 검토하고 피혐의자에게 발언 기회를 준 후, 혐의의 성격과 잠재적 사실성에 비추어 판단할 때, 교회에 대한 위험성 또는 학대로 인한 잠재적 희생자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에 그 목사에게 대한 직위 해제 또는 기타 제재가 필요한지 여부를 가능한 한 빨리,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직위 해제 또는 제재는 징계 절차에 명시된 방법 중 하나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전권위원회 위원이 직위 해제 또는 제재를 변경하거나 제거할 때까지 계속된다.

D-7.0903 직위 해제의 효력

직위 해제 동안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목회, 행정, 교육 또는 감독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성례전, 장례식, 결혼식의 집전과 같은 기능을 행하지 않는다. 미국장로교 관할권을 벗어나 특수 사역을 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한 직위 해제의 효력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목회 승인의 정지이며, 이는 노회의 서기를 통해 고용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D-7.0904 직위 해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D-3.0102에 따라 지명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이 직위 해제나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혐의 진을 조사하도록 임명된 조사 위원회는 직위 해제나 기타 제재의 부과를 지지하는 위원들에게 조사 과정에서 어느 때라도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D-7.0905 직위 해제에 관한 노회 정책

이 항목의 어떤 내용도 노회가 직위 해제나 목사의 사역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자체 규칙을 수립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D-7.10 징계 절차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책임

D-7.1001 혐의제기자의 권리

조사위원회는 혐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알려야 한다:

- a. 공정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을 권리.
- b. 조사 위원회, 징계심판청구 위원회,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위원회와 만나야 할 때마다 옹호자를 동반할 권리. 옹호자의 역할은 격려해 주며 묵회적으로 돌봐주는 것이다. 옹호자는 혐의제기자를 대신하여 위원회,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없다.
- c. 징계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징계심판청구와 관련된 모든 공개 절차에 대해 합리적이고 시기 적절한 통지를 받고 출석할 권리. 단, 혐의제기자가 심판절차 과정에서 다른 이의 증언을 들었을 경우, 혐의제기자의 증언이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징계심판청구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D-7.1002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권리

적절하게 비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사 위원회는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서에 언급된 당사자들에게 다음의 권리들을 알려야 한다:

- a. 공정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을 권리.
- b. 조사 위원회, 징계심판청구 위원회,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위원회와 만나야 할 때마다 옹호자를 동반할 권리. 옹호자의 역할은 격려해 주며 묵회적으로 돌봐주는 것이다. 옹호자는 혐의제기자를 대신하여 위원회,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없다.
- c. 징계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징계심판청구와 관련된 모든 공개 절차에 대해 합리적이고 시기 적절한 통지를 받고 출석할 권리. 단, 피해를 입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심판절차 과정에서 다른 이의 증언을 들었을 경우, 피해를 입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증언이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징계심판청구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D-7.1003 피혐의자의 권리

조사 위원회, 징계심판청구 위원회,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와의 회의가 시작될 때마다, 조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피혐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 a. 전체 징계 절차 기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 b. 공정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을 권리.
- c.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비로 고용한 변호인에 의해 변론받을 권리와 옹호자를 동반할 권리. 옹호자의 역할은 격려해 주며 묵회적으로 돌봐주는 것이다. 옹호자는 혐

의제기자를 대신하여 위원회,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없다.

- d. 후에 징계심판청구가 이루어지면, 징계심판청구와 관련된 모든 공개 절차에 대해 합리적이고 시기 적절한 통지를 받고 출석하며, 변호인의 변론을 받고 (D-7.0104), 또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변호인을 지정받을 권리.

D-7.1004 조사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사에 협조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에는 적절한 기록의 보존과 절차 진행 동안의 기밀 유지가 포함되지만, 이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D-7.1003 참조).

D-7.11 조사 과정

D-7.1101 예비 검토

조사 위원회는 구성 후 육십 일 이내에 첫 번째 회의를 열어 혐의 사항을 검토하고,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D-7.0103의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혐의들을 제기했는지 결정해야 한다.

- a. 위법 행위에 대한 혐의가 제시되지 않았으면, 조사 위원회는 이 사실을 당회 서기나 공의회의 서기에게 보고하고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 b. 그 혐의가 피혐의자에 대해 이전에 제기된 혐의들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결정하면, 조사 위원회는 징계심판불청구 처분을 내릴 것임을 공의회의 서기에게 보고 해야 한다. 다만 조사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정보가 그 혐의 사항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 혐의 사항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조사의 대상일 경우에는 예외다.
- c.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서기는 혐의 제기자와 피혐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 d. 보고서를 받은 후 삼십(30) 일 이내에, 혐의 제기자는 조사 위원회의 징계심판불청구 결정에 대한 검토를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 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D-7.1402).

D-7.1102 피조사인들에게 통지

만일 조사 위원회가 D-7.0103에 정의된 위법 행위 혐의가 있다고 결정하면, 조사 위원회는 가능한한 빨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해야 한다:

- a. 피혐의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1) 조사 위원회의 첫 회의 날짜. 이 날로부터 징계심판청구 제기 기간인 일 년의 기간이 시작된다(D-7.1501).
 - (2) 조사의 이유. 위법 혐의 행위에 대한 진술서 사본을 첨부함. 조사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혐의제기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을 수 있다.
 - (3) 조사 과정의 비밀 유지, 그리고

- (4) D-7.1003와 D-7.1004에 규정된 피혐의자의 권리와 책임
- b. 혐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다음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1) 조사 위원회의 첫 회의 날짜. 이 날로부터 징계심판청구 제기 기간인 일 년의 기간이 시작된다(D-7.1501).
 - (2) 조사 과정의 비밀 유지.
 - (3) 혐의제기자, 그리고 피해자가 있다고 밝혀진 경우, 피해자의 D-7.1001, D-7.1002, D-7.1004에 규정된 권리와 책임, 그리고
 - (4)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혐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계속 상황을 알리겠다는 조사 위원회의 약속. 여기에는 가능한 경우 징계심판청구 제기 여부도 포함된다.

D-7.1103 조사의 진행

조사 위원회는 위법 혐의 행위에 대한 사실과 정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조사의 내용은 기밀 사항으로 처리된다. 정보는 조사 위원회가 공의회의 서기 또는 당회의 서기와 협의하여 결정 한 바에 따라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알려주는 방식으로 공유된다.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피혐의자는 무혐의로 추정된다고 명시해야 한다. 조사 위원회는 공의회 정서기 또는 당회 서기에게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야 한다.

조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관련 자료, 문서, 기록을 검토한다.
- b. 위법 행위 혐의에 대해 알고 있는 증인들을 가능한대로 모두 확인해 조사한다.
- c. 피혐의자가 위법 혐의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G-3.0102와 D-7.0103에 따라 결정한다.
- d. 모든 증거를 비교하고 검토했을 때, 징계심판청구 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실들이 진실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도록, 위법 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 e. 피혐의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에 보고하거나, 합동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위원회의 징계심판청구 여부만 양 공의회에 보고한다.
- f. 징계심판청구가 제기될 경우, D-7.1503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사건 징계심판청구를 위해 한 명 이상의 위원을 지명한다. 그리고,
- g. 징계심판청구에 따른 심판절차 외의 대안이 있는지 확인한다(D-7.16 참조).

D-7.1104 회부 요청

조사 위원회는 첫 회의 후 육십(60) 일 이내에 어떤 이유로든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 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D-7.04에 따라 공의회가 회부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D-7.12 조사 절차 검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조사 과정 중 어느 때라도 조사 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검토를 당회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D-7.1201 검토 사항

이 검토 사항에는 위원회가 D-7.1003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 위원회가 적절하게 증거를 추적했는지 여부, 조사 위원회가 검토 중인 증거를 제대로 잘 다루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위원회가 피혐의자가 제시한 관련 증거를 조사했는지 여부로 제한된다.

D-7.1202 검토의 수행

검토는 D-3.0102에 따라 지명된 3명의 위원들이 수행해야 한다. 지명된 세 명의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검토 과정에서 심리가 열릴 수 있는데, 이 심리에는 조사 위원회와 피혐의자가 출두할 수 있다. 검토는 청원서 제출 후 사십오(45)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결정 사항은 조사 위원회, 피혐의자,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 그리고 공의회 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D-7.13 조사 위원회의 결론

조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 a. 징계심판청구하지 않음(D-7.14),
- b. 징계심판청구하고 심판절차를 진행함(D-7.15), 또는
- c. 대체안을 첨부해 징계심판청구함(D-7.16).

D-7.14 징계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D-7.1401 서면 보고서

징계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조사 위원회는 징계심판불청구 사실만을 기록한 서면 보고서를 당회 서기나 노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당회의 서기나 노회의 서기는 징계심판 불청구 결정을 혐의제기자와 피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D-7.1402 결정에 대한 검토

징계심판불청구 결정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한다:

- a. 보고서를 받은 후 삼십(30) 일 이내에, 혐의를 제기한 사람은 조사 위원회의 징계심판 불청구 결정에 대한 검토를 당회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 b. 청원은 조사 위원회가 D-7.10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제기해야

한다.

- c. 조사 위원회는 청원서에 제기된 사실들에 대한 서면 답변을 삼십(3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d. D-3.0102에 따라 지명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은 청원서와 답변서를 검토해야 하는데, D-7.10에 명시된 의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조사 위원회의 징계 심판불청구 결정이 징계 절차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청원서와 답변서에 대한 결정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서 지명한 위원들이 구십(90) 일 이내에 해야 한다.
- e. 그와 같이 지명받은 위원들이 청원서의 주장을 인정하면, 당회 또는 노회는 재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재조사 위원회는 징계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첫번째 회의로부터 육(6) 개월이나 본 마감 기한 중 어느 것이든 더 늦은 기한까지 결정해야 한다.
- f. 그와 같이 지명받은 위원들이 청원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는 재조사 위원회가 징계심판불청구 결정을 내리면, 징계 절차는 종결된다. 조사 위원회의 기록은 당회나 노회의 방침에 따라 최소 10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D-7.15 징계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D-7.1501 징계심판청구 제기의 기한

혐의 사항 진술문이 접수된 경우, 조사 위원회의 첫 회의 날짜로부터 일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징계심판청구할 수 없다. 다음의 경우엔 예외다.

- a. 조사 대상인 피혐의자에 대한 일반사회 법원의 사법 절차가 시작된 사안의 경우, 조사 위원회는 당회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요청해서, 일반행정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나 그로 인한 재판이 끝난 후 육개월까지 징계심판청구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당회의 서거나 공의회의 서기는 행정기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일반법원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파악해야 한다.
- b. D-7.0901에 규정되어 있는 타인에 대한 성적학대 사안의 경우, 5년의 혐의 제기 기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D-7.0901에 규정되어 있는 타인의 성적 학대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위험성을 인지한 사람 또는 합리적으로 인지했어야 하는 사람이 이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엔 이에 대한 혐의 제기 기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시기와 관계없이 징계심판청구가 이루어진다.
- c. 이전에 노회원이었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이전에 교회의 활동교인이었던 이가 징계 절차 진행 중에 관할권을 거부했다가 다시 교회의 활동교인(G-1.0402)이 되거나, 또는 노회의 회원(G-2.0502, G-2.0503)이 된 경우, 이들에 대해서 다시 혐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후 절차는 새롭게 시작되며 일 년의 기한이 적용된다. 관할권

을 거부했던 회원이 미국장로교에 재가입했다는 사실을 당회의 서기 또는 공의회의 서기가 인지한 때로부터 기간 제한이 시작된다. 관할권을 거부한 시점에 징계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징계심판청구 위원회에 심판절차 전까지 최소 육 개월의 시간이 부여 된다. 새 징계심판청구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면, 이 위원회에 심판절차 전 까지 최소 구 개월의 시간이 부여 된다. 피혐의자는 조사나 심판절차가 진행 중일 때 교회의 직제사역을 맡아선 안된다.

D-7.1502 조사 위원회의 의무

조사 위원회가 징계심판청구 제기를 결정하면, 동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징계심판청구가 제기될 것을 피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각각의 징계심판청구 사실을 목록화해 적음.
- b. 징계심판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심판절차에서 제시할 사실들을 요약해 기재함, 그리고
- c. 징계심판청구 위원회에서 활동할 한 명 이상의 위원을 지명함. 징계심판청구 위원회는 사건을 징계심판청구하며 상소 중에는 교회를 대표해야 한다. 징계심판청구 위원회는 공의회의 판단에 따라 조사 위원을 추가로 영입할 수 있다.

D-7.1503 징계심판청구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은 하나의 위법행위만 명시해야 한다.

- a. D-7.0103의 정의에 따르면, 위법 행위는 성경 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교인 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모든 행위 또는 불행위이다.
- b. 위반된 성경 또는 헌법의 구체적인 조항 또는 조항들이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명시되어야 한다.
- c.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번호를 매겨야 하며, 위법 행위 발생 시간, 장소, 상황을 가능한 한 기록해야 한다. 동일한 위반 사항이 여러 번 발생한 경우, 이를 통합해서 징계심판청구할 수 있다.
- d. 심판절차에서 입증하려는 사실들의 요약문을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첨부해야 한다.
- e. 조사 위원회는 징계심판청구 제기를 당회의 서기나 노회의 서기에게 해야 한다.
 - (1) 당회의 서기가 징계심판청구 제기를 접수하면, 해당 서기는 당회의 다음 회의에 이 징계심판청구 사실을 제출하며, 그 사건에 대해 심리할 것인지 아니면 노회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D-7.04).
 - (2) 노회의 서기가 징계심판청구 제기를 접수하면, 해당 서기는 이 징계심판청구 사실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D-7.16 대안적 해결책

D-7.1601 대안적 해결책의 시도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고 징계심판청구문이 작성되었으나 아직 징계심판청구가 제기되지 않았을 때 대안적 해결책을 시도할 수 있다.

조사 위원회는 대안적 해결책에 대한 합의 내용을, 그 승인을 위해 징계심판청구문과 같이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 대안적 해결책의 결과물은 피혐의자와 조사 위원회가 서명한 합의문이어야 하며, 징계심판청구문과 함께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대안적 해결책의 조건들은 징계심판청구 가능 기간인 일 년의 시간 내에 합의되고 제출되어야 하나, 회복적 정의에 대해 D-7.1603에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다. 상호 합의에 의해, 조사 위원회와 피혐의자는 그 대안적 해결책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징계심판청구 제기 기한을 최대 60 일 동안 연장해 줄 것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그 대안적 해결책을 위한 노력이 실패하거나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서 합의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이 절차 상에서 또는 이 절차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서면 또는 구두 진술도 후속 조사 또는 심판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조정 비용 또는 회복적 정의 절차 촉진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심판절차를 담당하는 공의회가 사전에 논의를 하고 지불해야 한다.

D-7.1602 대안적 해결책의 종류

대안적 해결책은 이 세가지 중 하나일 수 있다: 회복적 정의, 조정, 또는 기타 협상.

D-7.1603 회복적 정의

피혐의자가 유책을 인정하고 피해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피해를 회복하고 위법 행위의 원인을 시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조사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사 위원회는 관련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회복적 정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회복적 정의 절차가 시작되면, 조사 위원회는 합당한 기간 내에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가 달성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징계심판청구 기간을 한 번 이상 연장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a. 회복적 정의의 목적

- (1) 회복적 정의는 위법 행위 혐의를 받는 사람들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유책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책임을 질 시간을 갖고 피해자는 개인적인 회복의 시간을 가질 때, 회복적 정의를 심판절차 전에 활용할 수 있으며, 또는 피혐의자가 유책 결정을 받은 후 치유 과정의 일환으로 회복적 정의를 활용할 수 있다. 회복적 정의를 심판절차 이전에 그 대안적 해결책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요청하고 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공

의회는 언제든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2) 회복적 정의는 용서나 화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서하거나 화해하라는 압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용서 또는 화해의 결정은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내려야 한다.

b. 회복적 정의의 실행

회복적 정의는 네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따라서 진행된다.

- (1)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인가?
- (2)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3) 이 필요를 해결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 (4) 공동체에 온전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회복적 정의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절차를 조정해야 하며, 이 절차 상에서 각 당사자들의 역할과 필요를 존중해야 한다. 각 당사자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1) 피해를 입은 이들. 이들은 위법행위자들과의 직접 또는 간접 접촉을 주선받아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진실을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정의실현을 위한 절차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으로부터의 개인적 회복을 위해 지원받을 필요가 있고, 상징적 보상 행위를 통해 명예를 회복받을 필요가 있다. 이 상징적 보상 행위에는 위법 행위자 그리고/또는 공동체의 공식 사과문이 포함될 수 있다.
- (2) 위법 행위자. 이들은 발생한 피해에 집중하고 공감해야 하며 수치를 전환시킬 책임을 지고, 외상 장애, 중독, 또는 해로운 행위를 야기하는 기타 문제들로부터의 개인적인 치유를 위해 지원받을 필요가 있으며, 개인적인 역량과 영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공동체로의 복귀를 위한 격려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위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적인 또는 영구적인 직무제한이나 면직처분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 (3) 공동체들. 이들은 공동체가 경험한 피해와 정서적 충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자원과 기회를 활용해 공동체의 책임과 신뢰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와 위법 행위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돌볼 책임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위법 행위자들이 다시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당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D-7.1604 조정

피해의자가 유책을 인정하고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의지가 있지만, 회복적 정의 절차가 불

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조사 위원회는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정의와 공훈을 베풀고 피혐의자에게는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조정이라는 대안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조사 위원회는 무너진 신뢰를 신앙 공동체라는 더 큰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며, 그 신뢰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 이 절차에서 활동하는 조정인들과 주선인들은 침착하고 현명하게 조언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나, 변호사나 공인 조정인일 필요는 없다. 조정인이나 주선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규례서* D 항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갔을 경우, 노회들은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기술을 갖춘 이들을 활용해야 한다. 조정된 합의서에는 피혐의자가 유책을 인정한 징계심판청구 사실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이에 따른 문책 권고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D-7.1605 협상을 통한 기타 합의 사항

정의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사 위원회는 협상 합의서를 대안적 해결책의 일부로 제출할 수 있다. 그 합의서에는 피혐의자가 유책을 인정한 징계심판청구 사실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이에 따른 문책 권고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피혐의자 혹은 피혐의자의 변호인과의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 위원회는 협상 합의서의 근거에 대해 혐의제기자, 밝혀진 경우, 피해자와 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적 학대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 합의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D-7.1606 당회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조치

서명이 된 대안적 해결책을 받으면, 당회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다음을 위해 모여야 한다:

- a. 합의서, 징계심판청구문을 접수함. 또 합의서 채택 근거에 대한 조사 위원회의 설명문을 접수함;
- b. 투표 자격이 있는 구성원의 최소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를 승인함(D-3.0602);
- c. D-8.1201d의 규정에 따라, 피혐의자의 이름, 징계심판청구 내용, 그리고 문책을 받는 경우, 문책을 포함한 해당 절차의 진행 상황을 기록함; 그리고
- d. 해당 결정을 당회의 서기나 공의회의 서기에게 전달하고, 이들은 D-9.0102에 따라서 이를 보고해야 함.
- e. 만일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대안적 해결책에 대한 합의를 삼분의 이의 투표로 승인하지 않는다면, 조사 위원회는 일년 기한 내에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 위원회에 제출할 다른 대안적 해결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혹은
- f. 대안적 해결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사 위원회는 징계심판청구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기된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대해 절차를 진행한다.

제 8 장 징계 사건에서의 심판절차

D-8.01 사전 심리 절차

D-8.0101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

모든 징계 사건은 미국장로교의 이름으로 공의회가 징계심판청구 위원회를 통해 제기하고 징계심판청구한다. 징계심판청구 위원회는 교단을 대표하며,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해당 공의회는 모든 권리를 갖는다. 징계 사건의 당사자들은 징계심판청구 위원회와 피혐의자이다.

D-8.0102 자료 전달과 의사소통

사건 관련 자료와 사건 관련 의사소통에 관해선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 a.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사건을 심리하는 당회의 서기나 노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종 결정 전까지는, 징계 사건 당사자 또는 그들의 변호인 또는 어느 누구라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자료, 즉 서면 자료, 인쇄 자료, 전자물, 시각 자료들을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전달되게 해서는 안된다. 전술한 직접제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혹은 추가 자료 제출을 허가할 수 있다.
- b. 사건 관련 당사자나 그들의 변호인은 사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당회원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과 의사소통해서는 안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와 그들의 변호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D-8.0103 사전 심리 회합

사전 심리 회합은 미리 일정을 정해야 하며, G-3.0105에 따라서 온라인 회의로 열릴 수 있다.

- a. 사건을 심리할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징계심판청구(들)를 접수했음을 확인한 후 사십오(45)일 이내에 사전 심리 회합을 열어야 한다. 해당 당회의 당회장과 서기 또는 그들의 지명인, 혹은 해당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 또는 그들의 지명인은 사전 심리 회합의 장소와 일시를 정하고 당회나 전권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를 진행해야 한다.
- b. 당회의 서기 또는 공의회는 피혐의자,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혐의자의 변호인, 그리고 징계심판청구 위원회에 사전 심리 회합의 일시와 장소를 알리고 이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 c. 피혐의자는 사전 심리 회합에 당연히 출석한다. 만일 피혐의자가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전 심리 회합은 피혐의자의 부재와 상관없이 진행해야 한다.
- d. 사전 심리 회합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지명인은 다음을 해야 한다:

- (1) 교회 권징편 서문(D1)을 크게 소리내어 읽음;
- (2) 절차 전반에 걸쳐 변호를 받을 권리와 침묵할 권리가 있음을 피혐의자에게 알람;
- (3) 만일 피혐의자가 변호인을 고용할 여력이 없다면,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 위원회는 피혐의자의 재정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만일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피혐의자를 위해 변호인을 지명해야 한다. 변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공의회가 이를 지불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 (4) 피혐의자에게 징계심판청구 내용을 읽어준다. 그리고;
 - i. 피혐의자와 징계심판청구 위원회와 함께, 논쟁의 여지가 없는 혐의들을 결정하고 정식 심판절차에 대한 대안을 논의한다.
 - ii. 징계심판청구의 적절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듣고, 일부 징계심판청구를 기각하거나 통합하며 수정을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당회의 당회장과 서기, 또는 그들의 지명인, 혹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 또는 그들의 지명인은 논쟁이 되는 모든 사실을 심판절차에 회부해야 한다.
 - iii.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대해 유책 또는 무혐의를 주장하는지 기록을 위해 피혐의자에게 묻는다.
- (5)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을 지지하는 기록과 문서에 대해서 피혐의자에게 설명하고, 당시까지 파악한 증인 목록과 그들이 가지는 심판 사안과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 (6) D-7.10에 따른 검토 청원 보고서를 검토한다.
- (7) 당회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심판절차 시작 전에 해결할 필요가 있는,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사전심리 안건에 대해 당사자, 당사자의 변호인과 협의할 수 있다. 당회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에 따라 마감일과 심판절차 심리기일을 정해야 한다.

사전 심리 회합에서 취한 모든 조치는 예비적이며, 심판절차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D-8.0104 사전 심리 회합과 심판절차 사이의 기간

사전 심리 회합과 심판절차 사이에 취해야 할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a. 당회장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은 사전 심리 회합 후 적어도 육십(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절차가 열리도록 일정을 정해야 한다. 피혐의자가 모든 징계 심판청구 사실에 대해 유책을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는 열리지 않는다. 징계 청문회는 사전 심리 회합이 열린 지 적어도 삼십(30) 일이 지난 후에 해야 한다.

- b. 심판절차 전 최소 사십오(45) 일 이전에, 징계심판청구 위원회는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와 상대방에게 심판절차에서 제시할 증인 목록과 증거의 개요를 제공해야 한다. 피혐의자는 당회 서기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서기와 상대방에게 증인 예비 목록을 제출해야한다. 심판절차 당사자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들은 상대방의 증인을 심판절차 전에 접촉해서는 안된다.
- c.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심판절차 당사자 간의 대안적 해결책에 대해 항상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해당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전적인 판단에 따라 심판절차를 계속 진행하며 D-7.16에 설명된 대안적 해결책 절차를 허용할 수 있다.

D-8.02 심판절차 진행

D-8.0201 징계 사건의 심판절차

징계 사건의 심판절차는 당회 또는 노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진행한다.

- a. 심판절차는 심판절차에 적합한 중립적인 장소에서 심판절차의 격식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b. 진술의 전자적인 제출에 대해 D-8.04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절차는 직접 대면 출석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단독 재량으로, 심판절차는 G-3.0105에 따라 전자적으로 열릴 수 있다. 심판절차에 사용된 기술을 통해 증인, 당사자, 당회원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그들의 말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 c. 투표권이 있는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삼분의 이가 유책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징계 사건의 피혐의자는 무혐의로 추정해야 한다(D-3.0602 참조).

D-8.03 소환과 증언

D-8.0301 소환

사건 관련 당사자 또는 양측이 요청한 증인의 심판절차 출석 통보 소환장에는 당회의 당회장 또는 서기 혹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서기가 서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공의회의 서기가 송달해야 한다. 증인은 사실증인 또는 전문가증인이 될 수 있다(D-8.0704b 참고).

D-8.0302 소환 대상자

미국장로교의 회원만이 출석 의무가 강제되는 소환의 대상이 된다. 미국장로교 회원이 아닌 사람과 전문가 증인 (소속 교단과 상관없이)에게는 심판절차 출두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D-8.0303 다른 공의회 소속의 증인

다른 공의회의 관할권에 속해 있는 증인을 소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건을 다루는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심판절차에 관련된 공의회의 서기를 통해 그 다른 공의회의 서기에게 신청한다. 그러면 그 다른 당회 또는 공의회의 서기는 심판절차에 출두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도록 증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D-8.0304 비용

증인은 심판절차에 출석하여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본인을 소환한 심판절차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

D-8.0305 소환장 송달

소환장은 D-4.0103b에 따라 송달되거나, 또는 전자적으로 전달하되 수신자가 칠(7)일 내에 확인해야 한다. 사건을 심리하는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송달 또는 발송 사실과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만일 사건 당사자 또는 증인이 심판절차 출두 소환(D-8.0302)을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심판절차에 출석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여 이에 따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언을 거부하면, 당사자 또는 증인은 불복종죄나 모욕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인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공의회는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D-8.04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된 증언

G-3.0105와 D-8.02의 규정에 따라, 대면으로 열리는 심판절차에 증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당회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이들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출석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D-8.05 심판 절차

D-8.0501 변호인

징계 사건 관련 당사자는 변호인과 함께 출두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대리할 수 있다. 변호인은 유급 대리인 또는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변호인은 미국장로교의 회원이어야 한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동 전권위원회 위원인 상황에선 해당 전권위원회에 변호인으로 출두할 수 없다.

D-8.0502 심판절차 진행 상의 통제

당회장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은 심판절차의 진행을 통제하고 모든 당사자, 증인, 변호인, 청중의 행동을 통제할 전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진다. 여기에는 퇴장 조치도 포함된다. 이는 적절한 존엄과 품위가 유지되게 하기 위함이다. 심판절차 통제와 관련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 당회원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이 전체 당회 또는 전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으며, 당회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과반수 투표로 이 문제를 결정한다.

D-8.0503 절차 상의 문제

심판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나 증거의 허용 여부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가진 후에 위원장이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나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해당 조직체에 상소할 수 있다. 해당 조직체는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D-8.0504 심판절차 불참

당회 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은 대면 출석 방식으로 심판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심판절차가 시작되었는데 당회 회원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이 심판절차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심판절차의 심리와 결정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D-8.0505 비공개 진행

심판 절차는 일반적으로 공개적 방식으로 한다. 그러나 심판절차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절차 상 어느 단계에서라도 출석 회원의 삼분의 이의 투표로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와 그 변호인 외의 사람들을 제외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D-8.0506 정족수의 미달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심판절차는 무효가 되며,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 위원회가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처음부터 사건심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D-8.06 징계심판절차

D-8.0601 위원장의 지침 안내

징계 사건의 심판절차는 기도로 시작하고, 그 후 위원장은 '교회 권징' 편의 서문(D-1)을 크게 낭독하며, 해당 공의회가 심판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야 한다. 또 위원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의회 심판관으로서의 위원들의 고결함과 그들이 맡을 엄숙한 임무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D-8.0602 관련 당사자의 이의 제기

당사자 또는 그들의 변호인은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구성과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a. 당회원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사건의 결과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족 관계로 어느 당사자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어느 당사자를 위한 혹은 그와 다투는 측을 위한 변호인으로 섭겼으면, 그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b. 심판절차 당사자는 이해상충을 이유로 당회원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의 정당성은 나머지 당회원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이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결정한다.

D-8.0603 예비 결정과 이의 제기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모든 예비 결정과 모든 이의 제기를 기록해야 하며, 이 모든 사안들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또한 예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나 심판 절차의 순서나 질서에 대해 영향을 주는 기타 이의 제기도 기록해야 하며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증거를 심리하고 최종변론을 듣기 전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다.

D-8.0604 유책 또는 무혐의 인정

피혐의자는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대해서 "유책"인지 혹은 "무혐의"인지 주장해야 한다. 그 인정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만일 피혐의자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무혐의"를 주장한 경우, "무혐의"를 주장했음을 기록하고 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일 피혐의자가 모든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대해 "유책"을 인정하면, 해당 공의회는 D-8.0903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단, 당사자들이 D-7.16에 따라서 대안적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다.

D-8.0605 모두 진술

모두 진술을 할 기회를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에게 주어야 한다. 징계심판청구 위원회부터 진술한다.

D-8.07 증거

D-8.0701 정의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증거에는 증인의 구두 증언이 포함되며, 사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제시된 기록물, 글, 물건, 기타 물품도 증거에 해당된다. 증거는 반드시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야 접수되며, 다른 증거 채택의 토대를 놓는 증거 또한 받아들일 수 있다. 관련성이 있는 증거는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데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한다. 토대를 놓는다는 것은 제시된 다른 증거의 진실성과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예비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성 있는 증거는 어떤 사안이 그러한 사안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말한다. 그 입증능력의 요구치에 관하여는 직접증거와 정황증거 간에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D-8.0702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

공의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문서 기록물과 공인된 증언 기록물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 a. 공의회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공인된 문서 기록물은 심판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 b. 공의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받은 공인된 진술 기록은 다른 공의회에서의 어느 심판절차 단계에서든지 받아들여야 한다.

D-8.0703 전해 들은 증거

전해들은 증거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당회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그 주장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이다. 징계 절차 시 공의회가 증인에게 증언을 강제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고, 또 조사 역량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전해 들은 증거는 허용된다.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전해 들은 증거의 신뢰성이나 그 비중을 결정해야 한다.

D-8.0704 증인

증인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 a.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는 누구라도 증인의 증언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회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 증인의 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 당회원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은 누구라도 상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 b. 증언을 위해 소환된 각 증인은 증언할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증인의 어떤 증언이라도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받아들이기 위해선, 이 증언은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적합한 근거를 지녀야 한다. 증인이 증언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고 그러한 의견이나 기타 증언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증인이라도 전문 의견 또는 기타 증언을 제시할 수 있다.
- c.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의 변호인은 여하한 기밀 사항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해당 변호인은 자신이 대리하는 심판절차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여하한 사안에 대해서도 증언할 수 없다.
- d. 공의회의 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을 자문하도록 공의회가 정식으로 임명한 사람은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서 증언해서는 안된다. 예외적으로, 해당 증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러한 제한을 면제시킬 수 있다.
- e. 신빙성은 증인의 증언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의미한다. 증인의 신빙성을 결정할 때,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증언의 정확성이나 증인의 진실성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고려할 수 있다.
- f. 결혼한 사람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증언 자격을 갖추었으면, 배우자를 지지하거나 배우자에 반대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해 반대하는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아선 안된다.

- g.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증인에게 증언을 강요할 수 없는 근거로서 기타 기밀유지 특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기타 특권에는 치료사-환자, 의사-환자, 목사-성도, 변호사-고객 간의 특권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D-8.0705 증언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일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 a. 위원장의 지시나, 또는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 어느 한 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증인을 심문하는 동안 사실증인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된다. 전술한 규정은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 변호인, 또는 전문 지식을 증언하기로 사전에 결정된 증인이 심판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 b. 증인들을 소환한 당사자 측이 먼저 증인들을 심문하고, 그 후에 상대방 측에서 증인들을 반대 심문해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이 추가 질문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재심문, 반대 재심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라도 추가로 질문할 수 있다.
- c. 증언을 하기 전, 증인은 다음 질문에 동의함으로써 선서를 해야 한다: “본 사안에 대해 당신이 제시하는 증거는 오직 진실임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까?”
- d. 만일 증인이 위와 같이 선서하기를 거부할 경우, 다음 질문에 동의해야 한다: “증언 하도록 소환받은 본 사안에 대해 당신은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엄숙히 확약합니까?”
- e. 각 증인의 증언은 공인 기록원 또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기타 도구-여기에는 디지털 음성 녹음도 포함됨-를 통해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 f. 심판절차에 직접 출석할 수 없다면, 증인들은 D-8.04의 조항들에 따라 전자적인 방식으로 출석할 수 있다.
- g.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증언할 수 있으나, 증언 이후에는 사건에 참여할 수 없다.

D-8.08 최후 진술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최후 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징계심판청구 위원회에게는 변론을 시작하고 끝낼 권리가 있다. 변론이 끝나면 심판절차는 기도로 종결해야 한다.

D-8.09 결정

D-8.0901 심의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비공개로 소집해 심의해야 한다. 당회원이거나 전권위

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D-8.0902 유책 결정

징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공표된다:

- a. 신중하게 심의한 후,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별로 투표하고 그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모든 증거를 비교하고 검토한 끝에, 징계심판청구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실들이 진실되었다고 분명한 확신이 들면,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은 피혐의자가 유책임을 결정할 수 있다. 투표 자격이 있는 당회원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의 최소 삼분의 이가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대해 유책 결정을 내릴 수 없다 (D-3.0602 참조).
- b.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대한 결정을 진술한 결정문은 당회 또는 위원회 기간 중에 준비해야 한다.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서면 결정문 사본에 서명하면, 그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
- c.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당회장 또는 위원장은 공개 회의에서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대한 평결을 각각 공표해야 한다.

D-8.0903 문책의 강도에 대한 결정

피혐의자가 유책으로 판정된 경우, 혹은 피혐의자가 유책을 인정한 이후,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손상 정도, 경감, 재교육, 배상과 관련된 증거를 유책 결정 이후 삼십(3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양측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 본 혐의제기자, 또는 본 혐의제기자의 대리인이 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위법 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 결과 진술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심판절차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이 진술은 반대 심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피혐의자는 발생한 피해를 해결하고 피해자(들), 교회와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비공개로 소집해 문책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공개 회의에서 당회장 또는 전권위원회 위원장은 문책을 공표해야 한다.

D-8.10 제출과 당사자에게 통보

D-8.1001 즉시 제출

결정문은 즉시 당회의 서기 또는 공의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D-8.1002 당사자에게 통보

결정에 대한 통보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당회의 서기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서면 결정문 사본을 D-7.0104b

에 따라, 또는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미리 합의된 경우엔 전자적 방식으로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 b.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서기는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그 결정 사항을 알려야 한다.

D-8.11 새로 제출된 증거

D-8.1101 상소 제기 이전

상소를 제기하기 전, 그러나 상소신청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책 결정을 받은 이는 누구라도 새롭게 발견된 증거에 기초해 새로운 심판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가 합리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는 점, 충분히 노력했지만 이전 심판절차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제시될 수 없었다는 점이 소명되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새로운 심판절차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이 서류 중일 때 접수된 상소 신청은 심판절차를 진행했던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그 결정을 내릴 때까지 보류되어야 한다. 하위 공의회의 서기나 당회의 서기는 이러한 결정을 상위 공의회에 알려야 한다.

D-8.1102 상소 제기 이후

유책 결정을 받은 사람이 상소를 신청한 후에, 상소 신청 전에는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보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를 유책 결정을 받은 사람이 확보했을 경우, 상소 신청을 받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재량에 따라 이 사건을 새로운 심판절차로 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소는 심판절차를 진행했던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새로운 심판절차에 대한 결정을 보고할 때까지 유예되어야 한다. 새로 확보한 증거 인정 신청은 심판절차 관련 상대 당사자에게 보내는 사본과 함께 적어도 심리 삼십(30) 일 전에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해야 한다. 증거 설명 요약문을 추가해 증거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D-8.12 징계심판절차 과정에 대한 기록

D-8.1201 서기의 의무

당회 서기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 a. 모든 증언과 구두 기록을 정확하게 그대로 녹음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함. 구두 기록은 디지털 음성 녹음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음;
- b. (증거 채택 여부를 기록해 두며,) 증거로 제시된 모든 증거자료들을 식별하고 잘 보관하며, 증거물들의 목록을 작성함;
- c. 심판절차 진행 과정을 의사록에 기록함. 사건과 관련해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정한 조치나 명령을 기록하되 그에 대한 투표 현황도 포함해야 함;

- d. 사건 기록을 준비함. 사건 기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함:
 - (1) 징계심판청구 사실
 - (2) 각 징계심판청구 사실에 관해 피혐의자가 제출한 유책 혹은 무혐의 인정 기록
 - (3) 요청받았을 경우, 공식 녹취록
 - (4) 적절하게 표시된 모든 증거물, 기록, 문서, 기타 서류
 - (5) 각 징계심판청구사실에 대한 평결과, 공의회가 부과한 문책이 있는 경우, 그 등급을 포함하는 서면 결정문.
 - (6) 사건과 관련된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모든 조치나 명령과 각각에 대한 투표 기록;
- e. 당회 서기는 최소 십(10) 년간 사건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기록 보관에 관한 공의회의 정책을 따라야 함.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진 후 삼십(30) 일 이내에 사건 관련 기록을 인증하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노회의 서기에게 전달해야 함. 해당 노회는 사건 관련 기록을 최소한 십(10) 년간 보관해야 하며 기록 보관에 관한 해당 공의회의 정책을 따라야 함;
- f.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한 당사자의 비용으로, 당회 서기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심판절차 과정의 모든 진술과 구두 절차 기록에 대한 진실되고 완전한 녹취록이 준비되도록 한다. 이 녹취록 사본은 녹취한 사람이 이를 진실되고 완전하다고 인증한 후에 심판절차 관련 각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D-10.0602에 의거해 상소를 할 때 보내야 하는 기록에 추가할 수 있도록 이 녹취록 사본 한 부를 더 만들어야 한다.

D-8.1202 기록 추가

심판절차 진행의 책임이 있는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에 의해 결정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누구도 사건의 기록을 보충하거나 사건 기록에 추가할 수 없다.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당회의 서기 또는 공의회의 서기가 서면으로 기록 보완 요구를 접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요구를 고려해서는 안된다.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당회의 서기 또는 공의회의 서기는 접수된 서면요구를 당회장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자료 보충 요구서 사본을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모든 당사자들은 십(10) 일 이내에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D-8.13 집행

당회 또는 노회가 심판절차를 종결하고, 피혐의자가 유책 결정을 받았으며, 결정 사항이 다음 장에 기록된 문책과 함께 발표되면, 당회 또는 노회는 상소 여부와 관련없이 결정 사항을 집행해야 한다. 문책에서 요구한 재교육에 대한 감독도 이에 포함된다. 집행 정지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제 9 장 징계 사건에 있어서 문책과 복권

D-9.01 문책

D-9.0101 문책의 등급

교회 문책은 그 등급에 따라 질책;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 병행 질책; 집사, 사역 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경우에는 직제사역에서, 또 안수받지 않은 교회 성도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에서의 임시 배제; 직제사역 또는 회원 자격 박탈이 있다. 문책은 그 어떤 것이든지, 악이나 보복으로 시행되어서는 안되며, 과오를 바로잡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문책은 교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면 안된다.

D-9.0102 결정과 문책에 대한 보고

징계 사건의 결정과 문책에 대한 공개 구두 보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a. 문책이 한 교회 회원에게 부과된 경우, 당회는 G-1.0503g에 따라 공동의회를 소집해 결정과 문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성도들에게 구두로 보고할 때에는 결정 사항과 문책을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위법 행위에 대한 설명, 문책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문책의 종류는 이에 포함해야 한다. 이 요약 내용은 공동의회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 b. 노회가 문책을 실행하는 경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로부터 결정과 문책을 받아 공의회가 모이는 경우, 공의회 서기는 이 결정 사항과 문책을 즉시 보고하고 그 공의회 회의록에 결정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공의회가 모이지 않는 경우, 해당 공의회 서기는, 그 공의회 첫 번째 회의 또는 연기된 회의 또는 그 결정 사항을 듣기 위한 임시 회의 중 가장 먼저 소집되는 회의에서, 그 결정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그 공의회 회의록에 그 결정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공의회에 구두로 보고할 때에는 결정 사항과 문책을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으나 위법 행위에 대한 설명, 문책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문책의 종류는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문책이 교회 성도에게 실행되는 것이면, D-9.0102c의 규정도 따라야 한다.
- c.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에 그 회원이 파송 사역 장로였기 때문에, 또는 상위 공의회가 D-7.0301d 나 D-7.0401에 따라 관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회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아닌 개인을 문책하는 경우, D-9.0102b에 의거해 결정과 문책이 보고되면, 그 결정과 문책은 그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당회 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당회 서기는 그 당회 첫 번째 또는 연기된 회의와 그 결정 사항을 듣기 위한 임시 회의 중 먼저 소집되는 회의에서 그 결정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그 당회 회의록에 그 결정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당회에 구두로 보고할 때에는 결정 사항과 문책을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으나 위법 행위에 대한 설명, 문책을 받는 사람

의 이름과 문책의 종류는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당회는 G-1.0503g에 따라 공동 의회를 소집해야 하고 위의 D-9.0102a 에 서술된 대로 결정문을 보고해야 한다.

D-9.0103 질책

질책은 위법 행위에 대한 가장 낮은 단계의 문책이며 선고되는 순간 완결된다. 이는 위법 행위의 성격과 질타의 공개로 구성된다. 다음 양식 또는 그와 유사한 양식으로 이를 선포한다:

“귀하, (이름) _____은(는) _____(여기에 위법 행위를 요약해 기록함)의 위법 행위(들)로 유책 결정을 받았으며, 그러한 위법 행위(들)로 인해 귀하는 성경 그리고/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바, 그러므로 이제 당회 또는 _____노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본 위법 행위에 대해 정죄를 표명하고 당신을 질책합니다. 이 질책은 악의나 보복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귀하의 과오를 바로잡고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귀하가 앞으로 더 주의하고 이러한 위법 행위를 피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도를 힘써 사용하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이 공식적인 질책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이어진다.

D-9.0104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 병행 질책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 병행 질책은 두 번째로 낮은 단계의 문책이다. 이는 위법 행위 성격과 질타, 그리고 본 항목 b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지시한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 기간의 강제로 구성된다.

- a. 목표 전달 - 당회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감독 기관과 문책을 받는 사람에게 재교육의 목표와 감독관(들)이 가지는 특정 권한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
- b.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 -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요에는 진전을 평가하는 방법과 감독 받는 재교육이 만족스럽게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그 시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c. 자발적인 회개 행위 - 재교육 프로그램은 자기 스스로 질책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자발적인 회개의 행위(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에는, 예를 들어, 공개적인 책임의 인정, 공동체 봉사,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실 또는 지출에 대한 상징적 또는 금전적 복구가 포함될 수 있다.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자발적인 회개 행위를 요구하거나 권장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수는 있다.
- d. 문책 선고- 다음의 양식 또는 유사한 양식으로 이 문책을 선포한다:

“귀하, (이름) _____은(는) _____의 위법 행위(들)로 유책 결정을 받았으며, 그러한 위법 행위(들)로 인해 귀하는 성경 그리고/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바, 그러므로 이제 당회 또는 _____노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

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본 위법 행위에 대해 정죄를 표명하고 귀하를 질책하며, 다음에 명기한 것과 같이 _____의 감독을 받는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완수할 것을 귀하에게 명령합니다: _____ . 이 질책은 악의나 보복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귀하의 과오를 바로잡고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행됩니다. 귀하는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이러한 위법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순종하도록 은혜의 방도를 힘써 행할 것을 권합니다.

이 공식적인 질책 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이어진다.

D-9.0105 임시 배제

임시 배제는 보다 가중된 위법행위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문책이다. 당회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명령한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이 완료될 때까지 실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한으로 정해진 기간이 포함될 수 있다. 임시 배제는 안수 받은 교인을 직제사역에서 배제하는 것이며 안수 받지 않은 교인에게서 회원 자격을 배제하는 것이다. 임시 배제 기간에는 회원 자격을 이전할 수 없다.

- a. 목표 전달 - 당회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감독 기관과 문책을 받는 사람에게 재교육의 목표와 감독관(들)이 가지는 특정 권한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
- b.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 -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요에는 진전을 평가하는 방법과 감독받는 재교육이 만족스럽게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그 시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c. 자발적인 회개 행위 - 재교육 프로그램은 자기 스스로 질책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자발적인 회개의 행위(들)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에는, 예를 들어, 공개적인 죄의 인정, 공동체 봉사,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실 또는 지출에 대한 상징적 또는 금전적 복구가 포함될 수 있다.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자발적인 회개 행위를 요구하거나 권장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수는 있다.
- d. 직제사역 수행으로부터의 임시 배제의 효력 - 직제사역 수행의 임시 배제 기간 동안, 임시 배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직제사역의 어떤 기능도 행사할 수 없다. 이 임시 배제 기간동안 해당 사람은 개체교회나 노회의 회원 자격을 잃지는 않지만, 교단의 어느 공의회에 참여하거나 투표할 수 없으며, 직위를 가질 수 없고, 위원회나 전권위원회에서 일할 수 없다. 단 해당 사람은 위원회나 전권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발언할 수는 있다. 임시 배제에 놓인 사람은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성례전을 집례해서는 안되며, 예배를 인도해서도 안되며, 당회를 진행해서도 안된다.
- e. 회원 자격 임시 배제의 효력 - 안수 받지 않은 교회 성도에 대한 회원 자격 임시 배제 기간에, 임시 배제를 받는 사람은 본인이 속해있는 교회의 예배와 생활에 계속해

서 참여할 수 있으나, 교회의 회의에 참여해 투표하고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되며, 교회나 교단 공의회 내의 지도자 직책을 맡을 수 없다.

- f. 목사에 대한 임시 배제의 효력 - 만일 개체교회와 목회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G-2.0504)가 직제사역 수행에서 임시 배제 상태에 있다면,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상소가 진행 중이 아니라면, 노회는 이 목회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 g. 임시 배제 통보 -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관련되어 임시 배제라는 문책이 선고되면, 노회 서기는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즉시 총회 정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그리고 총회 정서기는 이러한 종류의 정보에 대해 교단의 모든 노회에 분기별로 보고를 해야 한다.
- h. 임시 배제 문책의 종료 - 선고받았던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이 끝나면, 임시배제 문책을 받는 사람은 당회 서기나 공의회 서기를 통해서 공의회에 서면으로 복권을 신청해야 한다. 이 문책을 명령했던 공의회는 선고했던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완전히 확신할 경우 복권을 승인할 수 있다. 모든 조건 완료에 대한 기간 제한을 문책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조건들이 다 완료되지 않으면, 공의회는 그 재량에 따라 특정 조건에 대해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또는 임시 배제를 영구화할 수 있다.
- i. 조기 복권 - 직제사역의 수행이나 회원 자격에 대해 일시적으로 배제되는 문책을 받고 있는 사람은 문책에 포함된 최소한의 기간 이전에 문책으로부터 복권해달라고 문책을 명령한 공의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공의회 서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의회는 이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할 때에 이러한 복권을 승인할 수 있다.
- j. 문책 선고- 다음의 양식 또는 유사한 양식으로 이 문책을 선포한다:

"귀하, (이름) _____은(는) _____(이곳에 위법 행위를 기재함)의 위법 행위(들)로 유책 결정을 받았으며, 그러한 위법 행위(들)로 인해 귀하는 성경 그리고/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바, 그러므로 이제 당회 또는 _____노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귀하를 최소 _____의 기간 동안, _____의 감독 하에 다음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할 때까지 _____에서 임시 배제함을 이제 선포합니다: _____.

_____이 배제는 악이나 보복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귀하의 과오를 바로잡고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행됩니다."

이 공식적인 선고 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이어진다.

D-9.0106 직제사역 그리고/또는 회원자격 박탈

직제사역 그리고/또는 회원 자격의 박탈은 문책의 가장 높은 등급이다. 직제사역 박탈은

유책으로 결정된 사람의 안수와 선출을 취소하고, 직제사역을 박탈하되, 회원자격은 그대로 두는 것이다. 회원자격 박탈은 유책으로 판단된 사람의 회원자격을 종료하고, 해당 사람을 모든 명부에서 삭제하고, 그 사람의 안수와 직제사역에 대한 선출을 취소하는 것이다.

- a. 직제사역 박탈의 결과 - 만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회원 자격 박탈없이 직제사역만 박탈당했다면, 노회는 해당 목사가 선택한 개체교회로 이 목사의 회원자격을 이전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개체교회의 당회 또는 운영 조직의 승인이 필요하다. 만일 목사가 특정 개체교회와 목회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G-2.0504), 문책으로 인해 이 관계는 자동으로 종결된다.
- b. 박탈 통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해 박탈이라는 문책이 선고되면, 노회 서기는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즉시 총회 정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그리고 총회 정서기는 이러한 종류의 정보에 대해 교단의 모든 노회에 분기별로 보고를 해야 한다.
- c. 문책 선고- 다음의 양식 또는 유사한 양식으로 이 문책을 선포한다:

“귀하, (이름) _____은(는) _____(이곳에 위법 행위를 기재함)의 위법 행위(들)로 유책 결정을 받았으며, 그러한 위법 행위(들)로 인해 귀하는 성경 그리고/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바, 그러므로 이제 당회 또는 _____노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귀하를 _____(모든 직제사역과 선출직으로부터의 박탈, 또는 회원 자격으로부터의 박탈인지 여기에 명시함)으로부터 제외하고 박탈합니다. 이 박탈은 악의나 보복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귀하의 과오를 바로잡고, 위법 행위(들)가 야기한 불화와 분열을 교회로부터 없애 교회의 일치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행됩니다.”

이 공식적인 선고 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이어진다.

D-9.02 복권

D-9.0201 회원자격 혹은 직제사역의 복권

직제사역 박탈이나 회원 자격 박탈이라는 문책을 받은 사람은 문책을 명령한 공의회에 의해서 복권될 수 있다. 이는 해당 공의회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완전히 확신할 때 가능하다. 해당 사람은 회원 자격 복권을 위해서 신앙을 재확인한다. 그리고/혹은 직제사역의 복권을 위해서 다시 안수를 받는다.

D-9.0202 회원 자격의 복권

회원 자격의 복권은 다음 형식 혹은 유사한 형식으로 공의회 회의에서 의장이 공표한다:

"귀하, (이름) _____은/는 교단이 확신할 수 있도록 회개하였으므로, _____노회(혹은 당회)는 이제 이 재확인 행위에 의해서 회원자격을 온전히 복권합니다."

- a. 그 후에 재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복권대상자의 이름이 해당 명부에 복원되거나 회원 증명서가 그 사람이 선택한 교회로 발급되어야 한다.
- b. 만일 회원이 직제사역에 있어서도 복권된다면, 직제사역 복권(D-9.0203)에 명시된 대로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D-9.0203 직제사역으로의 복권

직제사역의 복권은 다음 형식 혹은 유사한 형식으로 공의회 회의에서 의장에 의해서 공표된다:

"귀하 _____는 교단이 확신할 수 있도록 회개하였으므로, _____ 노회(혹은 당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 안수의 행위를 통해서 이제 당신을 _____의 직제사역으로 복권시키고 이러한 사역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후, W-4.04에 따라서 온전한 안수식이 거행되어야 하고 해당 복권대상자의 이름은 해당 명부에 다시 올려져야 한다.

제 10장 징계에 대한 상소

D-10.01 상소 제기

D-10.0101 정의

징계 사건에서의 상소는 심판 절차와 결정에 대한 수정, 변경, 보류, 번복을 위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위 공의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을 다음 단계의 상위 공의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D-10.0102 상소 개시

상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징계심판절차 결정문이 그 유책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전달되었거나 거부된 날짜로부터 시작된다.

- 위법 행위에 대해 유책 결정을 받은 사람만이 상소의 첫 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
- 첫 단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양측 당사자 누구라도 상소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D-10.0103 관련 당사자들

징계 사건 상소 당사자들은 유책 결정 받은 사람과 문책을 부과했던 미국장로교 징계심판 청구 위원회이다.

D-10.02 상소 청구서

D-10.0201 상소청구서 제출

상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최종 명령서 사본을 접수한 후 사십오(45) 일 이내에 서면 상소 청구서를 다음 상위 공의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면 상소 청구서는 전자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서기는 청구서를 받았음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것도 또한 전자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상소 청구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엔, 기간 내에 제출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방식으로 상소청구서를 전달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소절차 관련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거해, 이후의 모든 제출은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상소를 제기하는 이는 결정을 내린 당회의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 상소를 심리할 공의회 서기에게 상소 청구서 서면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상소를 심리할 공의회 서기는 피상소인 또는 피상소인들에게 상소 청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D-10.0202 상소청구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징계에 대한 상소 청구서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상소를 제기하는 당사자의 이름 (상소인)과, 변호인이 있는 경우, 그들의 변호인;
- b. 상대 당사자의 이름 (피상소인)과, 변호인이 있는 경우, 그들의 변호인;
- c. 상소의 근거가 된 결정을 내린 공의회;
- d. 결정문 사본; 그리고
- e. 상소의 근거가 된 결정의 오류라고 여기는 부분에 대한 설명.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1) 심판절차에서의 부적법 행위;
 - (2)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가 발언하거나 증거를 확보 또는 제출할 기회를 거부당했을 경우;
 - (3) 부적절한 증거나 증언을 받았거나, 또는 적절한 증거나 증언을 받길 거부했을 경우;
 - (4) 증거나 증언을 다 받기 전에 서둘러 결론을 내린 경우;
 - (5) 심판절차 진행 과정에서 편견이 표출된 경우;
 - (6) 심판절차 과정 또는 결정에서의 부당성;
 - (7) 헌법 해석의 오류, 그리고
 - (8) 부당하게 심한 정도의 문책.

f. 상소의 이유가 된 결정을 내린 해당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에게 상소 청구서 사본을 D-10.0201에 따라 전달했음을 보여주는 인증 문서. 상소 관련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했다면, 이 인증 문서는 전자적 의사소통의 형태일 수도 있다.

D-10.03 서기의 임무

서면 상소 청구서를 접수하면, 상소를 심리할 공의회의 서기는 이를 해당 공의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임원과 상대측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소 청구서가 적절하게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면, 하위 공의회에 의한 향후 절차는 상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되지만, 예외적으로 모든 문책은 실행될 수 있다.

D-10.04 상소 철회

징계 사건에서의 상소 관련 당사자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미국장로교 헌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그들 간의 다툼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를 권고한다. 상소 진행 과정에서 어느 때라도 징계 사건 상소 관련 당사자들이 상소를 심리하는 공의회의 서기에게 상소 철회서를 공동으로 제출하면, 서기는 상소가 철회되었음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철회(7)일 이내에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이 그 철회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으면, 사법 절차는 종결된다. 해당 철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법적 절차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대다수는 해당 철회가 정의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국장로교 헌법과 상충되어 그 요청을 거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D-10.05 예비 절차

D-10.0501 상소 청구서 검토

상소 청구서가 접수되면, 상소를 심리하게 될 상위 공의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상소 청구서를 즉각 검토해야 한다.

- a. 공의회가 관할권을 갖고 있는가,
- b. 상소인은 상소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가,
- c. 상소가 기한 내에 또 적합한 방법으로 청구되었는가, 그리고
- d. 상소문에 D-10.0202e에 열거되어 있는 상소의 근거를 하나 이상 언급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D-10.0502 예비 결정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임원은 예비 결정 단계에서의 그들의 결정을 상소 관련 당사자와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D-10.0503 예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상소 관련 당사자들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은 예비 결정을 받은 후 삼십(30)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련 당사자들은 이의를 제기한 결정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 상소 관련 당사자들은 이의 제기를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또는 모든 관련 당사자가 동의하면, 관련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기초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이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 이의제기에 대한 심리를 요청했으면, 상소에 대한 본안 심리 전 최소 삼십(30)일 전에 동 이의제기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시간과 자원의 활용을 포함한 상황으로 인해 상소에 대한 심리 직전에 이의 제기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임원이 결정한 경우엔 예외다. 네 개의 예비 질문에 대해 어느 하나라도 부정적인 답변을 하게 된다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결정하면, 전권위원회는 상소를 기각해야 한다.

D-10.0504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예비 결정에서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을 적용해야 한다:

- a. D-10.0501의 필수 사항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임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추가 조치 또는 명령 없이 이 사건은 기각된다.

- b. D-10.0501의 모든 사항이 다 충족되었다는 임원들의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해당 공의회는 서기는 상소 관련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일에 그리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정족수가 참석할 수 있는 기일에 심리 일정을 잡아야 한다.

D-10.06 사건 기록

D-10.0601 문서 목록

상소 청구서를 접수하고 사십 오(45) 일 이내에 당회 서기 또는 하위 공의회는 서기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기타 자료들의 목록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D-8.1201d & e 참조). 그 이후 십오(15) 일 이내에 양측은 해당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가 제출한 자료 목록의 완전성 또는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의거해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 서기는 그 목록을 수정할 수 있으나 이는 필수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이의 제기는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D-10.0602 상소 관련 기록 제출

상소를 심리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속한 공의회는 서기가 사건이 받아들여졌다고 통지하면, 상소한 당회의 서기 또는 공의회는 서기는 사건 관련 기록을 상위 공의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며, 상위 공의회는 서기는 이를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D-10.0603 기록의 수정

어느 한 편 당사자에게 중요한 자료가 오류 또는 사고로 기록에서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누락과 오기는 수정될 수 있다. 상소 관련 당사자들이 해당 수정 사항을 인종할 수 있다. 또는 당회 서기나 하위 공의회는 서기가 보충 기록을 인종해서 전달할 수 있다. 또는 상위 공의회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해당 누락과 오기를 수정하도록 할 수 있다. 기록의 형태와 내용에 관한 모든 문제제기는 상위 공의회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같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소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기 전 최소 사십 오(45) 일 이전에 적법하게 구성된 전권위원회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 이 회의는 G-3.0105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D-10.07 변론 요약서

D-10.0701 상소인의 변론요약서 제출

상소 기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삼십(30) 일 이내에 상소인은 상소 청구서에서 주장한 오류 사실에 대해 상술하고, 상소인의 주장을 지지하는 논쟁, 근거, 판례, 헌법, 법령 등을 담은 요약서를 상위 공의회는 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기는 변론요약서 사본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과 피상소인에게 보내야 한다.

D-10.0702 상소인이 변론요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허용된 기간에 상소인이 상소 이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못하면, 상임 사법 전권 위원회는 이를 상소 포기로 간주해야 한다.

D-10.0703 피상소인의 답변요약서 제출

상소인의 변론요약서를 접수한 후 삼십(30) 일 이내에, 피상소인은 상소를 심리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속한 공의회의 서기에게 상소인의 변론요약서에 대한 답변으로 답변요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기는 답변요약서 사본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과 상대측 상소 관련자에게 보내야 한다.

D-10.0704 피상소인이 답변요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허용된 기간에 피상소인이 답변요약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못하면, 이는 답변요약서 제출, 출두, 변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D-10.0705 상소인의 응답 변론요약서 제출

피상소인의 답변요약서를 받고 십오(15) 일 이내에, 상소인은 피상소인의 답변요약서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만 응답 변론요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공의회의 서기는 그러한 응답 변론요약서 사본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과 피상소인에게 보내야 한다.

D-10.08 기간 연장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D-10.06 또는 D-10.07에 기재된 제한 기간을 합리적인 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D-10.09 기록과 요약서의 전달

기록과 요약서를 접수하면, 또는 이들을 제출할 기간이 다 되면,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에게 이 기록과 요약서를 전달해야 한다.

D-10.10 사전 심리 회합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상소를 접수한 후 어느 때라도 관련 당사자들 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 그 변호인에게 사전 심리 회합에서, 상소가 제기된 어떤 사안에 대해 합의하도록, 또 논쟁을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좁혀 나가 그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기회를 줄 수 있다.

D-10.11 상소 심리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서기는 상소 관련 당사자들이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 직접 출두할 날짜 또는 변호인에 의해 대리 출두할 날짜를 상소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소 관련 당사자가 직접 출두하지 못하거나 또는 변호인에 의해 대리 출두하지 못하면 이는 상소 심리에의 참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심리에서,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상소의 근거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그 발언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당사자들에게 주어야 한다. 상소인은 모두 진술과 최후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D-10.12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D-10.1201 검토 기준

심판절차를 진행했던 당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사실 관계에 대해 내린 결정은 정확하다는 추정을 상소시에도 해야 한다. 사실 관계에 대한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분명히 부당하지 않다면, 이 결정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미국장로교 헌법 조항의 올바른 해석, 적용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정확성 추정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D-10.1202 투표 절차

심리와 숙의 후에,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상소인이 주장하는 각각의 오류 사실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해야 한다. 투표는 "오류 사실이 인정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투표이며, 이 투표는 개수 투표여야 한다. 각 오류 사실에 대한 투표 수를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다수결 투표로 각 오류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

D-10.1203 결정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에는 오류 사실들에 대한 결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D-10.0101에 제시된 시정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모든 중요한 질문들을 반복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정문을 준비할 수 있다. 그 결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총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외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그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에게만 해당된다.
- b. 어떠한 오류 사항도 인정되지 않고, 또 다른 오류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하위 공의회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한다.
- c. 한 가지 이상의 오류가 확인된 경우,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오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공의회의 결정을 확정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는 위원회가 하위 공의회의 결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파기할 수도 있다. 부분적으로 파기할 경우, 위원회는 하위 공의회의 결정을 수정할 것인지, 또는 보류할 것인지, 아니면 사건 재심리를 위해 환송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 d. 결정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선, 상소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고 투표를 해야 한다. 결정에 대한 서면 개요를 회의 중에 준비해야 한다. 상소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패널 위원들은 서면으로 작성된 이 결정문을 검토해야 한다. 상소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전권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토할 수 있고, 또는 십(10) 일 이내에 직접 모여서 검토할 수 있으며, 또는 G-3.0105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다.
- e.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서면 결정문 사본에 서명하면, 그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 서면 결정문 사본은 D-7.0104b에 따라, 또는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미리 합의된 경우엔 전자적으로 심판절차 관련 당사자들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한다.

D-10.1204 징계 사건 상소에서의 번복의 효력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모든 유책 결정을 번복하면, 이는 곧 무혐의 결정이 되며 해당 당사자는 자동적으로 직제사역이나 교회 회원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하위 공의회는 이를 선포해야 하며 유책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하위 공의회의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부록

영어 - 한국어 어휘 모음

A

Active Member	활동교인
Administration	행정
Administrative Commission	행정전권위원회
Administrative Manual of Operations	사명 수행 지침서
Administrative Review	행정 감사
Administrative Staff	행정 직원
Administrator	행정가
Admission to the Lord's Table	주의 만찬 참여 허락(성찬참여 허락)
Admission to membership	교적(회원 가입)
Adult Members	성인 회원
Advent	대림절(강림절)
Advisory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헌법자문위원회
Affiliate member	임시 교인(관련 교인)
Affirmation of Faith	믿음의 확인(신앙의 확인)
Affirmative Action	찬성(소수계보호법/차별철폐 조치)
Agency	기관
Allegation of Offense	위법 행위 혐의(범법 혐의)
Amend	수정/개정하다
Amendment	수정/개정(안)
Annual Consultation	연례 협의
Annual Report	연례 보고서
Annual Review	연례 검토
Answer to Protest	항의서에 대한 답변
Appeals	상소
Appellant	상소인
Appellee	피상소인
Approval	승인
Article of Agreement	합의조항
Associate Pastor	부목사
Audit	감사
Automatic termination	자동적으로 목회관계 종결(자동해직/해임)

B

Ballot	투표용지
Baptism	세례
Baptized Member	유아 세례 교인(세례 교인)
Benefits	혜택
Bereaved	유가족
Bible	성경
Book of Confessions	신앙고백서
Book of Order	규례서

Bounds of Presbytery
Briefs
Budget of Particular Church
Building

노회 구역
변론 요약서(적요서)
교회 재정/예산(지교회 예산)
건물

C

Call to Ordered Ministries
Called Meeting
Candidacy
Candidates
Cases
Catechisms, Larger and Shorter
Censures of Church
Certificate
Certified
Challenge
Chaplain
Charge
Child Abuse
Choir
Christian Nurture
Church
Church Discipline
Church government
Church Officers
Church Orders
Church Polity
Church Power
Church Property
Church School
Church Unions
Church Year
Citations
Civil Jurisdiction
Civil Marriage
Civil Proceedings
Clerk
Commission
Commissioners
Commissioning
Committal
Committee

직제 사역자 청빙
임시회의(특별회의)
후보생(자) 자격
후보자들/후보생들
사건/사례
대·소 요리문답
문책(교회의 책벌)
증명서(자격증(서)/인정증(서))
공인 자격 취득(인정된/유자격)
이의 제기
기관 목사
징계 심판 청구/권면(권면, 고발, 죄과)
아동 학대
성가대(찬양대)
그리스도인들의 양육(크리스천 양육)
교회
교회 권징
교회 운영(교회 정치)
교회 임원(교회 직분자)
교회 규례
교회 체제(교회 정치조직/체계)
교회 권한
교회 재산
교회 학교
교회 연합
교회력
소환장
민법상 관할권(민사 관할권)
사회법에 따른 결혼(민사법 결혼)
일반 사회법원의 사법절차(민사(소송) 절차)
서기
전권 위원회
대의원
파송/위임
하관/매장
위원회

Committee on Ministry
 Communion
 Community
 Compensation
 Complaint
 Confessional Statement
 Confirmation
 Congregation
 Congregational Meeting
 Conscience
 Constituency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Constitutional Questions
 Co-Pastor
 Corresponding Member
 Corporation
 Council
 General Assembly
 Synod
 Presbytery
 Session
 Counsel
 Covenant Relationship
 Creeds and Confessions

목회위원회
 성찬식/교류(성찬/친교)
 공동체
 보수
 시정
 신앙고백문
 입교(확인/인준/입교)
 개체교회/회중
 공동의회
 양심
 구성원(구성 계층)
 미국장로교 헌법

헌법 질문
 동사목사
 객원회원
 법인(법인체)
 공의회
 총회
 대회
 노회
 당회
 변호인
 언약/계약 관계
 신조와 신앙고백

D

Daily Worship
 Deacons
 Board of Deacons
 Death
 Deletion
 Delinquency
 Directory for Worship
 Disciplinary Cases
 Accuser
 Accused
 Charge
 Counsel
 Enforcement
 Investigating Committee
 Preliminary Hearing

매일 예배
 집사
 집사회
 사망
 삭제
 불이행 (비행)
 예배지침
 징계 사건
 혐의 제기자(고소인)
 피혐의자(피소인)
 징계 심판 청구/권면(공소, 고소, 고발)
 변호인
 집행
 조사 위원회
 예비결정 심리(예심/ 예비청문회)

Preliminary Procedure	예비절차
Renunciation	거부(파기, 포기(선언))
Temporary Exclusion	임시 배제
Vindication	해명 확인(결백입증)
Discipline	권징/징계
Discipline Process	징계 절차
Dissolution of Pastoral Relations	목회관계 해소
Dissolving Active Relation of Deacon or Elder	집사나 장로의 시무직 해소
Dissolving Church	교회 해산/해체
Diversity	다양성
Doctrine	교리

E

Ecclesiastical Jurisdiction	교회 관할권
Ecumenical Commitment	범교회적 일치 노력 (에큐메니컬 참여/범기독교 운동 참여)
Ecumenical Statements	범교회적 선언문(에큐메니컬 선언)
Educator	교육사
Elders	장로
Election	선출/선거
Election of Pastors (or Associates)	목사(또는 부목사)의 선출
Election of Trustees	이사 선출(재단이사의 선출)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평등 고용기회
Evidence in Remedial/ Disciplinary	시정/징계사건에서 증거
Executives	임원
Extraordinary Inquirer or Candidates	특별한 상황의 지망생이나 후보생 (특례적 지망생이나 후보생)

F

Family worship	가족(가정)예배
Fasting & Thanksgiving	금식과 감사
Federated Congregation	위원회와 전권위원회 구성(연방교회)
Filing a Complaint	시정 심판 청구(고소제기)
Filing Deadline	접수시한
Final Assessment	최종평가
Finance	재무, 재정
Financial Review	재정 감사
Freedom of Conscience	양심의 자유
Full Communion1	완전 교류
Full Organic Union	완전한 유기적 연합(완전한 조직적 연합)
Funeral	장례

G

General Assembly (GA)	총회
Manual of Operations	사명 수행 지침서(운영지침서)
Gifts of the Spirit	성령의 은사
Giving	봉헌, 헌금
Governing Bodies	운영조직(치리회(기관))
Government, Church	교회 운영(교회 정치)
Government, Form of	운영 체제(정치형태)
Guilty/Not Guilty	유책/무혐의(유죄/무죄)

H

Head of the Church	교회의 머리
Healing Services	치유를 위한 예배(치유예배)
Higher Council	상위 공의회
Lower Council	하위 공의회
Holy Spirit	성령
Household Worship	가족(가정) 예배
Hymnals and Song Books	찬송가와 성가집

I

Immigrant Congregations	이민 교회
Inclusive Language	포괄적 언어
Inclusiveness	포괄성
Incorporation	법인체
Infants	유아
Inquirer	지망생
Installation	위임/임직(위임/취임)
Instruction	지침/지시/가르침
Interfaith	종교 간 관계(종교 상호관계)
Irregularity	부적법 행위(변칙/오판)

J

Joint Congregational Witness	연합 개체교회 전도사역(선교를 위한 교회연합)
Judgment of Court	법원의 판정/판결
Judicial Case	사법적 사안(사법사건(사례))
Judicial Commission	사법 전권위원회
Judicial Process	사법절차
Jurisdiction	관할권(관할권/교직원)
Jurisdiction of Council of the Church	교회 공의회의 관할권
Jurisdiction of Judicial Process	사법 절차 관할권
Justice	정의

L

Laboring Outside Bounds	노회 영역 밖에서 사역/목회
Laying on of Hand in Ordination	안수식에서 손을 얹음(안수식에서의 안수)
Lectionary	성구집
Lent	사순절
Local Congregation	지역 회중(지교회/회중)
Lord's Day	주일
Lord's Supper	주의 만찬(성(만)찬)
Administration	집례

M

Manual of Administrative Operations	사명 수행 지침서(행정운영 지침서)
Marriage	결혼
Mediation	조정(중재)
Members, Church	교인/회원
Active Member	활동 교인
At-large Member	준회원(일반/보통 회원)
Affiliate Member	임시교인(관련 교인)
Baptized Member	유아 세례 교인(세례교인)
Minimum Compensation	최소 급여(최저 사례)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말씀과 성례의 목사)
Ministry	목회/사역
Committee on Ministry	목회위원회
Committee on Preparation for Ministry	목회후보생(준비)위원회
Minutes	회의록
Mission	보냄, 선교, 사명, 사역
Moderator	의장/사회자
Motion to Dismiss	기각명령신청(기각 동의, 해산 동의)
Music in Public Worship	공예배 음악(공중예배 음악)
Mutual Forbearance	상호 관용

N

New Church Development	새 개척 교회
Nominating Process	공천 절차
For Deacons & Ruling Elders	집사와 사역장로(장로)를 위한
For Pastor	목사를 위한
Non-geographic Presbyteries	비지역 노회
Nonresident Member	타지역 거주 교인/회원
Notice of Appeal	상소 청구서(상소 통보)
Notice of Meeting	회의 통보

O

Oaths Administered to Witness	증인에게 선서시킴
Obligation	의무
Offense	위법 행위(위반/범법)
Offerings	헌금
Openness	열린 태도(개방성)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
Ordering Worship	예배 순서
Ordination	안수(식)
Ordination of Deacons and Ruling Elders	집사와 사역장로(장로) 안수(식)
Organic Union	유기적 연합(조직적/기구적 연합)
Organizing of a Congregation	개체교회 조직
Oversight	관리(감독)
Overture	건의/헌의안(헌의안)

P

Parliamentary Procedure	의사 진행(회의진행 절차)
Participation	참여
Particular Church	개체교회
Federated Church	위원회와 전권위원회 구성(연방교회)
Union Church	연합교회
Pastor	목사(목사/담임목사)
Call	목사 청빙
Election	목사 선출
Pastoral Care	목회적 돌봄
Pastoral Counseling	목회 상담
Pastoral Relations	목사(목회)관계
Associate Pastor	부목사
Co-Pastor	동사무사
Designated Pastor	임시기간 목사(임명목사)
Dissolution of Relationship	관계의 해소
Temporary	임시(잠정)
Peace	평화
Pension Plan	연금 플랜
Per Capita Funds	상회비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Polity, Church	교회 체제(교회 정치(운영)제도)
Power	권한
Prayer	기도
Presbytery	노회
Pretrial	사전 심리 회합(심리(재판) 전의)
Private Judgment	개인 판단/사적 소견

Privilege	특권
Profession of Faith	신앙고백
Property	재산
Prosecuting Committee	징계 심판 청구 위원회(기소(징계)위원회)
Prosecution of Call	청빙절차 시행

Q

Quorum	정족수
--------	-----

R

Racial Ethnic Congregation	소수 인종 교회(소수민종교회)
Rebuke	질책(견책)
Reception of Member	교인 가입(교인/회원 가입)
by Certificate	이명 증서로
on Profession of Faith	신앙 고백으로
on Reaffirmation of Faith	신앙 재확인으로
Recognition	인정, 치하/표창
Reconciliation	화해
Record of Proceedings	회의 진행 기록
Records of a Council	공의회 기록
References	회부 의뢰서(조회/참조, 위임/위탁)
Reformed Church	개혁교회
Rehabilitation	재교육(회복, 복권)
Relief (the Remedy/correction requested)	구제(요구되는 시정/수정 사항)
Remedial Case	시정 사건(교정사건)
Remedial Process	시정 절차
Removal	박탈
Renunciation of Jurisdiction	관할권 거부(관할권 파기/포기선언)
Representation	대표성
Committee on Representation	대표성을 갖는 위원회(대표위원회)
Representative Government of Church	선출된 대표에 의한 교회 운영 (교회의 대의 정치)
Responsibilities	책임(사항)
Request for Vindication	해명 요청
Restoration	복권(복직/복권)
Restorative Justice	회복적 정의
Review	감사(평가, 검토)
Roll of Members	교인명부
Ruling Elders	사역장로(장로)

S

Sacraments	성례전
Scripture	성경
Self-Accusation	본인에 대한 혐의 제기
Sentence	문구(판결)
Separation of Church & State	교회와 국가 분리
Sermon	설교
Service for the Lord's Day	주일 예배
Service of Witness to the Resurrection	장례식
Service for Evangelism	전도예배
Service for Wholeness	온전함을 위한 예배(치유예배)
Service of Acceptance and Reconciliation	수용과 화해 예배
Service of Welcome and Reception	환영과 주의 만찬 참여(환영과 입교예배)
Session	당회
Sexual Abuse	성적 학대(성적 비행/학대)
Sexual Misconduct Policy	성적 비행 정책(성적비행 방지정책)
Special Meetings	특별 회의
Staff	직원
Standing/Permanent Committee	상임 위원회(상임/영구위원회)
Standard Ordination Examinations	표준 안수 시험(정규 안수고시)
Stated Clerk	서기/정서기(정서기(노회, 대회, 총회))
Stated Meeting	정기 회의
Statute of Limitation	효력기한 한정 법령
Stay of Enforcement	집행정지(집행유예)
Stewardship of Resources	자원의 청지기직
Supervised Rehabilitation	관리 감독 하의 재교육 (감독/상당하에 회복/복권)
Supper, Lord's	주의 만찬(성찬/주의 만찬)
Synod	대회

T

Teaching Elder	교역장로(목사)
Temporary Exclusion	임시 배제(임시 정직)
Temporary Pastoral Relationships	임시 목회 관계
Term of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의 임기
Termination of Censure & Restoration	문책 종료와 복권(책별 종결 및 회복)
Terms of Call	청빙조건
Testimony	증언
Tithes	십일조
Title	명칭(직함/등기)
Transcript	사본/등본
Trials	재판/심리

Trustees
Trial in a remedial case

이사(재단이사)
시정심판

U

Union Church
Union Presbyteries
Unity
Unity in Diversity
Unity of Church
Universal Church

연합 교회
연합 노회
일치
다양성 속의 일치
교회의 일치
보편 교회(보편(세계)교회)

V

Validated Ministries
Verbatim Recording
Vindication
Vocation, Christian
Voters

인준한 사역(인정된 목회)
그대로 녹음(축어적 기록 (말 그대로의 기록))
결백 입증
기독교인의 소명(크리스찬의 소명/직업)
투표자

W

Waiver
Wholeness
Witness
Worship

포기/보류/잠정
온전함(치유)
증인
예배

성경 구절과 신앙고백문 인용 색인¹

장로교 체제의 기초

제 1 장

- F-1.0201 a. 엡 1:20, 21; 시 68:18
b. 시 2:6; 단 7:14; 엡 1:22, 23
- F-1.0301 c. 골 1:18; 엡 4:16; 고전 10:17
- F-1.0302a d. 시 2:8; 계 7:9
- F-1.0402 e. 겔 43:11, 12

제 2 장

- F-2.02 a. 1967년도 신앙고백, 9.03의 서문
- F-2.03 b. 니케아 신경, 1.3; 바르멘 신학선언, 8.01, 8.06
- F-2.04 c. 스코틀랜드, 3.08; 웨스트민스터, 6.062, 6.065
d. 제 2 헬베틱, 5.108, 5.109; 하이델베르그, 4.061, 4.065; 소요리 문답, 7.033; 대요리 문답, 7.180
e. 웨스트민스터, 6.001, 6.006, 6.007
- F-2.05 f. 스코틀랜드, 3.02, 3.13, 3.14; 하이델베르그, 4.011, 4.047, 4.117, 4.121; 제 2 헬베틱, 5.074; 대요리 문답, 7.295, 7.299
g. 하이델베르그, 4.006, 4.036; 제 2 헬베틱, 5.036; 소요리 문답, 7.004; 대요리 문답, 7.262
h. 스코틀랜드, 3.01; 하이델베르그, 4.026, 4.027, 4.028; 제 2 헬베틱, 5.029, 5.030, 5.031; 웨스트민스터, 6.008, 6.024, 6.025, 6.026, 6.027, 6.030, 6.117; 소요리 문답, 7.008, 7.011, 7.012; 대요리 문답, 7.124, 7.128, 7.129, 7.130, 7.300, 7.302, 7.303, 7.305; 1967년도 신앙고백, 9.03
i. 하이델베르그, 4.006; 제 2 헬베틱, 5.015; 웨스트민스터 6.024, 6.037, 6.105; 1967년도 신앙고백, 9.15, 9.16, 9.17, 9.50; 간추린 신앙고백, 11.3
j. 하이델베르그, 4.079; 웨스트민스터, 6.058, 6.190; 대요리 문답, 7.148, 7.303
k. 하이델베르그, 4.027
l. 하이델베르그, 4.014, 4.037; 간추린 신앙고백, 11.3
m. 1967년도 신앙고백, 9.15; 간추린 신앙고백, 11.3
n. 스코틀랜드, 제 7 장; 제 2 헬베틱, 5.058; 웨스트민스터, 6.021, 6.095, 6.193
o. 제 2 헬베틱, 5.058; 웨스트민스터 6.181, 6.192; 소요리 문답, 7.20; 대요리 문답, 7.189, 7.191
p. 스코틀랜드, 3.05, 3.14, 3.25; 하이델베르그, 4.094, 4.095; 소요리 문답, 7.215; 대요리 문답, 7.218, 7.300
q. 스코틀랜드, 3.14

제 3 장

- F-3.0107 a. 행 15:1-32 참조
- F-3.0108 b. 마 18:15-18; 고전 5:4, 5
- F-3.02 c. 행 15:1-29; 16:4 (주석 6번에 있음) 참조

¹ 현의안 01-58에 대한 응답으로, 총회사무국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운영 체제 이전 판을 검토했다. 현 운영 체제 판의 상당 부분이 이전 판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검토한 후에, 헌법 지원 부서는 현 운영 체제 판과 이전 판들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그리고 운영 체제 이전 판에서 언급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현 운영 체제 본문에 삽입했다. 이 구절들은 제 215회 총회 (2003)에서 발표된 판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운영 체제

제 1 장

- G-1.0101 a. 행 2:41, 47
- G-1.0103 b. 히 8:5
- c. 갈 1:21, 22; 계 2:1
- G-1.0402 d. 히 8:5; 갈 6:16

제 2 장

- G-2.0102 a. 담전 3:1; 엡 4:11, 12
- b. 담전 5:17
- c. 빌 1:1
- d. 뱀전 5:1; 딤탈 1:5; 담전 5:1, 17, 19
- G-2.0201 e. 빌 1:1; 담전 3:8-15
- f. 행 6:3, 5, 6
- G-2.0301 g. 고전 12:28
- h. 담전 5:17; 롬 12:7, 8; 행 15:25
- G-2.0501 i. 렘 3:15
- G-2.0604 j. 담전 4:14; 행 13:2, 3

제 3 장

- G-3.0105 a. 고전 14:40
- G-3.0108a b. 행 15:22-24
- G-3.0109b(5) c. 행 20:17; 6:2; 15:30
- G-3.0201 d. 고전 5:4
- e. 히 13:17; 살전 5:12, 13; 담전 5:17
- G-3.0201c f. 살전 5:12, 13; 살후 3:6, 14, 15; 고전 11:27-33
- G-3.0202f g. 행 15:2, 6
- G-3.0203 h. 행 20:17
- G-3.0301 i. 행 6:1, 6; 9:31; 21:20; 2:41, 46, 47; 4:4; 15:4; 11:22, 30; 21:17, 18; 6:1-7; 19:18-20; 고전 16:8, 9, 19; 행 18:19, 24, 26; 20:17, 18, 25, 28, 30, 36, 37; 계 2:1-6
- j. 행 15:1-6; 고전 14:26, 33, 40
- k. 엡 6:18; 빌 4:6
- G-3.0301c l. 행 15:28; 고전 5:3
- G-3.0304 m. 행 14:26-27; 행 11:18
- G-3.04 n. 교단 운영 체제에 대한 총회의 지지는 대회 총회에 대한 지지와 동일하므로, 제 10 장 (원문에서는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반복하거나 다른 것들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1888 운영 체제, 미국장로교회, 제 10 장)
- G-3.0402 o. 행 15:10; 갈 2:4, 5
- G-3.0501 p. 행 15:1-29; 16:4 참조

제 5 장

- G-5.04 a. 행 21:17, 18; 행 6; 행 15:2, 3, 4, 6, 22
- G-5.05 b. 행 15:5, 6

제 6 장

- G-6.03 a. 1967년도 신앙고백; 서문, 9.03; G-2.0200 참고